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2024. 12.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차 례

1. 심사 의안 ····· 1

2. 회부 및 청문 일자 ····· 1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 2

가. 구성경위 ····· 2

나. 활동경과 ····· 3

다. 회의경과 ····· 3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 5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 7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 7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 8

가. 위원장 인사 요지 ····· 8

나. 후보자 모두(冒頭)발언 요지 ····· 9

다.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요지 ····· 13

5. 종합의견 ····· 44

6. 참고자료 ····· 48

[참고자료 1]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49

[참고자료 2]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 50

[참고자료 3]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 ··· 56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2024년 12월 26일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심사 의안

○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2. 회부 및 청문 일자

가. 임명동의안 제출: 2024. 12. 12.

나. 임명동의안 회부: 2024. 12. 13.

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 2024. 12. 20.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라. 인사청문 및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2024. 12. 26.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가. 구성경위

○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24년 12월 1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됨.

○ 2024년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가 있었음.

- 더불어민주당(7인) : 이춘석, 박상혁, 곽상언, 김남근, 박지혜, 백혜련, 최기상 위원
- 국민의힘(5인) : 유상범, 김용태, 신동욱, 조배숙, 최보윤 위원
- 비교섭단체(1인) : 천하람 위원(개혁신당)

○ 2024년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통보가 있었음.

- 사임 : 박지혜 위원(더불어민주당)
- 보임 : 소병훈 위원(더불어민주당)

○ 2024년 12월 20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음.

- 위원장 : 이춘석 위원(더불어민주당)
- 간사 : 박상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나. 활동경과

○ 활동기간 : 2024. 12. 12. ~ 12. 27. (16일 간)

○ 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준비 : 2024. 12. 12. ~ 12. 19. (8일 간)

- 제1차 위원회(2024. 12. 20.)

○ 인사청문회 실시 : 제2차 위원회(2024. 12. 26.)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제2차 위원회(2024. 12. 26.)

다. 회의경과

○ 2024년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2차에 걸쳐 위원회가 개회됨.

○ 2024년 12월 20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및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음.

○ 2024년 12월 26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마용주의 인사청문회 선서와 모두발언이 있은 후 위원들의 주질의(위원별 7분), 보충질의(위원별 7분), 재보충질의(위원별 7분) 및 후보자의 답변 등이 있었으며,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당일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

인 사 청 문 회 회 의 경 과

일 시	안 건	비 고
<제1차> 2024.12.20.(금) 10: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4.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자료제출요구의 건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본관 406호)
<제2차> 2024.12.26.(목) 10:00	1.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2.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본관 406호)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1) 교섭단체별 요구 현황

합 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개혁신당)
854	**679**	**-**	**175**

(2) 대상기관별 요구·접수 현황

연번	기 관	요 구	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비고
1	감사원	3	3			
2	강원랜드	1	1			
3	경찰청	37	16	1	20	
4	고용노동부	17	17			
5	공무원연금공단	10	10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1			
7	관세청	27	25		2	
8	교육부	52	34	12	6	
9	국가보훈부	1		1		
10	국가인권위원회	7	4	3		
11	국민건강보험공단	29	6	23		
12	국민권익위원회	8	8			
13	국민연금공단	9		9		
14	국방부	16	14	1	1	
15	국세청	70	67		3	
16	국토교통부	24	1	21	2	
17	근로복지공단	5	5			
18	한국고용정보원	1		1		
19	금융감독원	14		2	12	
20	금융위원회	1	1			
21	농림축산식품부	7	3	4		
22	대법원(법원행정처)	377	377			

연번	기 관	요 구	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비고
23	대한적십자사	4		4		
24	대한항공	3	3			
25	법무부	29	16		13	
26	병무청	13	3	10		
27	보건복지부	1		1		
28	서울특별시	8		7	1	
29	외교부	5	2	3		
30	재외동포청	1	1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	4	6		
32	커피빈코리아	3	3			
33	특허청	5		5		
34	한국거래소	6	1		5	
35	한국도로공사	2	2			
36	한국은행	13	6	7		
37	한국장학재단	3		3		
38	한국주택금융공사	1		1		
39	한국토지주택공사	3		3		
40	행정안전부	22	15		7	
41	헌법재판소	1	1			
42	환경부	4	4			
합 계		**854**	**654**	**128**	**72**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1) 서면질의서 제출

○ 서면질의 총 639건

교섭단체	위원명	서면질의 건수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25
	△ 박상혁	76
	곽상언	54
	김남근	171
	백혜련	66
	소병훈	102
	최기상	76
국민의힘	김용태	-
	신동욱	-
	유상범	-
	조배숙	-
	최보윤	-
비교섭단체(개혁신당)	천하람	69
합 계		639

(2)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참고자료 3]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교섭단체	위 원 명
더불어민주당(5인)	박상혁, 곽상언, 김남근, 백혜련, 최기상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가. 위원장 인사 요지

○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마용주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청문회 운영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을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나. 후보자 모두(冒頭)발언 요지

○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이 감사함. 대법관 후보자로서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되어 영광이나, 엄중한 국가적 혼란의 시기에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게 되어 무겁고 결연한 심정임. 이러한 심정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음.

○ 저는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하늘을 공경하고, 국민을 부모처럼 섬긴다”는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아 왔음. 법관에게 ‘나라’는 대한민국과 그 헌법질서, ‘하늘’은 정의, ‘국민’은 소송관계인,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재판당사자를 의미한다고 새기며 업무에 임했음.

○ 무엇보다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선고하고자 노력함.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추가진료를 받지 않아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검진기관은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도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검진결과를 통보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검진기관과 사업주 모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그것이 ‘하루하루 노동 속에 매몰되어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는 근로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우리 헌법의 요청’임을 판결문에 강조함. 5·16 군사정변 후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이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재판관들이 위헌성 판단을 현저히 해태하였고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기준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 변론기일 전 검찰에 수 차례 소환되어 사실상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조서를 작성한 사건이 있었고, 2007년 당시까지는 그렇게 작성된 조서도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 실무례였으나, 그러한 수사방식은 피고인의 실질적 변론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1심의 무죄판단을 유지하였음. 이상은 모두 헌법정신에 따른 결론이었음.

○ 한편으로는 소송관계인,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재판 당사자를 내 부모, 내 형제자매처럼 생각함. 송사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기에 그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였음. 상가건물의 다수 임차인들과 임대인 회사 사이 분쟁에서 임대인의 요청 시한에 맞추어 변론종결일과 선고기일을 지정하되, 그 사이 3개월 동안 임차인의 요구대로 9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평소 집중심리방식을 적극 활용함. 재판당사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는 절차 진행에 이어, 결론을 내릴 때에는 분쟁의 실체를 파악하고 예견 가능한 후속 상황까지 고려하는 근본적 해결을 추구함. 조정·화해를 통한 분쟁 해결을 중시했고, 판결이 불가피한

경우는 당사자가 답변을 원하는 실체적·핵심적 쟁점에 대한 판단에 충실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음.

○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며, 법원의 존재 이유는 재판임. 따라서 사법부의 모든 기능과 역량은 국민이 원하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집중되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 법원이 재판을 잘 하려면 개별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더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여기에 대법관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그런 의미에서 일선 재판업무 외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 실무를 관장한 경험,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거의 모든 법률 분야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에 관한 체계적 논의를 이끈 경험이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함. 이를 바탕으로 국민중심 사법서비스, 읽기 쉬운 판결문 작성, 판결서 공개 확대, 심급제도 개선, AI의 보조적 활용,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합리적 양형기준 설정 등 산적한 제도개선 과제의 실천 및 정착에도 전력을 다하겠음. 또한 민사 분쟁의 일회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들의 소송 피로도를 경감하려면 소송물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고, 형사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려면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된 절차와 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법원 구성원들의 지혜와 총의를 모아 이러한 구상과 복안을 차근차근 실현하고 싶은 바람이 있음.

○ 대한민국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 의회주의 및 사법부 독립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임. 만일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막중한 책임을 명심하면서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한 건의 재판도 소홀함 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 판단하겠으며, 국민이 바라는 사법제도 구현에도 헌신할 것을 약속드림.

다.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요지

(1)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소신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법 자체가 정의는 아니고 재판은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함. 법관은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가운데 헌법과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겠음
○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법관들은 판결을 할 때마다 입법을 하는 것이고, 판결이란 정의를 향해 해석이나 적용의 형식으로 법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말을 함.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 동의함
○ 후보자는 선진사법이라고 하면 법원 중심과 국민 중심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국민 중심의 사법임
○ 법원의 오심과 오판의 가능성 있는지?	○ 있음
○ 국민들은 오심과 오판한 판사들이 구체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평가할 것 같은지?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 판사들에 대한 배려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국민이 보실 때 사법부 판사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님. 제도보장을 해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엄정한 재판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됨

○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이유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책임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엄격하게 묻는데, 반헌법적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한 대통령, 오판한 판사, 잘못 수사·기소한 검사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게 묻지 않는 것 같음. 판사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배려한 것에 비하면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평가함. 국가기관의 권한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 부여했으므로, 수사기관 재판기관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행위해야 하는데, 수십년간 한국사회에서 법조인들이 군림했다고 생각함. 이번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 판사들도 성찰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법관들도 사건처리에 급급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단순한 법률적용에 만족하지 않았나 되새겨 보겠음.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 막중하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음

(2) 대법원의 구성·기능 및 사법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① 대법원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대법관 임명 관련>	
○ 오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도 여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내란사건이 대법원으로 갔을 때 여당의 동의가 없는 대법관의 임명에 문제가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에도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법관 후보자로서 견해는?	○ 대법관 후보자로서 국회의 임명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싶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당한 대법관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싶음
○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권한은 사법부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입법부의 구성원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고 특히 국민의 불신이나 저항을 일으키는 선동 행위는 극도로 자제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도 그러한 여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은 사법부 독립의 의지를 굳건히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내란죄 사건 외에도 다양한 사건을 담당할 텐데 당해 원·피고들이 대법관으로서 임명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런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임	○ 유념하겠음

<대법관 및 법관 구성 관련>	
○ 대법관의 다양화 필요하다는 표현이 있고 필요한데, 법관의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보는지?	○ 필요하다고 봄
○ 지금 국민들은 법관이 다양하다고 보지 않음. 학력, 부모의 소득 수준 등으로 인해 최상층 편향이라고 평가할 것임. 후보자의 견해는?	○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함
○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재판의 가장 좋은 방법은 소수자, 약자 출신이 판사를 하는 것임.	○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가치의 기준점을 제시해야 할 법관이라면, 그 구성에 있어서 사회 전반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함
○ 판사 임용과정에서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알고 있는지?	○ 이전보다 특정 학교에 대한 편중은 개선됐지만, 부와 특정 지역의 편중이 심해져 소외된 출신들도 있다고 생각함
○ 법관이 선입견 없이 판단하려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함.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분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려는 노력이 중요함. 그것을 법관들에게 맡겨 놓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높음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관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대법관이 되시면 다양한 처지, 다양한 곳에서 사는 분들이 법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람	○ 기회가 된다면 동료 법관들과 관련 논의가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② 사법정책·제도 관련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재판지연 관련>	
○ 인사 말씀에서 사법부의 모든 기능과 역량이 국민의 원하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함. 현재 사법부의 기능이 국민이 원하는 신속한 재판이 실현되고 있는지?	○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국민이 사법부를 걱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민사 형사의 모든 재판이 전반적으로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들음
○ 1심, 항소심 및 상고심 모두 해마다 재판 지연 시기가 늘어나고 있음. 정상적이라고 보는지?	○ 그렇지 않음
○ 대법관이 되면 신속한 재판을 위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 사건을 이첩한 초기부터 정확히 간파하고 관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 및 급하지 않은 사건을 분류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임. 경우에 따라서는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사건이 존재하는데 미리 변론 준비를 철저히 시켜 변론 기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혹시 대법관이 부족한 것도 재판 지연의 원인이 아닌지?	○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음
○ 현재 대법관 수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알지 못함. 다만 대법관의 수가 너무 많으면 대법원 본질인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심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들었음

○ 법관 수는 증원했는데 왜 대법관 수는 증원하지 않는지?	○ 대법관 몇 명을 늘려서 재판 지연이 해결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음. 재판 지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해서 모든 재판 지연이 해결될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임
○ 법 앞의 평등은 형식적 평등임. 법 안의 평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사건은 많고 판사 수는 적으므로 현재의 재판과정으로 어려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후보자께서는 사법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법관들에게 이 부분을 그대로 맡겨도 될지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 위원님께서 사건 수가 많아 사건별 전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림. 대법원을 비롯해 사법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법관 개개인도 현장의 문제점을 서로 상의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함. 주어진 여건이라면 사건 하나 하나에 사명감 가지고 전력을 다해야 함. 여건이 부족하고 갖춰지지 않다면 한계가 있음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판결 2년2개월 걸림. 쟁점이 복잡하지는 않았음.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 기간 걸릴만할 사건이었는지?	○ 피고인이 본인 방어위해 필요한 입증 및 변론 활동한다면, 그런 기회를 주는 공정한 재판도 신속한 재판만큼 중요한 가치임. 다만 가치가 서로 잘 갖추어지는 것이 제일 좋겠음
○ 국회의원의 1심재판 평균기간은 일반형사재판 기간의 4.5배 정도임. 일반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재판지연으로 인해 이득 본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후보자의 견해는?	○ 일반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 피고인이 입증 활동을 하겠다고 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방어기회를 무시하거나 보호하지 못하면서 신속성에만 얽매여서 재판하기는 쉽지 않음

○ 여러 사건 중 신속성이 중요해서 기간을 정해둔 공직선거법 등 사건이 있음. 방어권 보장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긴 하지만 선거법 사건은 신속성에 신경을 써줘야 할 것임.	○ 선거법 사건은 국회에서 기한을 정해둔 사건으로, 기한을 지켜야 함. 다만, 선거법 사건이라도 단순한 사건 있지만, 많은 증거조사와 변론기회를 주어야 할 사건도 있음. 현행 선거법 1심 선고후 3개월 내에 항소심 판결해야 하는데, 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 기록 선고되는 기간부터 항소 이유서 접수 기간까지 따지면 적어도 한달반에서 두달 걸림. 선거법의 입법 취지 존중되야 하지만 개별 사건에 따라 변론기회 부여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선거법 따르기 힘든 부분이 있음.
○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은 재판의 신속성에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림	○ 잘 알겠음
<수사권 통제 관련>	
○ 압수수색 영장 최종 발부율 아시는지?	○ 80~9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일부기각까지 포함해서 99.1%임.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남발에 대해 후보자도 문제점 인식하는지?	○ 그러함
○ 휴대폰 압수수색은 개인의 인격을 담보로 하는 것이므로,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제외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까지 듬. 인격권 침해대상은 압수수색에서 제외해야 한다	○ 영장재판한지 오래됐지만, 영장담당 판사들은 그 점에 대한 문제의식 공감하고 필요최소한 범위의 영장 발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집행단계에서도 집행의 엄격성 등 문제

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있으면 증거능력 배제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향후 계속 그러한 판결이 나와 수사기간의 자의적 영장청구를 제한할 것임. 국민적 우려가 없도록 개선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봄
○ 99% 영장발부는 영장심사 제도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임. 법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임	○ 유념하겠음
○ 후보자는 형사 재판 많이 했는지?	○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음
○ 형사 재판에서 사법적 정의 실현되기 위해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듬. 검찰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있음. 세 가지 검사의 권한 중 후보자는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고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 다른 국가기관에 관한 사항이라 조심스럽지만, 기소권과 관련해 불기소, 기소범위 등에 대해 국민들이 불만족스러워 하는 면이 많음

③ 수사·재판 관련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관련>	
○ 대법원에서 12월 19일 소규모 매장에 경사로 설치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이 제한되었다면 국가가 장애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함. 이 대법원 판결은 최초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였음.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 전적으로 동의함
○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판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장 위주의 사회였다면 이제는 출발점이 늦거나 소외당하는 분들을 돌아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사회는 그러한 능력이 충분함
○ 우리나라에서 최소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사는 아동이 100만 명 이상인 것을 아는지? 주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음.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씻거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아이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우리나에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음. 지금 우리나라처럼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주거권도 기본권으로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헌법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이고, 국가 및 공동체가 인간의 존엄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함. 인간 존엄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 것	○ 유념하겠음

이 주거권, 교육권 및 의료권임. 대법관이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를 바람	
○ 국회 입법시 소수자나 약자의 의견이 반영될지? 다수자나 강자의 의견이 반영될지?	○ 후자라고 생각함
○ 법원은 어떻게 재판절차에서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지?	○ 국선변호인 제도나 소송구조를 통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면이 많음. 이런 분들이 절차적 또는 실질적으로 법을 몰라서 잘못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법원이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함.
○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충실히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함	○ 의원님 의견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 후보자의 판결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우호적인 판시를 한 바가 많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이 있는지?	○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법정에서는 제도적 보장을 통해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고,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도 조력을 못 받아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는 점이 없도록 법원이 노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런 판결을 했음

<통상임금 판례 관련>	
○ 최근 통상임금 관련해서 대법원은 관례적으로 인정되었던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였음. 후보자는 유사한 사건의 1심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고정성을 이유로 통상임금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음. 그 당시에도 고정성 요건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많았음에도 후보자는 다소 보수적인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당시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 판단을 하였던 것임
○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시대의 변화를 읽어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함.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덕목이 전례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임. 다만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국회가 만든 법률을 지키는데 충실히 하였던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함
<징벌적 손해배상 판례 관련>	
○ 이미 우리나라는 다수의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로 판례를 보면 손해액의 1.3배, 1.5배 정도만 인정하여 위하적 효과가 없고 입법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함. 법원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기존의 손해의 개념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 새로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과감히 적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대법관이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함	○ 유념하겠음

<입증책임 판례 관련>	
○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 즉 경제적 약자들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켜 이미 패소가 정해진 재판 사례들이 많음.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여 기술탈취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서 소송도 잘 제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해당 사례들이 입증이 어려운 사례라는 것은 공감함. 이론적으로 입증책임 전환 법리가 있고 법원도 나름대로 이를 설시하고 있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음. 관련된 제도를 활용할 때 문서제출명령의 효과가 당사자에게는 유명무실하여 큰 효력이 없으므로 그 부분을 정해야 할 것 같음
○ '인카메라 제도'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재판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어야 할 것임	○ 유념하겠음
<성인지감수성 관련>	
○ 성폭행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 선고받은 최말자씨 재심사건 파기환송건 잘 알고 있는지	○ 재심 결정 기각했던 것을 재심을 개시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파기환송한 건으로 잘 알고 있음
○ 재심사건 기각판결은 당시의 시대상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으므로 기각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개시 결정을 하지 않고 기각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밝힌 적극적 입장이었더라면 피해자의 재심이 더 빨리 개시돼서 피해자의 감정이 좀 더 회복되지 않았을까 생각함
○ 우리나라의 젠더 감수성이 예전하고 너무 다름. 판결도 시대상황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 잘 알고 있음

지지를 받을 수 없음. 대법관이 50대, 남성, 서울대출신으로 고착화된다는데 비판 받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는지?	
○ 후보자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대법관이 되신다면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사건을 대해 주시길 부탁드림	○ 잘 알겠음

④ 기타 사법부 관련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사법부는 독립적인지?	○ 독립적이라고 믿고 있으며, 더욱 독립적이도록 노력하고자 함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	○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선출되지 않는 기관의 간접적인 정당성 확보에 기여함
○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100만의 어떤 도시는 지원이 없어서 먼 곳 까지 재판 받으러 가야함. 예전에 만들어 놓은 각급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때문임. 현재 김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산하임. 그런데 곧 더 가까운 곳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청 예정임. 그런데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김포를 관할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사법접	○ 김포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사법접근성에서 소외받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음. 전체 법원의 관할을 정할시 사건 수와 청사 사정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부분들 고려해서 입법사항에서 대법원도 책임 있는 의견을 내리라고 기대함

근성이 떨어짐. 대법관이 되시면 많은 시민들이 사법접근성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림	
○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촉법소년과 같은 취지로 촉법노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그 분들이 좀 꺼려하지 않을까 싶고, 성년 후견제도로 법률적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임. 일반적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 위험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노인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정도의 고의적이지 않은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현실적인 고려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림	○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 개선방안 논의해 보겠음

(3) 기타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12·3 비상계엄 관련>	
○ 의정부지방법원에 판사가 일침 가했는데, 입법부 및 일반 시민의 권리 침해에 대해 법원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입장은 어떠한지?	○ 지적하시는 부분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마음으로는 공감할 것임. 다만 일선 국민과 관계자분들에게 송구스럽지만 법원은 다소 그런 부분에서 사실 확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어 양해 바람
○ 모두 발언에서 국가적 혼란 시기라고 말한 이유는?	○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이 있다고 생각함
○ 야당의 입법 폭주가 계엄요건인지?	○ 수사 진행 중이므로, 답변 곤란함. 다만, 입법 폭주 등을 쉽게 전시 사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비상계엄이라는 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 국민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 선거 관리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 간첩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사와 적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종북주사파의 척결을 이유로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 그 말씀 가지고는 동의하기 어렵고, 아마 많은 정보가 있어서 명확한 구체적 사안들을 내지 않는 한은 어려움
○ 계엄 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김용현 등 군부들이 계엄 가능성 크다고 국회에서 주장한 것 들어보았는지?	○ 들어보았음

○ 그런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 그때 당시에는 계엄은 생각도 못 할 상황이라 기우라고 생각함
○ 12월 3일 밤 당시 계엄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 TV를 보다가 생중계를 접함
○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 비상계엄 선포한다고 하기에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음
○ 믿기 어렵다는 취지인지?	○ 순간 그랬음
○ 후보자는 대통령 담화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상태라고 판단했는지?	○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우나 향후 수사에 있어 본인의 주장을 대변하는 요지로 보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답변은 조심스러움
○ 부정선거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무죄를 선고한 모 판사, 노태악 대법관 등이 체포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기사를 보았는지? 체포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것임	○ 일선에서 몸으로 막아낸 국민과 국회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법부 구성원에 관해서만 피해 감정 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답변 조심스러움. 사실이라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함
○ 판사들이 대부분 선관위원장 한 번씩 하는데, 후보자도 맡아 한 적 있는지?	○ 있음
○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선거가 가능한지?	○ 제가 할 때는 총선이나 대선이 없었고,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서 했는데 제 경험으론 아주 엄중함
○ 부정선거 어려운 것 아닌지?	○ 제가 본 개표현황은 그랬음
○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는데,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된 것이 맞는지?	○ 그 점에선 명확함

○ 국회의 집회를 금지한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인 것이 맞는지?	○ 문헌상으로 부합하지 않음
○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체포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명백한 위헌, 위법적인 것임	○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해서였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음
○ 국회에 계엄군을 무력을 사용할 군인을 보내고 경찰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국회 진입을 막고 봉쇄하고 이런 정도도 폭동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	○ 한 지방의 평온상태라고 해서 물리적 공간과 시간적 부분 살펴야 함
○ 계엄군이 들어오는 것 TV로 안 봤는지?	○ 봤음
○ 재판에서 시연될 텐데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진입하는 영상 봤고, 국회가 열리긴 했지만 폐쇄되어서 진입하려고 하는 관계자들 실랑이하는 영상도 봤음.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음
○ 포고령 5호에 보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는 내용 있는데, 계엄이어도 민간인인 의료인에 대해 복귀 명령과 처벌이 가능한지?	○ 비상계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취한 것 같은데 그 경우에도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침해되지 않고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맞음. 그 점에서 침해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음
○ 민간인인 전공의와 의료인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고 처단한다는 포고령이 있을 수 있는지? 비상계엄이 정당화되어도 이 내용은 위헌 위법하다고 봄	○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가 많이 놀랐을 것 같음

○ 계엄 절차와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음. 국무회의가 실체적으로 없었고, 대정부질문에서 다 밝혀졌음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언론보도 되는 것을 보았음
○ 팩트라고 한다면 비상계엄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이 맞는지?	○ 절차적으로 준수하지 못했다고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 같음
○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의 위법성 관련, 당시 대한민국이 전시 또는 사변이었는지?	○ 아니었음
○ 이번 비상계엄이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다고 보는지?	○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씨가 제기하는 '부정선거론'은 선관위에 대한 도전을 넘어 선거제도를 형해화시키려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실물 투표에 기반한 우리 선거제도 하에서는 부정선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함. 이에 대해 각급 선관위원장을 해본 적이 있는 후보자의 견해는?	○ 제가 고성군에서 겪었던 선거 관리 업무를 상기해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함
○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국무위원들이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말함.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이란 것을 국무위원들이 알고 각 부처에 돌아가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회의를 주재한 경우에 대한 후보자의 법률적 평가는?	○ 각 부처 돌아가 회의를 했다는 것이 계엄 집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였다면, 책임을 묻는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 대외적 신인도, 외교 관계 등을 위하여 탄핵 정국의 빠른 해소가 필요한 것 아닌지?	○ 공감함
○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은 집중 심리 등을 통한 빠른 심사 가능한지?	○ 가능함
○ 송달 미수령 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 재판기관의 책임하에 보충송달, 유치송달 등 가능함
○ 변론 집중, 국선변호인 등 활용 가능한지?	○ 필요 시 가능함
○ 국회 증언 등의 증거 활용할 수 있는지?	○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나 증거능력 문제는 존재할 것으로 보임
○ 민사소송이 재판장에게 지휘권을 부여하고 적시제출주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등을 규정한 취지는 무엇인지?	○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한 것으로 이해됨
○ 탄핵심판도 재판의 신속을 기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 탄핵심판에는 실체적인 진실을 강조하는 형사소송이 준용되므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참고할만한 사항임
○ 탄핵소추 사유는 무엇인지?	○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범한 것임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정도가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뇌물죄, 직권남용이 주요 사실이었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와	○ 소추 사유 놓고 보면 내용이나 모든 것이 후자가 더 중함

직권남용임. 법적으로 비교한다면 어느 죄가 더 헌법이나 법률 위배 정도가 중대한지?	
○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함. 이러한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피소추인 입장에서는 재판부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헌법적 해석 및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함
○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지는 것이고, 이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은 현재 없음. 만약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무효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며 대법원에 탄핵심판 결정 효력을 다툰다면 이는 적절하다고 보는지?	○ 그 점에 대해 숙고해본 적은 없으나, 그러한 판단을 하더라도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음
○ 자칫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국민적 불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까 봐 걱정됨. 사법부의 판단이 준수되는 것은 다른 헌법기관들의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는 일인데, 여당에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법부 판단이 무효라고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함
○ 재판지연 관련 내로남불 및 뫼비우스 띠 같은 느낌이 있음. 국민의힘	○ 저간의 사정은 잘 모르겠고, 법원은 추측과 막연한 의심을 기정사실하

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 비판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지연 행위를 감싸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판 관련 서류 송달 거부 등은 노골적 재판지연 전략이라고 생각하는지?	해서는 안되지만, 외관상으론 의원님 지적하신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
○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법률가 출신이므로 누구보다 신속하게 수사와 재판절차에 협조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 중요하게 봐야 하지 않는지?	○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임
○ 티나게 재판지연 하면 법원에서 안좋게 보게 되지 않는지?	○ 국민들이 억울한게 있거나 주장할 바 있으면 재판절차에서 성심성의껏 밝혀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재판절차에서 평가 받을 것임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심판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점이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대통령이 재판에 적극적 응하시라는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 제가 조언할 지위나 자격은 아님. 법원의 일반적 입장은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임. 다만 신속한 재판을 국민들께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재판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재판 관계인들은 그 절차를 존중하고 절차 내에서 권리주장과 방어를 하는 것이 맞음
<내란죄 재판 관련>	
○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지?	○ 통치행위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헌법은 계엄의 요건, 절차 등도 규정하므로, 현행 헌법 내에서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통치행위가 무엇인지?	○ 일정 범위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임
○ 헌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도 통치행위가 될 수 있는지?	○ 개념적으로 가능함
○ 현재 사법기관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이 있는지?	○ 통치행위라도 헌법,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통치행위 여부의 판단 주체는 누구인지?	○ 사법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가 담당하게 될 것임
○ 통치행위 개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 사회의 민주성이 성숙함에 따라 점차 축소되어야 할 개념임
○ 법령 위반이 명백하면 통치행위임을 들어 사법심사를 제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닌지?	○ 공감함
○ 대통령은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 동의하기 어려움
○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라는 점에서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 군통수권자는 최종적인 지휘나 책임의 문제이므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군사반란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함. 다만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판단할 것임
○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 재판 종료 가능한지?	○ 형사의 경우 직권 심사의 범위가 넓기는 하나 가능은 함
○ 목적 달성을 못 했으니 내란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권능을, 시간적이든 여러 가지로 국회의원들이 심리적으로 다소 압박을 받았다든지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이론적으론 기수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음

○ 내란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명확하고, 많은 국민이 TV를 통해 봤고 증거로 제출될 텐데, 탄핵심판이 많은 쟁점을 가지고 많은 시간 소요되진 않지 않을지?	○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은 재판에서 통상의 재판이라면 많은 변론과 입증을 통해 서로 재판 진행 노력 해야 할 상황에서 쉽게 증명될 수 있는 면모가 있음
○ 후보자께서 직접적 대답 꺼리시는데, 12.12 군사반란과 전두환 신군부 반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내란죄로 사법적 판단 있었고 그 결론에 사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 공감함
○ 이번 계엄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동의하는지?	○ 비상계엄을 동원했다는 점에서는 맞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란죄가 분명하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도 결국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어서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함. 엄중한 사실적 법리적 판단을 통해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임
○ 내란죄의 기수는 국회 난입한 순간에 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지? 기수냐 미수냐의 문제를 묻는 것임.	○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판단해봐야 함. 한 지방의 질서 평온을 해한다는 것은 규범적 추상적 개념임.
○ 내란죄 성립 여부 그중에서 가장 실소를 금치 못한 것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것임. 이것이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 있는지?	○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은 거칠고,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음
○ 폭동의 성립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음	○ 말씀드린 대로 판례는 그러함
○ 누군가를 끌어내려고 무장병력을 동원했다면 폭동이 맞는지?	○ 맞음

○ 군사반란 관련, 군사반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근거를 말씀드림.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하고, 상관은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대통령도 포함임. 군사반란의 수괴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임. 단순히 내란만이 아니고 군사반란에 해당하기에 두 가지 병행해서 심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지?	○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률 규정을 다시 살펴보겠음. 법원도 그런 상황이 되면 잘 검토해서 재판하리라 생각함
○ 범죄집단 그대로 두어선 안 되고 그 사람을 잡아 와서 신병 확보 후 내란 수사해야 한다, 그래서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한 것임	○ 유념하겠음
○ 형법에서 시기와 종기를 다투는 법률적 실익은 무엇인지?	○ 시기는 범죄 실행의 착수와 관련된 문제이고, 종기는 기수·미수를 판단하는 문제임.
○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하여 판례는 계엄해제를 내란의 종기로 보았는데 아는지?	○ 정확히는 알지 못함
○ 계엄 당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을 급하게 연락해서 정족수를 채우려고 노력한 것은 계엄을 적법화하려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시도였고, 현재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및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지 않음. 즉, 내란행위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되고	○ 계엄해제가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 추가적 상황이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께서도 불안해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란죄 재판에서 이 부분까지 포괄해서 수사 및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범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아님
○ 내란죄 주체가 대통령이고 내란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택한 경우,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사법부가 판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 내란죄 조문이 개정된 것 알고 있는지?	○ 국토참절이라는 한자식 표현이 풀어써진 것으로 알고 있음
○ 전두환, 노태우 내란사건 판결에 대해 알고 있는지?	○ 판결 내용을 알고 있고, 이견 없음
○ 폭동의 의미를 혹시 아는지?	○ 폭행, 협박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것임
○ 지난 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것은 폭동 아닌지?	○ 물리적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국회의 권능이 침해되었는지 여러모로 살펴봐야 함
○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으로 정지시키려 했다면 누적된 판례 등에 비춰볼 때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떠한지?	○ 국회가 개의해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등 개별적 사정에 대해 국회 권능이 침해되었는지 살펴야 함
○ 군대가 국회의사당을 진입했고, 진입하면 국회 기능이 잠시라도 정지되는지? 아니면 유지되는지?	○ 국회 진입하는 목적은 쉽게 추측이 되지만, 국회의 권능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함

○ 군대가 대법원에 들어가면 기능이 정지되는지?	○ 이론적으론 정지됐다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중요한 회의, 재판 등 권능이 행사되는 중요한 순간이었는지 여부도 중요함
○ 국회는 명백한 반국가단체다, 종북 반국가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보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데 정당 활동 등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단한다고 되어 있음.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 입장에서 상대방의 이야기와 변론을 듣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 양해 바람
○ 후보자가 위원들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답답할 수 있음. 대법관 후보자이므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대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잘 알겠음
○ 국헌문란의 목적 해당 여부에 대한 후보자 말씀 듣고 싶음. 선포 2분만에 무장군인 500명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진입했음. 노태악 대법관도 체포한 것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음.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점검으로 보는지, 권능 행사를 무력화할 의지가 담긴 행위로 보는지?	○ 행정절차든 그런 식의 점검은 있을 수 없음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 후 계엄 건의했다는 뉴스 보셨는지?	○ 본 것 같음
○ 형법상 내란죄 수괴, 모의참여자, 지휘자,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가담자 모두 처벌받음. 국무총리가 형식적 요건 마련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햇다면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 해당된다고 보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말씀하신 취지대로 의율할 수 있는지 법적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회의가 계엄의 취지에 맞는다면 국무위원들이 중요임무 종사자 또는 부화수행자로 될 수 있다고 보는지?	○ 말씀대로라면 그런 검토도 가능할 것 같음.
○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행동을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행동이라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그 상황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함
○ 국무위원들은 정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으므로 위법한 계엄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했으면 고의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봄.	○ 유념하겠음
○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상황이 장기로 계속되고, 윤석열씨가 복귀해서 제2, 제3의 내란을 획책하는 것임.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합의를 전제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함. 헌법재판관의 경우 여야가 일정도 합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 내란이 계속된다는지, 2차계엄이 있을수 있다는 것에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

도 표결한 바 있음.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여야합의를 원하는 지 알 길이 없음. 한덕수 국무총리의 계속된 행태를 보면 내란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도 강력하게 단순한 범죄나 정치적 공감이 아니라 헌법,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체포 기도한 내란행위 자체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 내야 한다고 생각함. 후보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경종 울릴 명확한 입장 내는 것이 진정으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사법부 독립성 쟁취하는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입장은 어떠한지?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우리 법원은 향후 재판 진행한다면 최대한 진중한 자세 취하며 양해 구하겠음
○ 내란사태를 겪으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 지킬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상태가 후보자 생각할 때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과 이러한 사태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후보자 개인적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내란 상태가 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안도했고, 국회와 국민에게 경의와 감사의 마음 가짐. 그때 보여준 국민들, 국회의 용기 비춰보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현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예정한 탄핵심판, 내란죄에 대한 수사, 헌정질서 내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내란죄 수사 관련>	
○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계속 발부되는데, 경호처장 중심으로 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라서 압수수색이 거절되고 있음. 후보자도 아는지?	○ 언론보도 통해서 들음
○ 압수수색 영장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뿐임.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거부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인지?	○ 어떤 군사적 비밀을 염두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이익이 있나 싶음.
○ 경호처의 압수수색 영장 방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보이는데 견해는?	○ 그 점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함
○ 후보자는 내란죄 수사만큼 더 중요한 국가적 이익은 없다는 데 동의하는지?	○ 수사 및 영장발부와 무관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우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경호처장이 계엄과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경호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조항을 들어 압수수색 거부하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을 압수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음. 영장발부시 특정 통화내역에 한정해 발부하므로 이익 침해가 크지 않음.	○ 경호처에서는 일반적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내세워 영장 집행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유를 영장집행기관에 밝혀야 하고, 근거를 남겨야 거부가 정당하다는 평가를 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대통령이 수사를 안 받고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움. 엄중한 사건이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임

○ 왜 헌법이 내란과 외환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했을지?	○ 헌정질서의 존립을 위해서임
○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하는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지?	○ 경호담당 책임자는 막연히 거부해서는 안되고, 거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관련>	
○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할 수 있는지?	○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국회의 심사 등이 있었으므로 가능함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 국회 선출 몫에 대하여는 국회의 추천이 이루어지면 임명하여야 함
○ 헌법재판관 임명 등은 헌법수호 의무에 포함되는 내용 아닌지?	○ 동의함
○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미임명시 재판 지연 가능성이 있는지?	○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함
○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과 임명권 중 더 중한 또는 강한 권한 행사가 무엇인지	○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임.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의 경우 법률 내용, 거부 사유 등도 중요할 것임. 다만 헌법기관의 존속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함
○ 상설특검법상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자추천의뢰를 하여야 하는데 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 위반 아닌지?	○ 통상 지체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라는 의미이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의뢰가 없는 것이라면 지적이 타당. 다만,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함
○ 권한대행이 정부 기구표 및 조직표에 있는지?	○ 제가 아는 바로는 없음

○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의 의결정족수는 다른 국무위원과 동일함. 국민의힘만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한다고 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 것 같음

(4) 후보자의 개인 신상 및 도덕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7년도부터 재산공개를 하셨는데, 최근 10년간 자료를 보니 직계존속을 보니 고지거부를 했는데 맞는지?	○ 맞음
○ 원천징수 영수증을 살펴보니, 타인 부양을 이유로 거부한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등록하여 매년 250만 원씩 총 1,7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는데 맞는지?	○ 맞음
○ 고지거부를 하면서도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 타인부양은 맞음. 저는 차남으로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부양에 보조한다고 생각해서 인적공제 받은 것인데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일부 공감함
○ 대법원규칙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는데, 대법원 규칙이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 증감법보다 효력에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아님
○ 대법원 규칙을 근거로 자료제출 응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며, 적절히 제출해주시기 바람	○ 살펴보고 준비하겠음

5. 종합의견

○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26일 10시 00분부터 18시 13분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마용주에 대하여 ① 임명동의안 및 부속서류, ②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답변자료, ③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④ 인사청문회에서의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음.

첫째, 후보자가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경력이 있는 45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함.

둘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소신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함.

셋째,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사법정책과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식견 등을 검증함.

넷째, 후보자의 개인 신상 및 도덕성 등의 측면에서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검증함.

○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후보자가 12. 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최근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향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과,

후보자가 재산등록 과정에서 독립생계를 이유로 후보자의 부모 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하면서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모 부양 명목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것 등에 대하여 일부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소신 및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음.

①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경험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법률적 전문성과 소양을 쌓았으며,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윤리감사관을 역임하여 사법행정에 대해서도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점

② 12. 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염려하는 엄중한 국가적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인식하고 있고, 국회에 경종을 울리거나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사유로 한 비상계엄이 가능한지 여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위법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답변을 한 점

③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통치행위 역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이와 같은 견지에서 12. 3. 비상계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점

④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과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힌 점

⑤ 12. 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였다는 점

⑥ 5·16 군사정변 후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이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재판관들이 위헌성 판단을 현저히 해태하였고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기준 역시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소신 있는 판결을 하였던 점

⑦ 최근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변하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표현한 점

⑧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으로 급변하는 사회상황 속에서 법을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규범적 지향점을 제시하는 역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포용력과 공감능력,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신을 들면서 대법관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6. 참고자료

〔참고자료 1〕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자료 2〕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참고자료 3〕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

〔참고자료 1〕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간 사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민의힘	-
위 원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김남근, 백혜련, 소병훈, 최기상
	국민의힘	김용태, 신동욱, 유상범, 조배숙, 최보윤
	비교섭단체 (개혁신당)	천하람

〔참고자료 2〕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2024. 12.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1. 목　　적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인사청문회 실시일

2024. 12. 26.(목) 10:00 (「붙임 1」 의사일정(안) 참고)

※ 단,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4. 장　　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본관 406호)

5.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증인·참고인 신문, 보충질의·답변,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한다.

나.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이 있는 경우 청문회 중 신문순서 및 위원별 신문시간 등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마. 위원이 질의 중 시청각 자료(다른 사람의 발언을 재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14조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6.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그 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7. 소요경비

증인 여비 등 소요경비는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8. 행정사항

가. 인사청문회 개회공고

o 인사청문회 개회공고는 늦어도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국회전자게시판에 「붙임 2」와 같이 공고한다.

나. 언론관계

o 인사청문회의 중계방송 및 방송기기의 설치는 인사청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허가한다.

다. 인사청문회 방청

o 일반방청은 위원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위원장이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붙임 1]

의 사 일 정(안)

일 시	안 건	비 고
2024.12.20.(금) 10: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4.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자료제출요구의 건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본관 406호)
2024.12.26.(목) 10:00	1.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2.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본관 406호)
2024.12.27.(금) 10:00	1.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2.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본관 406호)

※ 안건, 회의일시, 회의장소는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2024. 12. 26.(목) 10:00

3. 장 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본관 406호)

2024년 12월 20일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참고자료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 12.

대법관후보자마용주

- 목 차 -

《이춘석 위원장 서면질의》 ····· 3

1. 후보자가 법관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판결과 가장 후회되는 판결,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각각의 이유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 3

2.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3.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0

4. 대법관 또는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의 전관예우가 병폐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 11

5.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 남성으로, 현 정부에서 대법관의 표준은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라는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이전 정부에서는 향판·교수·여성 등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며 인적 다양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노동·환경 등 다양한 가치관을 판결에 담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법원 판결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12

6. 최근 1980년 비상계엄때 불법 구금 후 옥살이한 해직교사 44년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50명도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부림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도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법관으로서 사법부의 지난 과오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 13

7. 후보자가 2016년 ~ 2017년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하며 배우자와 차남도 함께 이주했는데, 배우자와 차남은 제주도로 주소지를 이전했지만,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제주로 이전하지 않았는바, 이전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고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 14

8. 2017년 2월 후보자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부임한 것과 별개로 배우자와 차남은 2017년 3월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하였고 같은 해 6월에 다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이전하였는바, 배우자와 차남이 제주 서귀포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유를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 14

9. 후보자의 차남은 현재 미성년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약 2,60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자산(예금, 증권투자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차남의 현금성 자산에 대한 자금 출처를 상세히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16

10. 과거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나중에 수배에 이르는 차익을 실현하여 '편법 증여'라는 논란이 있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게 됩니까? ····· 17

11.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어디까지나 헌법이 정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를 위한 장치인데, 이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적극적인 형성권인지, 국회의 입법권 행사 하자에 대한 소극적인 제재권인지 자신의 소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 18

12. 탄핵 심판 절차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25번째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25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처럼 국회가 정당한 입법 재량범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 권력분립을 침해하

는 권한행사이며, 권력분립의 원리를 형해화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소견은 무엇입니까? ····· 19

13. 공공성(公共性)과 사사성(私事性)이 충돌할 때 국가영역이 가지는 공공성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이해충돌금지원칙'은 오늘날 단순한 법률적 원칙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해충돌금지원칙이 법률상 원칙인지, 아니면 헌법적 원칙인지 후보자의 소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 20

14. 현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영부인과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 3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가 공공성보다 앞서는 것이므로 '이해충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소견은 무엇입니까? ····· 21

15. 현행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포고령에 대한 헌법의 위배 여부에 대해 후보자의 소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22

16. 형법 제91조제2호에 따르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데,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부는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침입해 표결 절차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3

17.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야당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를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행정부의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5

18.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거나 내란을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경우, 이러한 상황을 바로 잡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26

19.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나 국헌 문란 행위에 동조·옹호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방해한 정당의 경우 내란죄의 공범이며 위헌정당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유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27

20. 현행 헌법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통치하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그러한 대통령의 탄핵에 국회의원이 동참하지 않는 등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역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가 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사법부가 갖춰야할 입장은 자세는 무엇인지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 28

21.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업무상 동의낙태죄 조항 중 '의사'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한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낙태죄가 존속되어야 하는지와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소견과 그 이유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29

22. 대한민국 헌법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정하였다는 이유로 법률의 하위법규인 명령·규칙의 위헌여부심사권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권한이 어떠한 기관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소견과 그 이유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30

23.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에 판단은 당해 사건에 명령·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치며, 그 명령·규칙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게 지난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따라서 명령·규칙이 개정되지 않고 계속 적용될 경우 행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후보자의 견해와 그 이유를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 31

24. 사형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이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제한이 아니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합헌으로 결정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형'이라는 대안의 존재와 낮은 위하력, 오판 가능성 등으로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형제를 존속해야 하는지, 폐지해야하는 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폐지해야 한다면 대안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 32

25. 최근 사법부에는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정치 판사 등 사법의 정치화, 정치권에 의한 사업의 정쟁화, 과거 사법농단 사태 등 복잡한 난제가 쌓여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함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사법개혁을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33

《박상혁 위원 서면질의》 ····· 37

1. 대법관 후보자로서 본인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7

2.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8

3. 대법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39

4.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40

5. 대법관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 41

6. 대법원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42

7. 대법원 설립 이후, 대법원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판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43

8. 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44

9. 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가장 아쉬웠던 판결은 무엇입니까? ····· 45

10. 현재 대법원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 46

11. 판사 재직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건입니까? ····· 47

12. 판사 재직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건입니까? ····· 49

13. 현재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50

14. 여성혐오, 성차별 해소를 위한 어떤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51

15. 성소수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52

16.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53

17. 일부 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54

18.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55

19. 청소년범죄의 증가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56

20.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57

21.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58

22. 최근 5년간 검찰수사로 매년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몇 명이나 대법원에 통보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59

23. 최근 5년간 검찰수사로 통보된 비위법관 중 징계위에 회부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60

24.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비위법관의 명단과 징계사유에 대해 법원은 모두 비공개 처분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1

25.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62

26.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판사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 63

27.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정당 대표와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

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 64

28.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인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는 경찰의 무선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이것이 형법 제91조제2항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 ····· 65

29.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침탈과 직원들의 핸드폰 압수, 서버 탈취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형법 제91조제2항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 ····· 66

30.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이 계엄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지? ····· 67

3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국회의 탄핵, 특검, 예산심의 등 적법한 권한을 사용하여 국정을 견제한 정당 및 정치인에게 경고하는 것이 계엄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67

32.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계엄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67

33.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생각하는지? ····· 68

34.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 건의, 공고, 국회 통고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다고 생각하는지? ····· 69

35. 국무회의 회의록이 부존재하고, 모든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집요구가 되지 않았으며, 계엄사령관 심의 국무회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 69

36.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내지 통치행위로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 70

37. 내란 부화수행의 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71

38. 비상계엄을 전후한 일련의 사태가 내란이라고 판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인지한 상태로 국무회의인줄 알고 참석하여 안건을 논의하였다면 내란 동조 및 방조에 해당하는지? ····· 72

39.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이유로 비상계엄 해제까지 4시간 30분여가 소요된 것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계엄법 제11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 73

40. 대통령실 등이 군사시설, 공무상 비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제한하는 내란 혹은 외환의 죄로 수사를 받을 경우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 74

41. 비상계엄 및 탄핵안 가결 이후 국가 위기 상황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76

42.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에서 확인된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가 있다면? ····· 77

43.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에 따르는 불확실성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 78

44. 비상계엄을 전후한 일련의 사태가 내란이라고 판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국회의사당이 아닌 당사 및 제3의 장소에서 의원총회 등을 소집했다면 내란 동조 내지 옹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79

45.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로부터 추천된 헌법재판관 공석은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 권한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 80

46. 지난 10년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상고심 각각의 사건접수에서 선고까지 평균 기간은? ····· 81

47. 지난 10년간 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에서 대법 판결까지 평균 기간은? ··· 82

48. 지난 10년간 선거법 위반 사건 중 기소에서 대법 판결까지 가장 기간이 짧았던 사건과 가장 길었던 사건은 무엇인지? ····· 83

4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의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법원이 소송지휘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 84

50.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법령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미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므로 미 검찰은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보고 임기 중에는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기소를 취소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85

51. 성남 FC 재판 관련, 재판부가 '공판때마다 타검찰청에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즉각 퇴정을 명령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86

5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검찰이 사건과 관련없는 SNS, 블로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유죄를 추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제기하여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정리하라'고 명령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87

53. 검찰이 사건과 관련없는 SNS, 블로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유죄를 추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88

54.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데, 평소 친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일년에 몇 번 가량 만남 및 연락을 취했는지? ····· 89

55. 배우자와 차남의 제주도 거주 사유는? ····· 90

56. 법원 설치시 관할 지자체의 인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91

57. 법원 설치시 관할구역 조정의 목적과 원칙은? ····· 92

58. 주민들의 법원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 93

59. 관할 법원까지의 거리 및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등 접근성이 법원 이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 94

60. 법원 신설시 기존 법원의 기능 축소를 우려하여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신설 법원보다 훨씬 먼 거리의 기존 법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 95

61. 신설되는 법원이 기존에 관할 법원보다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존 법원을 이용하도록 강제받을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낄 것으로 생각하는지 ····· 96

63.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부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가 강압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했고 이를 방기 및 방관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2018년이 되서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권고했음. 이에 대한 후보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보상과 사과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97

64. 형제복지원 내부에서는 12년 동안 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죽은 사람들

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암매장 되거나 소각되기도 했는데 박인근과 같은 직접 관계자는 처벌도 받지 않은채 2016년에 사망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자들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98

65. 형제복지원의 운영 방식과 비리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묵인하거나 적극 지원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범죄가 아닌 국가의 구조적 폭력임을 보여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어떠한지? ····· 99

66.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의 정부는 법적 절차와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시민을 억압했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로 보여지는데 이에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100

67.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법원 차원에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101

68. 장남이(같은 아파트 단지인) 외조부 댁에 전입신고하여 살고 있는 경위 ·· 102

69. 장애 여성에 대한 강간범에 대한 재판의 항소심이었던 2016. 3. 16. 선고 2015노106, 2015전노9(병합) 판결 이후 상고심을 진행한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장 ····· 103

70.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과 구체적인 논거 ····· 105

71. 현재 헌법이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106

72.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배우자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일각에서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판결이라 주장함. 입법부와의 관계에 있어,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107

73. 이혼 후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더라도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음.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출범한지 9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양육비 이행률은 절반이 되지 못하는 현실. 양육비 판결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은데 양육비 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 108

74. 대한민국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초로 하고 있고 위자료 등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국민들의 법감정은 위자료를 더 크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109

75. 우리 법원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있고, 손해액을 원고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 환경 범죄 등의 경우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소비자, 주민 등이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그동안 국회는 제조물책임법 등의 입법을 통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피해자들이 더 충실히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옴. 최근에는 민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인지?110

76. 소송 진행시 통상적으로 패소한 쪽이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때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액이 너무 적어 당사자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변호사 보수액 상향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111

《곽상언 위원 서면질의》 ····· 115

1.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등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등 행정부 마비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계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15

2.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를 통해 이를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16

3. 12·3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 등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러한 행위에 절차적, 형식적 문제 등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17

4.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18

5.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19

6.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 등)들에 대해 수취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20

7. 6번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서류들이 '송달 간주' 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21

8.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사태에 대해 '당당한 입장'이라며 '내란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22

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에 있으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으며, 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진입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23

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4

11. 전두환 등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에 관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 신군부 측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25

12. (이어) 대법원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으로써 외형상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절차적 적법성 외에도 범죄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26

13. (이어)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한 정권 장악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쟁점에 대해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

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성공한 쿠데타라 하더라도)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통치행위론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27

14.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하게 됐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소환을 앞둔 공수처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검·경 협조를 통해 폭넓은 수사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 및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규모로 수사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28

15.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죄에 대해서만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이첩했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 이첩은 불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29

16.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연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며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30

17.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31

18. 계엄군의 본청 진입 시도와 더불어,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32

19.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 알려져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 알게 된 것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33

20. 2019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이후, 만남과 전화 통화가 몇 번이나 어떤 사유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134

21.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 135

22.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자택이나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136

23.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 137

24.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인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 138

25. 후보자는 대통령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139

26. 대법원과 대법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40

27. 대법원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41

28. 대법관이 된다면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인가? ····· 142

29. 후보자는 어떤 강점을 인정받아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143

30. 본인의 판결 중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5개의 판결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144

31. 본인의 판결 중 가장 아쉬웠던 5개의 판결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148

32. 국외교육훈련 파견(미국 조지타운대학)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것과 실무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151

33.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연구·검토한 수행 내역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구체적인 내

용을 포함하여 답변) ····· 152

34. 후보자는 민원·진정·탄원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받았습니까? ····· 153

35. 후보자 장남의 최근 5년간 소득 내역과 출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154

36. 후보자 장남의 주식 보유 소득의 출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155

37. 후보자 차남의 최근 5년간 소득 내역과 출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156

38. 후보자 차남의 주식 보유 소득의 출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157

39. 후보자의 차남은 2009년생으로 현재 중학교에 다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후보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이 없거나(2023년) 매우 적게 잡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 158

40. 후보자의 장남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 및 월세(전세)는 어떻게 됩니까? ····· 159

41. 차남의 자산은 2017년도 약 250만원 증가, 2018년도 약 800만 원 증가, 2019년도 약 400만 원 증가, 2021년도 700만 원 증가 등으로 꾸준히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 160

42. 후보자의 장남은 후보자와 같은 아파트(서초구 삼풍아파트)의 다른 호수(21동 1303호)에 거주 중입니다. 지근거리에 따로 살고 계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161

43. 장남의 현재 직업 및 취업 경로(공채, 특채 등)가 어떻게 됩니까? ····· 162

44. 자녀들이 학교폭력위원회 혹은 선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습니까? ····· 163

45. 장남이 입학·졸업한 고등학교·대학교(학과 포함) 및 입학 경로(정시, 입학사정관 등)가 어떻게 됩니까? ····· 164

46. 입시에서 장남이 지원했던 세부전형, 최초/추가합격 여부, 최초 불합격 시 예비순번은 어떻게 됩니까? ····· 165

47. 자녀들의 초중고교 생활기록부 제출에 동의하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66

48. 후보자 및 배우자가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면 그 이력 목록(조직명, 직위, 임기)과 당시 제출했던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167

49.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남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도에서 후보자와 따로 거주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 168

50. 후보자가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이던 2016년,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제주도에 전입신고를 한 반면, 후보자는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십니까? ····· 168

51. 법관으로 살면서 가장 존경했던 인물과 그 이유, 가장 감명을 받았던 판결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70

52.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71

53. 구독 중인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어떤 채널입니까? ····· 172

54. 후보자로 지명된 사실을 누구로부터 언제, 어떤 수단(직접통보, 유선 통보 등)을 통해 들으셨습니까? ····· 173

《김남근 위원 서면질의》 ····· 177

1.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 177

2.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누구입니까? ····· 178

3.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누구입니까? ····· 179

4.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법관은 누구입니까? ····· 180

5.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대법관은 누구입니까? ····· 181

6. 후보자는 어떤 대법관이 되고 싶으십니까? ····· 182

7. 법관과 대법관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183

8. 법관과 비교하여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84

9. 본인이 대법관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185

10. 후보자가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입니까? ····· 186

11. 후배 법관들에게 반드시 읽기를 추천하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 187

12. 후보자는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88

13.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89

14.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가장 후회되는 에피소드는 무엇입니까? ····· 190

15.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명예가 실추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191

16. 후보자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92

17. 후보자는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92

18.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로 인해 편견과 증오로 가득 찬 정치 현실에서 정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92

19. 후보자는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법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2

20. 법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후보자 자신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 194

21. 법원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후보자 자신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195

22. 법원개혁으로 별도의 사법행정기구에서 사법행정권을 담당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196

23. 사법행정기구를 비법관으로 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은? 197

24.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원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 ····· 198

25.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인의 역할은? ····· 199

26.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 200

27.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판결 3가지와 아쉽다고 생각하는 판결 3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1

28.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202

29.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 203

30.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204

31.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 205

3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충돌, 역할 조정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각각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206

33.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207

34.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사법부 기관 간 대립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208

35. 위와 같이 사법부 기관 간의 대립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209

36.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210

37. 대법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211

38.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212

39. 검사장, 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퇴직한 법조계 고위공직자가 대형로펌, 기업 고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13

40. 국민들은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해 굉장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음. 후보자님은 법조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14

41.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법은 무엇입니까? ····· 215

42.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 216

43. 법조일원화로 인해 숙련된 변호사가 판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펌에 근무한 변호사에서 판사가 될 경우, 해당 로펌에서 변호하는 사건에 대해 심리함에 있어,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217

44. 대법관이 된다면, 43번 우려를 해소하고자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218

45. 43번 우려가 가시화 될 경우, 사법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219

46.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0

47.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21

48.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22

49. 법관의 이념과 지향성(진보, 보수, 중도 등)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223

50. 법원에 있었던 사법농단 의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해소되고 대국민의 사법적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224

51.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증원에 동의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 225

52. 50번 질문에 대해, 동의·비동의를 택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오랫동안 근무한 사법부에 대한 체계·근본적 고민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지? ····· 226

53. 현재 대법원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227

54. 대법원이 위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228

55.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법원의 다양성(성별, 나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229

56.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31

57.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32

58. 검찰의 공소장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33

59. 일각에서는 공판개시 전 공소장 공개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234

60. 기성세대가 일으킨 기후위기가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235

61. 탄소 배출 등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목표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236

62.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었을 경우, 타 국의 사례를 수용·비교하며 재판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 237

63. 후보자는 존엄사를 찬성/반대하는지? 찬성/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238

64. 각급법원의 장기미제 사건을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만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239

65.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특정 이념에 기반을 두어 판결한 사실이 있는지? ····· 241

66.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내렸던 판결이 있다면? ····· 242

67. 후보자는 현 대법관의 구성이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구성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 245

68. 후보자는 사법부에 필요한 '외적 다양성'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 247

69.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248

70.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은 법관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위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49

71.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 회복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250

72. 법관은 다른 어떠한 자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 하지만 각종 비리·비위 행위에도 불구하고 판사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매우 경미하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 251

73.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은 법관으로서 일부 법관 동료, 선·후배들의 비위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52

74. 후보자께서는 퇴임 후에 어떠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53

75. 후보자께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 254

7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 254

77. 모욕죄의 경우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 처벌 대상의 행위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55

78.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재판관으로서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256

79.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경 보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대법관으로서 어떠한 사회적 인식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257

80.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을 수탁받아 법무부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정부조직법상(제32조) 법무부의 관장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법무부의 관장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제6조제1항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위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과 제32조제1항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259

81. 행정 각부에 불과한 법무부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 절차에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삼권분립 원칙 훼손이 우려되고, 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다음의 상급행정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에 둔 입법취지도 훼손된다고 판단하는데, 후보자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따른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260

82. 과거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아쉬운 판결은 무엇인가요? ····· 261

83. 과거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판결은 무엇인가요? ····· 262

83.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263

84. 후보자에게 사회적 약자의 기준과 정의는 무엇인지요? ····· 264

85.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직 우리 사회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65

86.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을 무엇인지요? 266

87.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법개혁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67

88.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덜고 부실 판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허가제와 대법관의 증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68

89. 동성결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 269

90.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0

91. 하급심보다 상급심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271

92. 91번과 같이 성범죄 재판에 대해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판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 271

93. 91번과 같이 성범죄 재판에 대해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판결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경우 법관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는지? ····· 271

94. 최근 법관들이 사회적 이슈 내지 법원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개인 SNS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관의 SNS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2

95. 우리사회에서 '사법부의 정치 중립'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후보자는 사법부의 정치 중립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이며, 사법부의 정치 중립에 찬성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73

96.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사법부 독립'의 취지, 목적, 방향,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274

97. 우리사회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에 대해 '특정이념'을 가진 법관들이라며 이들을 마치 일반 판사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75

98. 법관의 이념과 지향성(진보, 보수, 중도 등등)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76

99. 후보자는 법원의 사법농단사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277

100. 후보자는 법원의 사법농단사건이 잘못되었다고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278

101. 후보자는 사법농단에 관여되어, 기소된 재판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279

102. 대부분 재판관이 무죄가 나옴에 따라, '법원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279

103. 후보자는 법원이 밝힌 사법농단 비위법관 66명에 속해있습니까? 속해있다면, 어디·누구에게로부터 전달받았습니까? ····· 280

104. 사법농단은 대법원장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여러 법관 엘리트들이 도운 조직적인 사건이며,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법관들이 다수라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징계는 불복소송을 통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281

105. 구체적으로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 체제의 법원개혁 방향, 활동, 방안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282

106.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체제의 법원개혁에 대해 법원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83

107.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직자 부당 행위를 처벌할 '직권남용'이란 법리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커다랗게 남겨놓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직권남용을 형식적 논리로 엄격히 해석하면 '권력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이른바 '법 왜곡죄'로 최고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떠한 입장입니까? ····· 284

108. 위 107번의 직권남용의 판결로 인해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 대부분이 무죄로 면죄부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85

109. 사법농단에 관여한 재판관이 퇴직 후, 로펌 등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86

110.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처리가 된 변희수 하사는 재입대를 희망하였습니다. 과거, 국내 한 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학내 반발과 인신공격 등으로 등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는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추세임에도 당사자들이 실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법의 판단과 결정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는데 일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287

111. 해외 여러 국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완전히 허용'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오랜 사회적 논쟁과 많은 진통 속에서 얻게 된 결과물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법과 법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288

112.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암호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암호화폐의 명칭, 소득세 대상 여부 등 세법 개정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 암호화폐 시장의 산업발전과 국제 추세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문제제기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89

113. 2009년 야간집회시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고,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을 내린바 있음. (2014년 한정위헌 판례 中 "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 그리고 현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판결 중 '한정위헌' 결정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2009년에 진행한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시위 헌법불합치 결정만 인정하게 된다면, 현재 00시 ~ 06시까지만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입법은 대법원으로써 인정할 수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290

114.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전 관장과의 이혼소송에 따르면, 노태우의 밝혀지지 않았던 비자금을 노소영 전 관장의 재산으로 인정한 바 있음. 불법으로 승계된 범죄수익이 재산으로 인정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291

115.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비자금 등 불법 승계되어 형성된 수익을 환수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292

116.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가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이 생략되기도 함. 민사/가사 사건에서도 제출된 증거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작성자에 의해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293

117. 116번 주장과 관련, 법조인이자 재판관으로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294

118. 최근 5년간('19년 ~ '23년) 판결 경정 신청 건수는 약 4천건에 달한다고 함. 단순

오류의 경우 경정 대상이나, 판결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는 법원 신뢰도 저하 초래, 판결문 작성 여건 등을 점검해 제도/시스템적으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295

119. 판결문의 경정오류를 집계(통계화)시켜 공개하는 것이 법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적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297

120. 판결문의 경정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사유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 동의한다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적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 것인지? ····· 298

121.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299

122.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린 권고결정을 위반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 위 재판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299

123. 위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결에 대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99

124. 위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이 형해화 된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299

125. 후보자는 사법부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301

126.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과정에 대면심리절차를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302

127. 수사기관이 휴대폰, 노트북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전자정보 전체를 통째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304

128. 위 127번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 ·· 304

129.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의 어려움으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침해기업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 자료를 특정하기 위한 '자료 목록제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306

130.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액에 인정에 대해 보수적 입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고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할 정도의 위하적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법원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생각이 있는지? ····· 307

131.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행정부의 수장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절차적 과정을 거쳐 제청한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308

132.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고있는 행정부의 수장이 대법관인사추천위에서 절차적 과정을 거쳐 제청한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309

133. 131번과 132번에서 임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 310

134.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고있는 행정부의 수장이 국회가 입법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311

135.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 311

136. 국회를 봉쇄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가로막아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한 경우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 312

137. 형법 제87조의 내란에서 폭동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 313

138.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였지만, 행사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법적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위헌적 행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314

139. 헌법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정부와 법원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포고령을 살펴보면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하도록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315

140.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포고령을 보면, 계엄을 위한한 의료인을 '처단'한다고 되어있음. '처단'에 대한 법적해석을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지? 316

141.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포고령을 보면,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이란 단어가 나와있음. 위 단어에 대한 법적해석을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지? 316

142. 후보자는 141번의 단어와 같이 대한민국에 체제전복세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떠한 사람이 반국가세력이라고 보는지? ····· 316

143. 헌법 제77조에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에게 경고하고 겁주기 위해 계엄을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남. 대통령의 말이 사실일 경우, 계엄을 할 수 있는 사유라고 생각하는지? ····· 317

144.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개혁으로 정책을 바꾼 것이 법원장추천제도임.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1호 개혁안으로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법원장추천제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318

145.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법원장추천제도폐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힌바, 위 의견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요? ····· 319

146. 압수수색 사전 실질심사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320

147. 146번의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회에 끼칠 장단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 320

148. 146번의 실질심사 제도가 용의자의 인권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끼질 것이라 생각하나요? ····· 320

149. 1997년 처음 시작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헌법상 지켜야하는 국민기본권 신장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받고 있음. 당시에도 수사기관은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도입을 반대해 왔음. 압수수색 실질심사 제도가 수사기관의 반대로 입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지요? ····· 320

150. 비상계엄당시, 체포대상에 한 판사가 올랐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 ····· 322

151. 이후에도 비상계엄을 통해 판사를 체포한다면, 후보자는 어떠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 ····· 323

152.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서버를 계엄군이 촬영해 간 것이 드러났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요? ····· 324

153.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것도 헌법기관을 봉쇄한 것으로, 국헌문란이라 보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요? ····· 325

154. 국헌문란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 325

155. 대통령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사건, 허위이력 작성, 공천개입 등은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높으나,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이렇게 전국민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326

156. 정부는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며 일시적으로 업무를 마비시켰음. 또한 비상계엄은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갖추지 못하였음으로,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적 사태임. 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알아내고 진상규명을 통해 적극적가담자와 수괴, 소극적가담자를 구분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요? ····· 327

157. 현재 국회법에서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위 제도를 도입하고도 심사기한 내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전무하여 심사권이 형해화 되고, 정부여당은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하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야당은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함께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을 개정하고자 함. 우리 헌법은 행정부의 독선을 막기 위해 예산심사권을 입법부에게 부여한 바, 위와 같은 국회법은 예산을 더 꼼꼼히 심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 필요하다고 보는지? ····· 328

158. 157번의 국회법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328

159. 12월 19일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증감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 ····· 329

160. 국회증감법이 타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보호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류제출 거부가 발생하고 있는 위법한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329

161. 또한 159번의 국회증감법 개정안은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의 부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민적 해소를 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위해 원격출석을 가능토록하고 청문회에도 부를 수 있도록 확대시켰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필요

가 있다고 보는지? ····· 329

162.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회생법원의 파산회생제도가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 330

163. 채무자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짐을 덜고 새출발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 ····· 331

164. 과거 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을 무죄 결정을 내렸음. 당시 법원은 "지배력 강화의 목적으로 추진한 합병일지라도, 결국 부당한 비율로 합병을 당한 회사 및 그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함. 반대로 해석하면, 주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 유죄로 봐야되는 것은 아닌지? 다수의 주주가 반대하고,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판결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 332

165. 현재 상법에는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가 부재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333

166. 164번의 법원의 판결에서 법원의 포괄적재량 판단으로 인해 상법을 해석하여 주주를 보호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 334

167.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었던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전체 피의자의 80% 이상이 미성년자(2024년 9월 기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미성년자에게는 중형이나 실형 선고가 잘 내려지지 않아 형사처벌 강화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효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 335

168. 형사처벌 강화 이외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보완 방법으로 후보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335

169. 딥페이크 성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사진이나 영상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플랫폼에는 워터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영상물을 탐지 및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AI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 335

170.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경우, "민법 제914조에 따른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소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한 바 있음. 청소년이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를 찾는 경우에도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을 이유로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 청소년의 쉼터 입소를 알리는 방침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37

171. 위와 같이 가정폭력·아동학대와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쉼터 등 관련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338

《백혜련 위원 서면질의》 ····· 341

1.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이 헌법 제77조 계엄요건에 부합하는지(실체적 요건)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341

2. 국회의 예산 삭감, 국무위원 탄핵 등이 비상계엄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지? ····· 341

3.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 계엄 선포 공고, 국회 통고 등 계엄의 절차 준수 여부(절차적 요건)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342

4.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관하여 절차적, 실체적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흠결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342

5. 계엄시 계엄군이 국회에 대한 통제·관리에 관하여 법적 권한이 있는지? ···· 344

6. 비상계엄 선포시 계엄군이 국회의원의 국회출입 통제 및 의결 방해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상 적법하다고 생각하는지? ····· 344

7. 계엄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선포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 345

8. 계엄군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국회 폐쇄와 점거, 의결을 방해하는 등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 345

9. 12·3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의결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내란의 공범 여부에 관한 후보자 견해는? ····· 346

10. 96도3367 판결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의 점거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후보자 생각은? ····· 347

11. 2011도2631 판결에 따르면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 자체는 위헌·위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후보자 생각은? ····· 348

12. 2016도1397 판결에 따르면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을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이고,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병력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349

13.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로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비추었을 때, 12·3 계엄은 헌법상의 발동요건과 한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350

14. 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및 공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 351

15. 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 ····· 351

16. 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2호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침해와 12·3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51

17. 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5호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351

18.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기소 가능 여부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 352

19. 12·3 계엄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시 명시적 반대의견을 밝히지 않고, 침묵 또는 방조한 국무위원은 공범 또는 정범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또한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범죄 성립여부에 관한 후보자 입장은? ····· 353

20.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54

21.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야당이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356

22.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 국회의원 납치·감금 후 해제 의결을 방해하면 계엄이 지속되는데, 계엄 지속이 합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357

23.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 국회의원 납치·감금 등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이후 군사법원이 재판을 하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357

2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일련의 행위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358

25. 윤석열 대통령 및 장관 등의 행정부 인사, 대통령실 관계자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핸드폰 교체에 관하여 증거인멸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359

26. 22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 360

27. 계엄군이 미리 공고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고, 압수수색영장 없이 선관위 서버를 통째로 복사 및 압수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61

28. 현재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집행정지 상태인 경우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 362

29. 대통령의 '사고' 상태의 경우 직무대행의 직무 범위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63

30.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363

31.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유보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364

32. 12·3 계엄 당시 사유도 없이 특정 판사를 체포 시도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65

33. 내란 사건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 문서 수령 거부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66

34. 내란 사건 관련하여 대통령이 압수수색 거부, 문서 수령 거부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66

35. 12·3 계엄해제 전후로 계엄군이 사법부 및 행정부에 공무원 등을 파견 및 독촉하는

행위가 적법하다고 생각하는지? ····· 367

36. 12·3 계엄상태에서 행정기관 폐쇄, 계엄 시 비상업무 계획 준비 등 정부 부처의 계엄의 동조 행위에 대하여 불법성 여부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는? 367

37. 12·3 계엄이어도 사법부의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제한하는 비상조치를 사법부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68

38. 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 및 서버를 탈취하고, 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 및 침입의 내란을 저질렀다면, 기수 시기는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 369

39. 대통령 법률자문 측은 "두세 시간 만에 국회에서 그만하란다고 그만하는 내란이 어딨나"라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 370

40. 위헌적 12·3 계엄 및 내란사건에 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371

41.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372

42. 김건희 여사에 관하여 압수수색 없이 무혐의 처리, 검사가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이른바 황제조사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373

43.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거주한 아파트의 전세계약 가격 체결 사유와 그 당시 시세는? ····· 374

44.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도 하기 전에 '특정 이념 성향'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임명권 보류를 검토한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75

45.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76

46. 대법관으로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과 원칙은? ····· 376

47.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법원이 지금까지 했던 판결 중 가장 좋은 판결 5건과 가장 아쉬운 판결 5건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 377

48. 후보자의 판결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결 5건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 378

49.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비주류와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후보자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가? ····· 381

50. 고위직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이 전관비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382

51.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83

52. 국민의 사법부 불신 및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과 관련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 384

53. 대법관 되고 나서 퇴직 후 계획은? ····· 385

54. 검찰의 악의적 분리 기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의 법관 사건배당 예규에 공동피고인 1인에 대한 사실심 선고 이후에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분리기소를 재배당 사유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 386

55. 중대비위를 저지른 판검사, 기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비위를 저지르고 퇴직을 했음에도 변호사법 8조상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적용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적용에 협회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387

56. 청문회 대상자인 국무위원 후보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388

57. 법관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등 각종 성비리를 저지르고도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89

58. 초범, 반성, 음주 등 범죄사실과 무관한 양형기준으로 인해 범죄자 형량 감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있음. 직접적 범죄사실과 무관한 양형기준이 감형 요소에 포함된 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 390

59.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서울에 집중돼있는 사법기관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391

60.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인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392

61. 검찰이 과도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초 사건과 관련 없는 사안까지 수사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 393

62. 사이버렉카, 배드파더스와 같은 사적 제재가 횡행하는 것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 394

63.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여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395

64. 현행법 상 체액 테러 범죄의 경우 재물손괴로 처벌받고 있음. 체액 테러 범죄 역시 성폭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396

65. 배우자와 자녀가 2016년 ~ 2017년 제주도에 거주하게 된 경위는? ····· 397

66. 대법관 구성이 특정 성별·학교·직업으로 경도되어 있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보완 방법은? ····· 398

《소병훈 위원 서면질의》 ····· 401

1.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401

2. 후보자께서 대법관에 임명되고자 하는 이유는? ····· 402

3. 대법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403

4.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이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404

5. 후보자가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 405

6. 판사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 3가지와 후회되는 일 3가지는 무엇인가? 406

7. 후보자의 재판 중 가장 의미있고 자랑스러운 판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판결은 무엇인지와 그 이유는? ····· 407

8. 대법관 퇴임 후 계획은? ····· 413

9. 법원의 대표적인 문제점 세 가지와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 414

10. 법원 개혁 우선순위 5건이 있다면? ····· 415

11. 상고심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는? ····· 416

12. 평생법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제도 도입이 안 되는 원인에 대한 견해는? ····· 417

13.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419

14.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개혁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420

15.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있다면 이를 해소할 방법, 없다면

국민의 인식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421

16. 법원, 검찰 등 법조계의 기수 문화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개선 방향은? 422

17.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원인과 해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23

18.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424

19. 법적 판단의 최종 권한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대법원과 헌재는 어떠한 관계이며 어떤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가? ····· 425

20. 일 가정 양립에 대한 견해와 여전히 양립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426

21.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그 사유에 대한 견해는? ····· 427

22.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428

23. 사형제 존폐 및 사형 집행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29

24. 동성결혼 및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30

25.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31

26. 사회적 약자를 위해 후보자가 노력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를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책무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 432

27. 종교인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33

28.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그 한계는 무엇이라 보는가? ····· 434

29.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35

30.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것에 대한 견해는? ····· 436

31. 현재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다양한 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437

32.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조정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38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439

34. 공판중심주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40

35. 대법원 구성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41

36.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42

37. 조건부 구속 영장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43

38.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444

39. 법관회의 활성화를 통한 법원 내부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법관회의를 국민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회의결과 및 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현실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 445

40. 법원의 전문성, 독립성, 민주성, 관점에서 노동법원, 환경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46

41. 현행 노조법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파업', 즉 합법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파업이란 원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임.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법원이 이를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 왔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47

42. 공익 소송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주의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은? ····· 448

43. 후보자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고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 449

44.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 도입 등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50

45.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입장은? ····· 451

46.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판결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452

47.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며, 입증이 되지 않으면 기각되고 있음. 증거와 정보의 구조적 편재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과실이나 결함,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면? ····· 454

48.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의 제조사 책임 판례가 0건인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455

49. 지난해 12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1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음. 극단적 초과 노동을 대법원이 허용했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56

50.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권익위는 디올백 수수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으니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57

51. 전세 사기에 대해 과감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경법이 개정돼야 함.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를 반대해 개정이 무산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58

52.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459

53.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 할 수 있다" 라고 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 후보자는 동의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61

54.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것은 '국회의사당을 점거·폐쇄'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63

55.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2·3 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것은 '보안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라고 판단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64

56.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계엄군을 진입시킨 것은 형법 제87조 상 '폭동'에 해당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65

57.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기수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66

58. 현재 국민의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결론이 나기 전에 상설특검이 추천 및 임명된다면 해당 심리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만약 위헌 적인 것으로 결정날 경우 특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 467

59. 내란죄의 정범들이 국헌문란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내란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68

60. 24년 12월 3일 22시 기준, 대한민국은 헌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70

61. 국무회의의 심의 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이 부서한 문서가 없는 경우, 해당 국무회의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71

62.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에서 행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72

63. 비상계엄 선포 시 지방의회에서 행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72

64. 비상계엄 선포 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방식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73

65.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의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명령 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74

66. 비상계엄 선포 시 의료인을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계엄법 상 '동원 또는 징발'에 해당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74

67.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시킬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75

68. 비상계엄 선포 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압수수색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475

69. 비상계엄 해제 이후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표결 이전 자신의 경호인력을 대동하고 국회를 방문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국회에 대한 폭력 혹은 위협 행위로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76

70. 대통령 경호처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헌법상 규정된 영장제도를 침탈하는 행위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477

71. 내란죄는 언제 종료된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78

72. 내란죄의 기수가 인정된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79

73. 대통령이 사고나 궐위에 의한 직무정지 없이 특정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고 한다면 이는 합헌적 행위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80

74. 대통령이 자의에 의해 2선 후퇴를 밝힌다면 이를 뒷받침할 헌법적 근거가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80

75. 헌법 상 '사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81

76. 헌법 상 '궐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81

77. 대통령의 자의에 의한 2선 후퇴, 국정 위임은 헌법 상 '궐위' 나 '사고'에 해당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81

78. 탄핵심판 중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82

79. 국민적 관심이 큰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483

80. 사회 일각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최근 공직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후보자는 이 같은 부정선거론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484

81. 후보자의 정치성향(ex, 진보, 중도, 보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485

82. 대법관의 정치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입장은? ····· 486

83. 대법원 판결은 각분야의 중요한 법적 선례를 제시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주목할 만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487

84.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관련 주요 판결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88

85. 약자 등 취약계층 권리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은? ····· 489

86. 대법관으로서의 목표는? ····· 490

87. 성평등 사회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과 후보자의 철학은? ····· 491

88.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과 후보자의 철학은? ····· 492

89.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현직 법관 위치추적을 시도했는데, 이것은 사법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생각은? ····· 495

90. 12·3 비상계엄 당시 군, 현직 법관 위치추적 시도 관련해 구체적인 법적 책임 근거는? ····· 495

91. 12·3 비상계엄이 당시 포고령 1호에 따르면, '국회'의 활동을 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는지? ····· 496

92. 5·16이 군사반란인지 혁명인지? 그 근거는? ····· 497

93. 대법관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그 근거는? ····· 498

94.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은? ····· 499

95. 서울대/50대/남성 등으로 이뤄진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이 부족해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후보자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동의하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 500

96. 유신헌법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그 근거는? ····· 501

97.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건국 시기는 언제인지? ····· 502

98.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의 제3자 변제 추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03

99.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법 제도의 한계와 개선되어야 할 점 3가지는? ····· 504

100.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법개혁 과제 3가지와 실질적인 실행방안은? ····· 506

101. 후보자는 현재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508

102. 법원의 재판처리 지연 문제 관련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원인과 실질적인 해결책은? ····· 509

《최기상 위원 서면질의》 ····· 513

1. '의심에도 유통기한이 필요하다', '특수 수사엔 마침표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검찰이 수사 종결을 미뤄 불안정한 피의자 상태로 장기간 묶어두는 등의 '정신적 괴롭힘'에 대한 의견과 이를 견제한 후보자의 판결 사례를 제출(사건번호와 주요 판결 내용 병기) ····· 513

2. 사건을 여러 개로 나눠서 순차 기소하는 등의 일명 '쪼개기 기소'에 대항하여 선고했던 단호한 판결의 사례를 제출(사건번호와 주요 판결 내용 병기) ····· 515

3.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 전임 도지사 수사로 13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K-압수수색'이라는 비판과 '법원은 영장 자판기'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제출 (한겨레 「[아침햇살]법원은 '영장자판기'인가」 박용현, '23. 3. 21. 참조) 516

4.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 반 동안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905명에 이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제출 ····· 517

5.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검사가 판사에게 제출하는 의견서에 추가 수사할 제2, 제3의 혐의를 적어 놓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제출 ····· 518

6. '검찰 개혁의 핵심은 구속 수사 시스템을 혁파하는 데 있다'는 의견과 대안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 제출 ····· 519

7.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 3심 모두 다 무죄여서 공소장 내용이 허위라고 볼 경우도

있는데, 검사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해당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제출 520

8. '정치의 사법화'에 이은 '사회의 사법화'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사회의 사법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제출 ····· 521

9.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후보자의 판결 사례를 제출(사건번호와 주요 판결 내용 병기) ····· 522

10. 우리나라는 '시기상조의 나라'라는 자조가 있음.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되 실행은 나중으로 미루자는 뜻임. 소수자·약자의 권리를 위하여 사회 대다수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소수자와 약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가 첫 번째 판결을 한 사례 제출(사건번호와 주요 판결 내용 병기) ····· 525

1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알고 있는지와 그 차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 ····· 528

12.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 중 어떤 견해가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제출 ····· 530

13.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 지식보다는 '시대를 앞서 인권의 가치를 식별하는 밝은 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후보자의 실제 사례를 제출 531

14.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근본적 차이점은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의 체제를 찬양할 자유가 있으나 스파르타에는 스파르타 이외의 체제를 찬양할 자유가 없다는 점이다"라는 데모스테네스의 말과 "남한과 북한의 근본적 차이점은 북한에서는 북한 이외의 체제를 찬양할 자유가 없다는 점이다"(출처: 정당한 위반, 박용현, 2011)라는 의견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관점에 비추어 후보자의 견해를 제출 ····· 532

15. "공적인 이슈에 대한 토론은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강력해야 하며, 널리 열려 있어야

한다는 원칙, 그러자면 정부를 향해 격렬하고 신랄하고 때론 불쾌할 정도로 날선 공격이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 온 나라가 충실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절대적 주권이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를 창조했으며, 우리의 정부 형태는 권력의 집중 혹은 권력 그 자체에 대한 불신에 기반해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미국 연방대법원 뉴욕타임스 vs 설리번 판결)"라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제출 533

16. 본인과 배우자의 최근 10년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내역 ····· 535

17. 최근 10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 등의 연간 기부 및 봉사활동 내역 제출 ··· 537

18.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증여 내역 제출 ····· 538

19. 법관 이전 서울대 학부 재학 당시 등 신군부 정권(전두환 정부)의 독재, 탄압 등에 대항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한 사례를 제출 ····· 539

20.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 대통령실의 누구로부터 후보자 검증 동의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만나서 듣거나 전화를 주고받았는지 여부 제출 ····· 540

21.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특히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집약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가 큼. 이에 대한 의견은? ····· 541

22. 압수수색 영장청구 대비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 것에 대해(2022년도 기준 91%)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은? 542

23. 향후 부적정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수사를 기반으로 한 하급심 판결을 과감하게 파기할 용의가 있는지? ····· 543

24. 대법원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2월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 544

25. 위 '형사소송규칙 개정안'내용 중 압수수색 전 법관이 수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면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대한 의견은? ····· 544

26. 압수수색된 정보가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음. 예를 들어 휴대전화가 압수수색된 경우 어느 선까지 정보를 열람했으며, 이후 정보가 폐기되었는지 등을 알기가 어려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은지? ····· 546

27.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내용 중 압수수색영장 청구시 '검색어, 검색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명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의견은? ····· 547

28. 다른 재판에 비해 노동재판의 하급심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은? ··· 548

29.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적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 내, 사법 외에서 어떤 노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 549

30. 현 제도는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후보자를 지명하여,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재 대법관, 헌법재판관(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의 임명 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과 같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각각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550

31.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임명, 지명하도록 한 헌재 재판관 구성방식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551

32. 현재 대법원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 552

33. 과거부터 막말 판사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판사의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553

34. 판사 재직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건입니까? ····· 554

35. 현재 우리 사회에 산적해있는 여러 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556

36. 여성혐오, 성차별 해소를 위한 어떤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557

37. 성소수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558

38.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559

39.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임에도 여전히 사형을 구형하는 검찰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559

40.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에 게시되는 판결문은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 가량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판결문에 접근하여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560

41. 최근 들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유죄 선고되는 성범죄 사건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561

42. 성범죄 방지를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563

43.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564

44. 「경범죄 처벌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도로교통법」 등은 경미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범죄자로 규율하고 있어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경미범죄는 '범죄'라기보다는 '질서위반'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과감하게 비범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65

4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활발히 기소가 되고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모욕죄의 경우에는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는 사례가 많은 등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566

46. 검사장, 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퇴직자가 대형로펌 등에 자문, 고문변호사로서 개업하는 행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568

47.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569

48. 대법원의 구성이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의 고위 법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과 재야인사 등은 배제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570

49.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571

50.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572

51.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도입되어야 할 제도 중 가장 합리적인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573

52.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도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574

53. 낙태죄 완전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575

54.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검사나 연임발령을 받지 못한 판사,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검사가 퇴직하여도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 등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차장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하여 퇴직 후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직무상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78)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576

55.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10년마다 형식적인 연임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법관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79)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577

56. 현행 「법원조직법」은 연임 부적합 사유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와 근무성적 불량, 품위유지 곤란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관의 연임 여부를 법원 내부에서 이루어진 평정에만 의존한 결과, 잘못된 재판을 한 법관, 재판 과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법관이나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법관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98)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579

57. 노란봉투법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580

58.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개별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가담 정도와 지위를 따져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은? ····· 581

59. 하위직 법원공무원들의 승진 적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하위직 법원공무원 승진 적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 해소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582

60. 최근 검찰이 수사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사례가 다수 보도되고 있음. 이처럼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법원의 영장 발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 583

61. 공정하고 신중한 영장 발부를 위해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 ····· 584

62.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 ····· 585

63. 적극적인 추진력과 소통능력을 발휘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낸 구체적 사례를 설명바랍니다. ····· 586

64. 재판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2014년 조사 당시 접수부터 선고까지 평균 252.3일이 걸리던 민사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은 2021년 364.1일로 7년 만에 110일 넘게 늘었음. 이에 대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 587

65. 현행법상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도주우려, 주거부정' 외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위해 우려(보복범죄 가능성)'도 구속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 589

66. 폐지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다시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 ····· 590

67. 법원의 관료화를 해소하고 법관의 독립성, 재판의 독립성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 592

68.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속을 위해서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것 등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음. 하지만, 영장청구 대비 법원의 발부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은? ····· 593

69. 후보자는 판사 재직시절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적이 있는지? ····· 595

70. 후보자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 대비 발부율"은? ····· 596

71. 법관으로 재직하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기소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 597

72. 후보자의 법관 재직 동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기소한 사건에서 이를 과감히 공소기각 한 적이 있는지? ····· 598

73.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 무기평등의 원칙이 실현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 핵심적인 부분은 '양 당사자가 대등해야 한다는 점이고 이를 위해서는 검사의 객관의무가 중요하며, 법원의 헌법원칙에 맞는 판단이 필요함. 이에 대한 의견은? ····· 599

74.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보는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대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 600

75.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 보는지? ····· 601

76.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법원의 서류를 송달받지 않아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수차례 의도적인 송달 회피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지? 602

《천하람 위원 서면질의》 ····· 605

1. 후보자를 항간에서 보수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 605

2. 후보자는 윤미향 전 의원의 항소심을 맡아 1심의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것이 정치적 판결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606

3. 후보자는 2015년 현대차노조가 제기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이후 현대차노조는 총체적 불법 정치적 거래가 의심되는 사법농단 판결이라고 주장했음. 후보자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607

4. 후보자는 2014년 "혁명재판소 판결을 한 재판관들은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특별법의 위헌성 판단을 현저히 해태하고, 재판관들에게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야 한다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2013가합538060 판결문에서 밝혔는데, 이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현재도 같은 입장인지? ····· 608

5. 후보자는 5.16 군사정변이 내란이라고 생각하는지? ····· 610

6. 후보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에 동의하는지? ····· 611

7. 후보자는 국민의 90%가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존엄사 합법화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612

8.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또는 종신형 등 대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613

9. 후보자는 검수완박 등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원활한 재판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614

10. 관행적으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근직이 됨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가 소홀해 진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615

11.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임하고 이로 인해 시·도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직이 됨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가 소홀해 진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616

12.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부정선거 주장 관련 소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617

13. 최근 발의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02, 대표발의 김민전 국회의원)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10, 대표발의 김민전 국회의원)은 대법관 및 법관이 중앙선관위/시·도선관위의 위원직 등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입법안인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618

14. 2020. 4. 15 총선 관련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620

15. 2022. 3. 9.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620

16. 2024. 4. 10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620

17. 형법 제87조 소정의 내란의 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에 "폭동"이 특정 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 '시간(duration)'의 요건이 존재한다고 후보자는 생각하는지? 621

18. 형법 제87조 소정의 내란의 죄의 기타 구성요건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폭동이 "2시간" 동안 발생하였다고 하여 내란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622

19.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 제27조에 따라 동일하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특정 유명 정계, 재계 공인 등의 사건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공소제기일로부터 확정판결시까지의 기간이 독보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23

20. 소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적인 재판지연 전략에 대해 법원이 취하여야 할 대책 및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개선방향이 있다면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림. 624

21. 특정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의 경우 기소된 시점부터 선고까지 799일이 소요되는 등 평균 처리 기간인 120일에 비해 6.7배나 길게 소요된 상황인바, - 이는 단식 투쟁을 통한 재판 연기, 변호인 선임 지연, 재판부 기피 신청 남발, 공판준비기일 반복 요청, 소송 서류 수령 거부 등 피고인의 의도적 재판 지연의 결과라는 지적이 다수인 상황 - 후보자의 27년 간의 법관 생활 중 이러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는지? ····· 625

22. 소송 당사자의 고의적 재판 지연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피고의 적극적 방어권 행사라 보는지, 아니면 공익을 침해한다고 보는지 626

23. 일반적으로 재판은 소송 비용의 증가 등의 이유로 신속히 결론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유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 627

24. 소송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사유는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후보자가 볼 때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에도 영향을 주어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 628

25.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으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대통령 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 629

26. 영국과 호주는 소송법, 절차법 등에 의해, 캐나다는 대법원이 선언한 조던 원칙 등에 의해 재판의 불합리한 지연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신속한 재판 원칙을 천명할 뿐, <절차 관리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부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국내 사법 체계에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재판 지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지? ····· 630

27. 만약, 재판 지연 예방 제도를 마련한다면 국회의 입법(영국, 호주)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대법원의 자체 기준 마련(캐나다)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632

28. 후보자는 형법상 국토참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633

29. 후보자는 형법상 국헌문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634

30. 후보자는 형법상 폭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635

31. 후보자는 형법상 내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636

32. 후보자는 형법상 내란 미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637

33. 후보자는 형법상 내란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638

34. 후보자는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639

35.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가 형법상 국토참절이라는 데 동의하는지? ····· 640

36.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가 형법상 국헌문란이라는 데 동의하는지? ····· 640

37.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가 형법상 폭동이라는 데 동의하는지? ····· 640

38.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하는지? ····· 640

39.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가 형법상 내란 미수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하는지? ····· 640

40.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하는지? ····· 640

41. 윤석열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데 동의하는지? ····· 640

42. 후보자는 형법상 직권남용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641

43.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하는지? ····· 642

44.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643

45.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대법관 임명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지? ····· 644

46.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지? ····· 645

47.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지? ····· 646

48. 늘어나는 소송 건수에 비해 예산 및 시간 등의 제약으로 자질 있는 법관의 육성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 바,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전제로 법관의 업무 부담 완화와 재판의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원의 조직, 소송의 운영 등과 관련된 개선 복안이 있는지?(조직 효율화 방안) ····· 647

49.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법원의 양형 기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 바, 다음의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청함. 649

50. 일각의 소송대리인 등은 항소심에서의 증거신청과 관련하여 일부 재판부가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만을 강조해 실질적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들어 과도한 증거신청 및 증인신문 불허 경향을 보이는바 증거신청과 관련한 탄력적 판단 및 개선 요청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652

51. 소액사건과 관련해 소액심판을 담당하는 1인의 담당 법관이 맡은 사건의 수가 과도하고 이로 인해 비록 액수는 소액일지언정 소송당사자들에게 이는 일생일대의 주요 사건인 점 등을 들어 충실한 재판을 담보하고자 법관 증원 등을 통한 소액사건 담당 재판부의 과도한 사건 비중 완화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653

52. 일부 법관들은 소송진행 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조정 및 소 취하 권유를 남용하여 이와 관련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개선 방안은? ····· 655

53. 항소심의 경우 제1회 기일에 변론 종결 하는 것이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타당한 주장 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656

54. 현재 대법원 심불종결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하여 3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심불종결의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657

55. 일반 국민 및 소송대리인들의 판결문 접근성 개선 요청과 관련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은? ····· 658

56.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등을 포함 일선 법원의 준칙과 관련해 이는 소송결과의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효력을 가지는 반면 실무준칙 제정 과정은 사실상 법관들의 내부 논의에만 그치고 이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659

57. 국선변호인의 보수 현실화의 필요성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은? 661

58. 법원이 전문성있는 조정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662

59.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법관평가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등의 지적사항을 더욱 효율적으로 법원 및 법관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은? ····· 663

60. 정치인, 언론인, 재벌 등 사회적 공인과 관련된 판결을 하는 법관의 사법적 판단의 결과에 따라 법관 개인 및 그 가족의 신상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정보통신망 상에서 공유되어 사실상의 위협이 가해지는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은? ····· 665

61. 정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의 주최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666

62.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 행사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기에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667

63. 12·3 계엄 사태와 선포 및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대통령의 군대 파견은 고도의 통치행위, 즉 정치적 의견 표시일 뿐, 물리력 행사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 또는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668

64.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지속적인 탄핵 시도, 예산안 감축, 공직자들에 대한 조롱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에서 국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기에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669

65. 검찰, 공수처, 공조수사본부 등의 대통령실, 관저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지속적으로 불능되고 있는 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71

66.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 및 '피해자 중심주의'는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672

67.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맞추어 무겁게 처벌하거나 반좌율(反坐律)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674

68. 최근 12·3 계엄사태 등으로 부각된 부정선거 관련 논의 등을 참고할 때, 정보통신망 중 특히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 음모론을 다루는 내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임. 개인의 표현의 자유(유료 컨텐츠의 경우 직업의 자유)와 공익간 비교형량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정치/사회/문화적 음모론"이 (1) 불허되어야 한다고 여기는지 (2) 규제되어야 할 콘텐츠의 한계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 생각은? ····· 675

69.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전차가 5명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레버를 당길시 전차가 1명이 있는 다른 선로로 전환된다면 후보자는 레버를 당기겠습니까? 676

이춘석 위원장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이춘석 위원장 서면질의》

1. 후보자가 법관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판결과 가장 후회되는 판결,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각각의 이유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 후보자가 법관을 하면서 보람 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51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처리하였던 사건 중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 약 200여명이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 업체에 고용되어 직접생산 또는 간접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현대자동차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로 인하여 현대자동차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이른바 '사내도급' 형태의 분업적 생산방식이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사내 하청을

근로자파견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79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처리하였던 사건 중 강제동원 피해자가 특정 전범기업을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파기환송 판결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선언된 후 위 대법원 판결이 재상고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재상고심 사건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해석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전히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최초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구제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6784 판결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담당하였던 사건 중 군훈련소에 입소하였던 망인이 다른 군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사망하였음에도, 국가가 유족에게 사망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등 순직 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의 행사 가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망인이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다른 특별법에 기초한 보상청구 이외에,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국가의 공무원에게 유족이 전사망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연금 등을 지급받거나 전사망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망 경위, 사망의 사유, 순직 여부, 순직에 따른 연금신청, 국립묘지 안장 절차 등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많은 고민 끝에 1심과 달리 망인의 유족이 망인의 순직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순직자의 유족으로서 연금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로와 존중을 받지 못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여 국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는 병사를

국가가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순직 사실 통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의 구체적 경위를 숨겨 순직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경우, 국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바로잡지 않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여 책임을 모면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과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책임 등을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아쉬웠던 판결로 기억에 남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노106 판결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시 처리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옆집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개정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처벌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 후보자는 위 규정의 '신체적인 장애'를 해석함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모든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해자가 그러한 정도의 신

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후보자와 같은 고민을 하던 하급심 판사들의 다수 실무례이기도 하였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2016도4404 판결)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진일보한 판결을 하였고,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24 판결

- 이 사건은 구분건물의 지분 대부분을 임대받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백화점을 설치하면서 소수지분권자 소유 구분건물의 이용통로 등을 막는 벽을 설치하자 소수지분권자가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공용부분에 설치한 벽 등의 철거를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후보자는 구분소유자인 '소수 지분권자 보호'를 위해, 벽 등의 설치가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함에도 적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2023다240879 판결)은 위와 같이 철거를 구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으로써, 원고 청구 기각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다수지분권자의 횡포를 막고 소수지분권자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은 없는지 보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7910 판결

-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기업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를 수급 받았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가 사전에 원고의 선지출 공사비가 적정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이러한 집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 자체가 손해액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소수 지분의 수급업체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 내지 절차적 보장의 소중함과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2023다253929 판결)은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소수지분권자의 절차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2.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건이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무거운 마음에 자주 생각나고 법관의 숙명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흐트러짐 없이 모든 사건에 진력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직접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특히 살해 동기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황들에 의하여 살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법관으로 가장 어려웠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고뇌가 남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3.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으로서 모든 법적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합니다. 대법원은 급변하는 사회상황 속에서 법을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규범적 지향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대법관은 법의 해석 및 재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변화하는 사회 상황과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포용력과 공감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대법관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치국가에 있어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헌법보장과 기본권 보장, 소수자 보호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대법관 또는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의 전관예우가 병폐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 법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는 법관이었던 자가 퇴직 후에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면서 재판절차 또는 결과 등에서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관예우를 빌미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재판절차 내에서 전관예우 등의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수임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전관예우를 기대할만한 요소를 차단하는 등 사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형사소송법,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각급 법원의 연고관계 재배당 기준 등에서 정한 신고·회피, 제척, 재배당 등의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관이 평생 법관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법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시니어판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관 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전관예우의 의혹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5.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 남성으로, 현 정부에서 대법관의 표준은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라는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이전 정부에서는 향판·교수·여성 등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며 인적 다양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노동·환경 등 다양한 가치관을 판결에 담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법원 판결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 대법원이 사회적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법관의 성별, 학력, 지역, 이력 등 인적 특성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인적 특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인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성한 대법관들이 사회적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 여러 인적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대법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명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최근 1980년 비상계엄때 불법 구금 후 옥살이한 해직교사 44년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50명도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부림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도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법관으로서 사법부의 지난 과오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 과거 부림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 재심을 통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후보자가 2016년 ~ 2017년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하며 배우자와 차남도 함께 이주했는데, 배우자와 차남은 제주도로 주소지를 이전했지만,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제주로 이전하지 않았는바, 이전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고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8. 2017년 2월 후보자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부임한 것과 별개로 배우자와 차남은 2017년 3월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하였고 같은 해 6월에 다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이전하였는바, 배우자와 차남이 제주 서귀포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유를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 7항 및 8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16. 2. - 2017. 2. 제주법원 근무시 배우자와 차남과 함께 제주에서 주로 거주하고, 장남이 학업을 위해 서울 거주지에서 거주한 관계로 주말 방문 등의 기회에 서울 거주지에 거주하였습니다. 전세기간이 남아 있는 서울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상실 우려 또는 불안감 때문에 본인은 제주법원 관사로 전입신고하지 못하였고, 배우자와 차남만 2016. 2. 16. 세대 분리하여 제주법원 관사로 전입 신고하였습니다 (2016. 2. 중순 인사이동 무렵 당시 차남의 서울 소재 압구정초등학교 입학 배정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바로 전출입하면 그 입학 배정 취소 후 제주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데 반해 며칠을 지체하면 배정

된 서울 소재 압구정초등학교에 입학 후 다시 전학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주시 구남동4길 10-6 소재 임시 거주 제주법원 관사로 전입한 다음, 이후 확정된 제주시 고산동산6길 23 소재 제주법원 관사로 2016. 3. 2. 전입하였습니다). 2017. 2. 본인은 서울로 발령이 나 서울의 원래 거주지로 이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차남은 학교 문제로 2017. 6. 11.까지 4개월 가량 서귀포시에서 거주하다가 서울의 원래 거주지로 전입하여 세대 합가하였습니다.

9. 후보자의 차남은 현재 미성년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약 2,60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자산(예금, 증권투자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차남의 현금성 자산에 대한 자금 출처를 상세히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가, 외가 조부모가 차남의 돌 무렵 너무 어려 걱정이고 앞으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대학교 등록금 용도로 미리 수백만 원 정도씩을 주신 것을 합치니 약 1,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10년 이상 투자 상품에 넣어 수익이 덧붙여졌습니다. 여기다가 부모가 차남 이름으로 들어준 주택청약적금 등을 합쳐 현재 합계 2,600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매년 증가 내역과 관련해서는, 차남 귀속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임시 융통하거나 부모 자금과 함께 혼용하여 운용한 사정, 차남에게 특정시점에 다액의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자 조금씩 미리 차남 명의 계좌에 일부씩 모아두었다가 해당 의료비에 사용한 사정 등이 있습니다.

10. 과거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나중에 수배에 이르는 차익을 실현하여 '편법 증여'라는 논란이 있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게 됩니까?

○ 법관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직무의 성격을 고려하면, 법관으로서는 사법신뢰를 위해 외관 측면에서도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편법으로 오해받을 만한 외관을 만들지 않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어디까지나 헌법이 정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를 위한 장치인데, 이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적극적인 형성권인지, 국회의 입법권 행사 하자에 대한 소극적인 제재권인지 자신의 소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 재의요구권의 법적 성질, 재의요구권 행사의 한계 여부 등에 대해서 학계의 여러 시각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 권한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하여 후보자가 어떠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탄핵 심판 절차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25번째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25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처럼 국회가 정당한 입법 재량범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 권력분립을 침해하는 권한 행사이며, 권력분립의 원리를 형해화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소견은 무엇입니까?

○ 재의요구권 행사의 한계 여부 등에 대해서 학계의 여러 시각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 권한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하여 후보자가 어떠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장 서면질의】

13. 공공성(公共性)과 사사성(私事性)이 충돌할 때 국가영역이 가지는 공공성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이해충돌금지원칙'은 오늘날 단순한 법률적 원칙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해충돌금지원칙이 법률상 원칙인지, 아니면 헌법적 원칙인지 후보자의 소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 공직자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위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 이러한 이해충돌금지원칙이 헌법적 원칙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 현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영부인과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 3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가 공공성보다 앞서는 것이므로 '이해충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소견은 무엇입니까?

○ 헌법 제53조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가족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으로서 동법 제2조 제5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국회 내·외부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현행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포고령에 대한 헌법의 위배 여부에 대해 후보자의 소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계엄법에도 국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내에서도 계엄요건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법원행정처장께서 위헌적 군통수권행사라고 언급하신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제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형법 제91조제2호에 따르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데,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부는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침입해 표결 절차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2·12, 5·18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내란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판결에서 판시한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란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사가 계속 중으로 향후 재판사항이 될 것이 확실시

되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17.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야당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를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행정부의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판의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수행한 판사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해하고 사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거나 내란을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경우,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헌법은 제65조에서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는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정함으로써 탄핵심판이라는 대통령의 직무상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견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다만, 특정한 사안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통하여 판단될 사항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나 국헌 문란 행위에 동조·옹호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방해한 정당의 경우 내란죄의 공범이며 위헌정당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유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에 관하여 수사가 계속 중이고 향후 재판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 대통령의 행위에 동조하였는지, 탄핵심판을 방해하였는지, 나아가 내란죄의 공범이거나 위헌정당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현행 헌법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통치하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그러한 대통령의 탄핵에 국회의원이 동참하지 않는 등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역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가 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사법부가 갖춰야할 입장은 자세는 무엇인지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 우리 헌법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가권력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경우에 대한 견제장치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라는 견제장치를 두고 있으며,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도 말씀하신 쟁점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가권력의 헌정질서 파괴에 대항할 견제장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속하는 만큼,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국정이나 여건 변화 등 그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사법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한 재판을 수행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상 사명을 다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21.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업무상 동의낙태죄 조항 중 '의사'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한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낙태죄가 존속되어야 하는지와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소견과 그 이유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하여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태아의 생명 보호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위헌이나,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낙태죄 조항의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대체입법이 없는 상태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2020. 12. 31.을 도과하여 현재 입법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영역의 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체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공백 상황은 임부와 태아의 지위 양자를 모두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을 키울 수 있으므로, 조속히 입법적 해결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22. 대한민국 헌법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정하였다는 이유로 법률의 하위법규인 명령·규칙의 위헌여부심사권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권한이 어떠한 기관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소견과 그 이유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헌법 제107조는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3.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에 판단은 당해 사건에 명령·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치며, 그 명령·규칙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게 지난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따라서 명령·규칙이 개정되지 않고 계속 적용될 경우 행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후보자의 견해와 그 이유를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는 당해 사건에서 명령·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데 그치고, 해당 명령·규칙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소송법 제6조는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행정소송법 제6조의 적용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24. 사형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이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제한이 아니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합헌으로 결정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형'이라는 대안의 존재와 낮은 위하력, 오판 가능성 등으로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형제를 존속해야 하는지, 폐지해야하는 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폐지해야 한다면 대안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 사형제는 국가가 형벌권의 실현으로 절대적 기본권인 인간의 생명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제도로, 일단 집행되면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형제는 항상 오판을 바로잡을 수 없는 위험이 따르며, 역사적으로 사형제도가 악용된 불행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형제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다수 인명살상 테러,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하여 여전히 사형의 형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법 감정도 간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형제의 폐지는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5. 최근 사법부에는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정치 판사 등 사법의 정치화, 정치권에 의한 사업의 정쟁화, 과거 사법농단 사태 등 복잡한 난제가 쌓여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함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사법개혁을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 사법부에는 다양한 개혁과제가 산재되어 있지만, 이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과제는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하루빨리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사법부는 법관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고, 법원장과 사무국장이 재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기존의 업무 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정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사건심리모델을 도입하는 등 재판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사법부의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신속한 재판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인공지능기술 도입을 통해 새로운 재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률이 개정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구현을 위한 노력에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 밖의 여러 난제와 관련하여서는, 법관의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 함양 고취, 법관 윤리 강화 등을 위하여 법관연수를 강화하고 법관 사회 내 자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윤리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법관 징계를 엄정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박상혁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 후보자로서 본인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총 6년간 재직하면서 중요 상고사건의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한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재판을 담당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추구하고 노력한 이러한 법관으로서의 모습이 부족하나마 저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모든 법적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합니다. 대법원은 급변하는 사회상황 속에서 법을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규범적 지향점으로서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대법관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조화롭게 함께 살 수 있는 법치국가의 틀을 마련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편견 없이 성심을 다하여 경청하고 포용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전체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은 헌법보장과 기본권 보장, 소수자 보호 및 사회적 약자 보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를 위해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며, 소외된 곳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일이야말로 대법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3. 대법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이자 법률심으로서 법률해석과 적용의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정책법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지침과 기준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 최근 법원의 재판 장기화에 대하여 국민들의 심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주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겠습니다.

○ 대법관으로서 개별적 분쟁 해결에 안주하지 않고, 사안에 내포된 새로운 규범적 쟁점을 파악하여 급변하는 사회상황과 가치를 반영하는 해석의 기준 내지 가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고 이를 실천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대법관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 대법관을 포함하여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높지 않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구성원이자 오랜 기간 법원에 몸담아온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다만 OECD 등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조사결과, 재판절차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국민들의 구체적인 지표들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사법기관을 신뢰하는지를 묻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재판절차를 참여했던 국민들의 사법신뢰도는 일반적인 인식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 역시 제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 대법원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사법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은 사법의 본질인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근간으로 반드시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법관 개인을 공격하고 재판을 정쟁의 수단을 악용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판과 판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위와 같은 부당한 시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관 개인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법관들이 사법부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재판제도와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한편으로, 사법부는 재판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재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관들도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언행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대법원 설립 이후, 대법원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판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대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밝히는 것은 대법관 후보자 지위에서 조심스럽습니다.

○ 다만 방법론적으로 대법원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거쳐 논의를 공론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를 선언하는 것은, 법규범 형성에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대법원이 법조문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거래 실상을 살펴 현실성을 갖춘 법리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판결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8. 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대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밝히는 것은 대법관 후보자 지위에서 조심스럽습니다.

○ 다만 대법원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거쳐 논의를 공론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를 선언하는 것은 국민들이 법규범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좋은 판결의 사례들입니다. 최근 예로 부동산이중양도의 배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공개변론 등을 거쳐 법리적 논쟁에서 더 나아가 현재 실상 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유죄를 유지하였습니다. 실상에서 널리 적용되는 법적 논란에 관하여 대법원이 법조문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거래 실상을 살펴 현실성을 갖춘 법리를 선언하였습니다.

9. 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가장 아쉬웠던 판결은 무엇입니까?

○ 가장 아쉬운 대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밝히는 것은 대법관 후보자 지위에서 조심스럽습니다.

○ 다만 아쉬운 판결까지는 아니고, 향후 충분한 검토 아래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부분입니다. 민사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물 개념을 좀더 넓히고 적극적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도모하여 국민들의 소송 피로도를 낮추고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형사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된 절차와 요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엄격하게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공소장에 불필요하게 논란이 되는 증거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핵심적인 공소사실만 기재됨으로써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현재 대법원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 대법원은 과중한 사건 부담으로 인하여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해결책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관련하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상당하므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세한 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부득이하게 심리불속행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심리불속행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상고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권리구제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그 개선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판사 재직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건입니까?

○ 서울행정법원의 합의부 주심판사, 대법원의 보고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회 의견 개진하였고, 그 결과 몇 건 정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져 위헌결정이 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 그 외에도 항상 헌법 규정과 정신을 명심하면서 법률의 해석 적용에서 구현되도록 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8060 등 판결: 5.16 군사정변 후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하여 "특별법의 위헌성 판단을 현저히 해태하고, 재판관들에게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가합1906 판결: 근로자가 건강검진결과를 개인적으로 통보받고 추가적인 검사나 진료 등을 받지 않아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건강진단기관은 결과를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도 통보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결과를 통보받기 위한 적극

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하루하루의 노동 속에 매몰되어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는 근로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의 요청"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7노1519 판결: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검사 항소에 따른 항소심 변론기일 전 수회 검찰에 소환되어 사실상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항소심 공판기일에 범행을 자백한 사건에서, 당시는 이러한 경우에도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 판례와 실무례였지만, 이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훼손됨으로써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항소심 법정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결국 1심의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12. 판사 재직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건입니까?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시 처리하였던 사건 중 1심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한 사례[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노105 판결]가 있습니다.

○ 위 사건은 30대 남성인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함께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50대 여성인 피해자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야산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십 회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안이었습니다.

○ 후보자는 범행의 계획성, 수법의 잔혹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3. 현재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경제적 빈곤층, 이주민, 노인, 여성, 아동, 성소수자 등 여러 인권 현안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권 현안을 해결해야 하지만, 그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우리 사회의 노력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편의제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부도 각종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여성혐오, 성차별 해소를 위한 어떤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우리 사회는 사회구조적인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차별적 요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부도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 직급의 여성비율 확대, 여성의 사법행정 참여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문화 개선 등을 통해 성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 판사 역시 재판을 진행할 때 성차별적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판결을 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송관계인들이 성차별적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재판과정에서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5. 성소수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성소수자 역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다름에 대하여 갈등과 혐오를 표출하기보다는 이해와 포용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소수자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넘어 어떠한 법률적·제도적 보장을 할 것인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견해와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6.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 향후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될 경우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대다수가 공감하는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 일부 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성소수자 역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다름에 대하여 갈등과 혐오를 표출하기보다는 이해와 포용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각에서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에게 특혜 내지 보호를 주어 오히려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넘어 어떠한 법률적·제도적 보장을 할 것인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견해와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8.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형에 관해서는 항상 오판을 바로잡을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나아가 사형제도가 악용된 불행한 역사적 경험도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다수 인명살상 테러,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하여 여전히 사형의 형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법 감정도 간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형제의 폐지는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 청소년범죄의 증가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해지는 경향이 있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확대 및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도 청소년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충분한 연구와 조사 없이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할 경우,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게 되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습니다.

○ 또한, 미성년자는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환경과 교육에 따라 충분히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교화의 대상이므로, 이러한 청소년들은 사회로 복귀시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소년범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개선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까지 모두 처벌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형사책임 연령 하향은 형사책임 연령 도입의 취지, 해외 사례, 형사정책적 요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국민의 여론 등 여러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최근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소년범일지라도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할 필요는 있으나,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자로서 아직 신체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만 받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소년범로 하여금 재범을 하게 할 우려가 있고,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무엇보다도, 소년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응보적 관점을 취하기보다는 소년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가족의 붕괴, 경제적 빈곤 등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우리 사회의 지원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21.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법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는 법관이었던 자가 퇴직 후에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면서 재판절차 또는 결과 등에서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관예우를 빌미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재판절차 내에서 전관예우 등의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수임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전관예우를 기대할만한 요소를 차단하는 등 사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형사소송법,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각급 법원의 연고관계 재배당 기준 등에서 정한 신고·회피, 제척, 재배당 등의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관이 평생 법관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법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시니어판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관 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전관예우의 의혹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2. 최근 5년간 검찰수사로 매년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몇 명이나 대법원에 통보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 등을 받은 법원은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제4조 제2호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 등의 민원성 고소·고발로 인한 수사개시 통보 및 이에 대하여 '각하'하였다는 수사결과통보 등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 최근 5년간 검찰수사로 통보된 비위법관 중 징계위에 회부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2019년부터 2024. 11. 30. 기준 현재까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가 이루어진 현황은 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비위법관의 명단과 징계사유에 대해 법원은 모두 비공개 처분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관징계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징계심의는 공개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징계가 이루어진 법관에 대하여는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징계 등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 징계대상자의 소속 및 지위, 성명, 징계처분일자, 징계의 종류, 징계사유를 모두 관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25.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현재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도 대법원의 사건처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그 수는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상고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권리구제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그 개선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판사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언론 보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 판사가 체포대상에 올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치국가에서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도 이미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정당 대표와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계엄법에도 국회 및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제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인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는 경찰의 무선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이것이 형법 제91조제2항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

○ 헌법 제40조 및 제41조는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개별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인원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현재 수사가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별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개인적 판단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침탈과 직원들의 핸드폰 압수, 서버 탈취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형법 제91조제2항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

○ 헌법 제114조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현재 수사가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별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개인적 판단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이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지?

3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국회의 탄핵, 특검, 예산심의 등 적법한 권한을 사용하여 국정을 견제한 정당 및 정치인에게 경고하는 것이 계엄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32.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계엄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30항부터 32항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2024. 12. 3.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을 지적하고 있고,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생각하는지?

○ 형법 제87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여기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 건의, 공고, 국회 통고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다고 생각하는지?

35. 국무회의 회의록이 부존재하고, 모든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집 요구가 되지 않았으며, 계엄사령관 심의 국무회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 34항 및 35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헌법 제89조 제5호 및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는 등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하여 일정한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내지 통치행위로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기본적으로 해당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동의하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그 위임을 받은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행사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 범위 내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7. 내란 부화수행의 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형법 제87조에서는 내란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에서 내란을 주도한 자로서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주석서에 의하면 '부화수행자'와 '단순관여자'는 막연하게 폭동에 참가하여 폭동의 세력을 확장·증대시킨 자를 의미하고, 기계적 노무에 종사하거나 투석·방가 등의 행위를 한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38. 비상계엄을 전후한 일련의 사태가 내란이라고 판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인지한 상태로 국무회의인줄 알고 참석하여 안건을 논의하였다면 내란 동조 및 방조에 해당하는지?

○ 이는 해당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의 관여 정도, 개진한 의견의 내용 등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현재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이유로 비상계엄 해제까지 4시간 30분여가 소요된 것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계엄법 제11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지체 없이'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없고 구체적 사건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대통령실 등이 군사시설, 공무상 비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제한하는 내란 혹은 외환의 죄로 수사를 받을 경우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다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에 대하여는 해당 압수 대상물의 내용 및 비밀성, 혐의 사실의 내용 및 성격을 포함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재판 사항에 해당하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승낙 요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의 기밀이 제한 없이 공개됨으로 인한 국가적 불이익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반론으로, 승낙 요건, 즉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

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심사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물 확보가 책임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책임자가 이의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을 봉인하고 법원의 확인을 거쳐 압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해볼 만한다고 생각합니다.

41. 비상계엄 및 탄핵안 가결 이후 국가 위기 상황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역할은 어떠한 국가적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입니다.

○ 향후 국정이나 여건 변화 등 그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사법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한 재판을 수행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2.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에서 확인된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가 있다면?

○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향후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향의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3.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에 따르는 불확실성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 모든 재판절차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와 관계인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여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적법하게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비상계엄을 전후한 일련의 사태가 내란이라고 판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국회의사당이 아닌 당사 및 제3의 장소에서 의원총회 등을 소집했다면 내란 동조 내지 옹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이는 해당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로부터 추천된 헌법재판관 공석은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 권한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헌법학계의 다수의 견이고,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지난 10년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상고심 각각의 사건접수에서 선고까지 평균 기간은?

○ 공직선거법 위반

구분 / 연도별	평균처리기간(월)	
	항소심	상고심
2014년	2.5	4.8
2015년	2.6	3.6
2016년	2.3	6.2
2017년	3.6	4.0
2018년	3.8	7.4
2019년	3.9	3.8
2020년	6.3	3.9
2021년	4.7	8.4
2022년	6.0	3.4
2023년	6.0	2.4
2024년 1월 ~ 11월	8.2	3.1

출처: 2024. 12. 18. 전산자료

※ 형사공판 특별법 중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관한 자료임
※ 피고인의 대표죄명을 기준으로 작성함

47. 지난 10년간 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에서 대법 판결까지 평균 기간은?

○ 전심급 형사공판 특별법 중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평균처리기간 현황입니다. 다만, 기소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소요기간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구분 / 연도별	평균처리기간(월)		
	제1심	항소심	상고심
2014년	1.9	2.5	4.8
2015년	3.3	2.6	3.6
2016년	2.3	2.3	6.2
2017년	3.4	3.6	4.0
2018년	2.4	3.8	7.4
2019년	3.9	3.9	3.8
2020년	2.6	6.3	3.9
2021년	6.5	4.7	8.4
2022년	4.0	6.0	3.4
2023년	6.7	6.0	2.4
2024년 1월 ~ 11월	4.0	8.2	3.1

출처: 2024. 12. 18. 전산자료

※ 형사공판 특별법 중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관한 자료임
※ 피고인의 대표죄명을 기준으로 작성함

48. 지난 10년간 선거법 위반 사건 중 기소에서 대법 판결까지 가장 기간이 짧았던 사건과 가장 길었던 사건은 무엇인지?

○ 전심급 형사공판 특별법 중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최장, 최단 처리기간 현황입니다. 다만, 기소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소요기간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종국기간: 2014년 ~ 2024년 11월

구분 / 심급별	처리기간(일)	
	최단	최장
제1심	7	2,264
항소심	15	2,037
상고심	29	1,617

출처: 2024. 12. 18. 전산자료

※ 형사공판 특별법 중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관한 자료임

※ 피고인의 대표죄명을 기준으로 작성함

※ 종국결과가 '이송', '재배당', '재정합의', '항소취하', '상고취하'인 사건은 제외

4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의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법원이 소송지휘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 일반론으로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정치인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보다 부당하게 빨리 또는 늦게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공정성 시비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어느 모로 보나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그 외 개별 재판의 진행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법령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미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므로 미 검찰은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보고 임기 중에는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기소를 취소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헌법 제83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 중지가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종래부터 헌법학계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되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성남 FC 재판 관련, 재판부가 '공판때마다 타검찰청에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즉각 퇴정을 명령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해당 사건에서 '1일 직무대리 발령'에 관하여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검찰 측에서 이에 관하여 반발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제5조,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근무 규칙 제4조를 들어 위와 같은 1일 직무대리 발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들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소송지휘권 행사는 해당 재판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고, 해당 소송지휘의 적법 문제는 향후 재판사항이 될 것이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검찰이 사건과 관련없는 SNS, 블로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유죄를 추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제기하여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정리하라'고 명령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나 소송지휘권 행사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검찰이 사건과 관련없는 SNS, 블로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유죄를 추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를 함에 있어 법원에 예단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없고,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그 당부를 떠나서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성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 다만, 재판부로서는 증거채부 단계에서 증거의 성격,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54.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데, 평소 친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일년에 몇 번 가량 만남 및 연락을 취했는지?

○ 연수원 시절에 대통령과 서로 알지 못하였고 인사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이후로도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 대통령과 공적,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55. 배우자와 차남의 제주도 거주 사유는?

○ 2016. 2. - 2017. 2. 제주법원 근무시 배우자와 차남과 함께 제주에서 주로 거주하고, 장남이 학업을 위해 서울 거주지에서 거주한 관계로 주말 방문 등의 기회에 서울 거주지에 거주하였습니다. 전세기간이 남아 있는 서울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상실 문제 때문에 본인은 제주법원 관사로 전입신고하지 못하였고, 배우자와 차남만 2016. 2. 16. 세대 분리하여 제주법원 관사로 전입 신고하였습니다(2016. 2. 중순 인사이동 무렵 당시 차남의 서울 소재 압구정초등학교 입학 배정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바로 전출입하면 그 입학 배정 취소 후 제주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데 반해 며칠을 지체하면 배정된 서울 소재 압구정초등학교에 입학 후 다시 전학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주시 구남동4길 10-6 소재 임시 거주 제주법원 관사로 전입한 다음, 이후 확정된 제주시 고산동산6길 23 소재 제주법원 관사로 2016. 3. 2. 전입하였습니다). 2017. 2. 본인은 서울로 발령이 나 서울의 원래 거주지로 이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차남은 학교 문제로 2017. 6. 11.까지 4개월 가량 서귀포시에서 거주하다가 서울의 원래 거주지로 전입하여 세대 합가하였습니다.

56. 법원 설치시 관할 지자체의 인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법원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현되는 물적 토대로서, 관할인구 및 사건 수, 지역 주민의 사법접근성, 법원 전체 관할의 합리적 배분, 부지 및 청사 신·증축을 위한 예산 소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은 법원을 설치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생각하고,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7. 법원 설치시 관할구역 조정의 목적과 원칙은?

○ 법원설치는 물론 관할구역 조정 역시 입법사항이므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법원 설치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법원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 간 관할의 합리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8. 주민들의 법원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 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서 당연히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법원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은 물론 정보화 기술을 이용한 소송 이용 과정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9. 관할 법원까지의 거리 및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등 접근성이 법원 이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 법원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법원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은 물론 정보화 기술을 이용한 소송 이용 과정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관할 법원까지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할 경우, 법원 방문에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는 특히 고령자, 장애인,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들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법원 접근성은 법원 이용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입니다.

60. 법원 신설시 기존 법원의 기능 축소를 우려하여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신설 법원보다 훨씬 먼 거리의 기존 법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 가까운 곳에 새로운 법원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 있는 기존 법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원 신설로 인한 사법접근성 제고 효과를 반감시키고 가까운 거리의 법원을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차별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원 신설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인 만큼, 현재 신축 중인 법원의 청사 수용 가능성, 법원 전체 관할의 합리적인 배분 등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 및 법조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결론이 나길 기대합니다.

61. 신설되는 법원이 기존에 관할 법원보다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존 법원을 이용하도록 강제받을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낄 것으로 생각하는지

○ 가까운 거리에 법원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이 변경되지 않아 먼 거리에 있는 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관할변경은 법원 신설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재 신축 중인 법원의 청사 수용 가능성, 법원 전체 관할의 합리적 배분, 지역 주민들의 법원 이용의 불편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은 물론 법조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결론이 나길 기대합니다.

63.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부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가 강압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했고 이를 방기 및 방관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2018년이 되서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권고했음. 이에 대한 후보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보상과 사과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현재 형제복지원에 집단수용 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형제복지원 내부에서는 12년 동안 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죽은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암매장되거나 소각되기도 했는데 박인근과 같은 직접 관계자는 처벌도 받지 않은채 2016년에 사망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자들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관계자들의 처벌 여부는 수사 및 재판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5. 형제복지원의 운영 방식과 비리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묵인하거나 적극 지원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범죄가 아닌 국가의 구조적 폭력임을 보여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어떠한지?

○ 현재 형제복지원에 집단수용 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의 정부는 법적 절차와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시민을 억압했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로 보여지는데 이에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재 형제복지원에 집단수용 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법원 차원에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과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불행한 역사가 있었으며,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후보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던 분들을 위로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68. 장남이(같은 아파트 단지인) 외조부 댁에 전입신고하여 살고 있는 경위

○ 후보자 자택은 장성한 장남과 함께 4인이 거주하기 불편한 반면, 외조부모의 자택은 두 분만 거주하여 공간의 여유가 많고, 장남의 외조부모께서 80대로 연로하셔서 누군가 함께 기거하며 보살펴 드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려서부터 외조부모를 잘 따랐던 장남이 외조부모 자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69. 장애 여성에 대한 강간범에 대한 재판의 항소심이었던 2016. 3. 16. 선고 2015노106, 2015전노9(병합) 판결 이후 상고심을 진행한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장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시 처리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옆집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개정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처벌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 후보자는 위 규정의 '신체적인 장애'를 해석함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모든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해자가 그러한 정도의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후보자와 같은 고민을 하던 하급심 판사들의 다수 실무례이기도 하였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2016도4404 판결)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진일보한 판결을 하였고,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70.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과 구체적인 논거

○ 12·3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내에서도 계엄요건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법원행정처장께서 위헌적 군통수권행사라고 언급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제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현재 헌법이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성적 지향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므로, 성적 소수자도 성정체성 자체만을 이유로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 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소수자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넘어 어떠한 법률적・제도적 보장을 할 것인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견해와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현재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불수리불복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배우자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일각에서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판결이라 주장함. 입법부와의 관계에 있어,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대법원은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집단에게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이와 별개로 사법부는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3. 이혼 후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더라도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지 9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양육비 이행률은 절반이 되지 못하는 현실. 양육비 판결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은데 양육비 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 양육비 미지급은 양육자와 미성년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여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정서적 연결고리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양육비 지급의무의 신속한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서, 그 전 단계인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거나(2024. 9. 27. 시행),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내용(2025. 7. 1. 시행)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양육공백이 방지되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4. 대한민국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초로 하고 있고 위자료 등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국민들의 법감정은 위자료를 더 크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현재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위자료 액수의 형평성 제고, 위자료 현실화 방안, 유형별 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새로운 위자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법원에서도 그동안의 사회변화와 실무의 동향을 반영한 새로운 위자료 산정기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 역시 현실적이고 형평성 있는 위자료 산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75. 우리 법원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있고, 손해액을 원고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 환경 범죄 등의 경우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소비자, 주민 등이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그동안 국회는 제조물책임법 등의 입법을 통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피해자들이 더 충실히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옴. 최근에는 민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인지?

○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특허법 등 다양한 법률에 도입되어 있고, 이를 도입하는 법률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법행위로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손해를 충분히 보전하게 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반적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해외 국가의 사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인 여건을 살펴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76. 소송 진행시 통상적으로 패소한 쪽이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때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액이 너무 적어 당사자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변호사 보수액 상향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의 입법 취지에 관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제소하거나 응소하려는 자가 패소할 경우의 변호사보수의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가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소송비용으로 산입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마384 결정).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경제사정의 변화, 법률시장에서 결정되는 변호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승소당사자의 권리보전과 패소당사자의 남소 또는 부당응소에 대한 실효적 억제수단이 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18. 3. 대법원은 경제사정의 변화, 소송목적의 값의 상승 등을 반영해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를 현실화하고자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을 개정하였고, 그 산입비율을 상당한 폭으로 인상한바 있습니다.

○ 다만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범위와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소송당사자가 패소할 경우의 변호사보수 상환책임 부담을 우려해 소송제도의 이용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곽상언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곽상언 위원 서면질의》

1.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등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등 행정부 마비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계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및 '병력을 동원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국회'의 기능까지 제한한 것은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만 특별한 조치를 허용하는 헌법 규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는 향후 관련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를 통해 이를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계엄법에도 국회 및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제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2·3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 등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러한 행위에 절차적, 형식적 문제 등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89조 제5호 및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는 등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하여 일정한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제4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그러한 통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헌법과 계엄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 검찰이 대통령 및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부분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수처가 이첩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의 적법성 등이 문제되지 않도록 수사권의 조정이 세심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 등)들에 대해 수취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재판절차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와 관계인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여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적법하게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6번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서류들이 '송달 간주' 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가 적법하게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사태에 대해 '당당한 입장'이라며 '내란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87조의 내란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유·무죄에 관한 개인적 판단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에 있으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으며, 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진입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심의 의사, 공동정범 해당 여부 등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할 뿐더러, 향후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두환 등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에 관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 신군부 측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적으로 해당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동의하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그 위임을 받은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행사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 범위 내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이어) 대법원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으로써 외형상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절차적 적법성 외에도 범죄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2·12, 5·18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13. (이어)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한 정권 장악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쟁점에 대해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성공한 쿠데타라 하더라도)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통치행위론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고 이를 존중합니다.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판결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14.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하게 됐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소환을 앞둔 공수처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검·경 협조를 통해 폭넓은 수사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 및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규모로 수사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공수처의 규모나 경험 등에 비추어 대형 사건의 수사 능력에 관하여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수사기관 간의 경쟁이 아니라 정의롭고 효율적인 실체진실 발견이니만큼,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물적·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수사에 관한 정보도 최대한 공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죄에 대해서만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이첩했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 이첩은 불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의 적법성 및 추후 기소의 적법성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었고, 이에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수사 주체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여전히 검찰·공수처의 수사 권한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재판에서 실체에 관한 부분이 아닌 수사의 적법성 등의 심리에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최대한 빨리 명확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연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며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유·무죄에 관한 개인적 판단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별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개인적 판단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계엄군의 본청 진입 시도와 더불어,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별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개인적 판단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 알려져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 알게 된 것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원 시절에 대통령과 서로 알지 못하였고 인사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이후로도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20. 2019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이후, 만남과 전화 통화가 몇 번이나 어떤 사유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 공적, 사적으로 전혀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21.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22.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자택이나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23.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24.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인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25. 후보자는 대통령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26. 대법원과 대법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모든 법적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합니다. 대법원은 급변하는 사회상황 속에서 법을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규범적 지향점으로서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대법관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조화롭게 함께 살 수 있는 법치국가의 틀을 마련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편견 없이 성심을 다하여 경청하고 포용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전체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은 헌법보장과 기본권 보장, 소수자 보호 및 사회적 약자 보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를 위해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며, 소외된 곳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일이야말로 대법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7. 대법원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법치국가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법의 명확하고 통일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해 국민의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를 안정화하는 것이 기본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아가 사회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편견 없이 성심을 다하여 경청하고 포용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전체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헌법보장과 기본권 보장, 소수자 보호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28. 대법관이 된다면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인가?

○ 최근 법원의 재판 장기화에 대하여 국민들의 심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고, 헌법적 가치에 대하여 부단히 숙고하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주하며, 국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겠습니다.

○ 대법관으로서 개별적 분쟁 해결에 안주하지 않고, 사안에 내포된 새로운 규범적 쟁점을 파악하여 급변하는 사회상황과 가치를 반영하는 해석의 기준 내지 가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고 이를 실천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 후보자는 어떤 강점을 인정받아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대법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곤란하거나 적절치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만 제청권자의 의견이 반영된 국회 임명동의 요청사유를 읽어보면서, 제가 추구하고 노력한 삶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로서는 과분한 말씀이라 생각되고 그러한 모습을 완성시키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0. 본인의 판결 중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5개의 판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51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처리하였던 사건 중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 약 200여명이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 업체에 고용되어 직접생산 또는 간접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현대자동차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로 인하여 현대자동차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이른바 '사내도급' 형태의 분업적 생산방식이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사내 하청을 근로자파견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79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처리하였던 사건 중 강제동원 피해자가 특정 전범기업을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파기환송 판결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선언된 후 위 대법원 판결이 재상고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재상고심 사건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해석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전히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최초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구제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8060 등 판결

- 5.16 군사정변 후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하여 "특별법의 위헌성 판단을 현저히 해태하고, 재판관들에게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가합1906 판결

- 근로자가 건강검진결과를 개인적으로 통보받고 추가적인 검사나 진료 등을 받지 않아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건강진단기관은 결과를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도 통보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결과를 통보받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하루하루의 노동 속에 매몰되어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는 근로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의 요청"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7노1519 판결

-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검사 항소에 따른 항소심 변론기일 전 수회 검찰에 소환되어 사실상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항소심 공

판기일에 범행을 자백한 사건에서, 당시는 이러한 경우에도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 판례와 실무례였지만, 이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훼손됨으로써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항소심 법정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결국 1심의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31. 본인의 판결 중 가장 아쉬웠던 5개의 판결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아쉬웠던 판결로 기억에 남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노106 판결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시 처리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옆집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개정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처벌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 후보자는 위 규정의 '신체적인 장애'를 해석함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모든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해자가 그러한 정도의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후보자와 같은 고민을 하던 하급심 판사들의 다수 실무례이기도 하였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2016도4404 판결)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진일보한 판결을 하였고,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24 판결

- 이 사건은 구분건물의 지분 대부분을 임대받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백화점을 설치하면서 소수지분권자 소유 구분건물의 이용통로 등을 막는 벽을 설치하자 소수지분권자가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공용부분에 설치한 벽 등의 철거를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후보자는 구분소유자인 '소수 지분권자 보호'를 위해, 벽 등의 설치가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함에도 적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2023다240879 판결)은 위와 같이 철거를 구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으로써, 원고 청구 기각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다수지분권자의 횡포를 막고 소수지분권자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은 없는지 보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7910 판결

-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기업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하

철 9호선 연장 공사를 수급 받았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가 사전에 원고의 선지출 공사비가 적정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이러한 집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 자체가 손해액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소수 지분의 수급업체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 내지 절차적 보장의 소중함과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2023다253929 판결)은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소수지분권자의 절차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32. 국외교육훈련 파견(미국 조지타운대학)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것과 실무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수료하였고, 국외훈련 판견기간 동안 영미법을 연구하고, 미국 사법제도 전반을 시찰하였습니다.

○ 영미법과 미국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보는 안목이 넓어졌고, 사건처리나 진행에서도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되었습니다.

33.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연구·검토한 수행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답변)

○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총 6년간 재직하였습니다. 재직시 중요 상고사건의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법원이 현실이 맞고 합리적인 법리를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장(대법관)의 명을 받아 구체적 사건의 조사·연구를 수행했던 재판연구관으로서 말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후보자는 민원·진정·탄원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받았습니까?

○ 현재를 기준으로 5년 전까지 접수된 후보자 관련 민원 내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후보자는 1997. 2. 27.부터 법원에 재직 중이며, 진정서 등 각종 감사관계 문서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대법원규칙 제3031호)에 의거하여 보존기간이 5년으로 그 이전 내역은 폐기되어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후보자 장남의 최근 5년간 소득 내역과 출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소득 내역으로, 2019년 및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급여(커피빈) 합계 약 6,700만 원, 2024년 11월 급여(대한항공) 약 350만 원, 2019. 5.부터 2020. 12.까지 군복무 당시의 군급여 적금 약 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36. 후보자 장남의 주식 보유 소득의 출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37. 후보자 차남의 최근 5년간 소득 내역과 출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후보자의 차남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특별한 소득은 없습니다.

○ 다만 친가, 외가 조부모가 차남의 돌 무렵 너무 어려 걱정이고 앞으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대학교 등록금 용도로 미리 수백만 원 정도씩을 주신 것을 합치니 약 1,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10년 이상 투자 상품에 넣어 수익이 덧붙여졌습니다. 여기다가 부모가 차남 이름으로 들어준 주택청약적금 등을 합쳐 현재 합계 2,600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8. 후보자 차남의 주식 보유 소득의 출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39. 후보자의 차남은 2009년생으로 현재 중학교에 다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후보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이 없거나(2023년) 매우 적게 잡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 공제대상 항목이 교복구입비 등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해당사항이 없거나 매우 적었습니다. 나아가 학원비 등은 공제대상 항목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 후보자의 장남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 및 월세(전세)는 어떻게 됩니까?

○ 후보자 자택은 장성한 장남과 함께 4인이 거주하기 불편한 반면, 외조부모의 자택은 두 분만 거주하여 공간의 여유가 많고, 장남의 외조부모께서 80대로 연로하셔서 누군가 함께 기거하면서 보살펴 드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려서부터 외조부모를 잘 따랐던 장남이 보증금 및 월세(전세)는 없이 외조부모 자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41. 차남의 자산은 2017년도 약 250만원 증가, 2018년도 약 800만 원 증가, 2019년도 약 400만 원 증가, 2021년도 700만 원 증가 등으로 꾸준히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 친가, 외가 조부모가 차남의 돌 무렵 너무 어려 걱정이고 앞으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대학교 등록금 용도로 미리 수백만 원 정도씩을 주신 것을 합치니 약 1,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10년 이상 투자 상품에 넣어 수익이 덧붙여졌습니다. 여기다가 부모가 차남 이름으로 들어준 주택청약적금 등을 합쳐 현재 합계 2,600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매년 증가 내역과 관련해서는, 차남 귀속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임시 융통하거나 부모 자금과 함께 혼용하여 운용한 사정, 차남에게 특정시점에 다액의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자 조금씩 미리 차남 명의 계좌에 일부씩 모아두었다가 해당 의료비에 사용한 사정 등이 있습니다.

42. 후보자의 장남은 후보자와 같은 아파트(서초구 삼풍아파트)의 다른 호수(21동 1303호)에 거주 중입니다. 지근거리에 따로 살고 계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 후보자 자택은 장성한 장남과 함께 4인이 거주하기 불편한 반면, 외조부모의 자택은 두 분만 거주하여 공간의 여유가 많고, 장남의 외조부모께서 80대로 연로하셔서 누군가 함께 기거하며 보살펴 드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려서부터 외조부모를 잘 따랐던 장남이 외조부모 자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43. 장남의 현재 직업 및 취업 경로(공채, 특채 등)가 어떻게 됩니까?

○ 후보자의 장남은 공채를 통해 대한항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보통 말하는 대기업 공채는 아닙니다. 직군은 서비스인턴으로, 공항 체크인카운터에서 여객운송을 담당하는 2년 기간제의 지상직 직원입니다.

44. 자녀들이 학교폭력위원회 혹은 선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45. 장남이 입학·졸업한 고등학교·대학교(학과 포함) 및 입학 경로(정시, 입학사정관 등)가 어떻게 됩니까?

○ 청담고등학교(강남구)를 졸업한 후 정시 전형을 통해 수원대학교(화성시) 정보통신공학과를 입학하여 졸업하였습니다.

46. 입시에서 장남이 지원했던 세부전형, 최초/추가합격 여부, 최초 불합격 시 예비순번은 어떻게 됩니까?

○ 정시 전형을 통해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47. 자녀들의 초중고교 생활기록부 제출에 동의하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해당 자료에는 자녀들의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이 그 제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후보자 및 배우자가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면 그 이력 목록(조직명, 직위, 임기)과 당시 제출했던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49.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남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도에서 후보자와 따로 거주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50. 후보자가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이던 2016년,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제주도에 전입신고를 한 반면, 후보자는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십니까?

(※ 49항 및 50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16. 2. - 2017. 2. 제주법원 근무시 배우자와 차남과 함께 제주에서 주로 거주하고, 장남이 학업을 위해 서울 거주지에서 거주한 관계로 주말 방문 등의 기회에 서울 거주지에 거주하였습니다. 전세기간이 남아 있는 서울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상실 우려 또는 불안감 때문에 본인은 제주법원 관사로 전입신고하지 못하였고, 배우자와 차남만 2016. 2. 16. 세대 분리하여 제주법원 관사로 전입 신고하였습니다(2016. 2. 중순 인사이동 무렵 당시 차남의 서울 소재 압구정초등학교 입학 배정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바로 전출입하면 그 입학 배정 취소 후 제주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데 반해 며칠을 지체하면 배정된 서울 소재 압구정초등학교에 입학 후 다시 전학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주시 구남동4길 10-6 소재 임시 거주 제주법원 관사로 전입한 다음, 이후 확정된 제주시 고산동산6길 23 소재 제주법원 관사로 2016. 3. 2. 전입하였습니다). 2017. 2. 본인은 서울로 발령이 나 서울의 원래 거주지로

이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차남은 학교 문제로 2017. 6. 11.까지 4개월 가량 서귀포시에서 거주하다가 서울의 원래 거주지로 전입하여 세대 합가하였습니다.

51. 법관으로 살면서 가장 존경했던 인물과 그 이유, 가장 감명을 받았던 판결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최근 돌아가신 이시윤 전 감사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법조인 중 한분입니다. 이시윤 전 감사원장님은 실무가이면서 법학자로서, 끝없는 연구노력, 소탈한 성품 등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2.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전에도 여러 번 읽었지만, 최근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완역판)을 다시 읽었습니다.

○ 개인적 고난과 사회적 불합리에 삶을 저주하고 사회를 원망하던 한 인간이 끊임없이 갈등하면서도 결국에는 양심을 회복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전체적인 내용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된 프랑스혁명 이후 18세기 초 사회체제와 사상체계의 변화가 역사서보다 더 정교하게 포함되어 있어 당시 혁명의 기운과 사회의 진보를 체감하는 듯 하였습니다.

53. 구독 중인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어떤 채널입니까?

○ 해당사항 없습니다.

54. 후보자로 지명된 사실을 누구로부터 언제, 어떤 수단(직접통보, 유선 통보 등)을 통해 들으셨습니까?

○ 대법원장의 제청 공식 발표 직전에 대법원장으로부터 전화로 처음 들었습니다.

김남근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김남근 위원 서면질의》

1.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하늘을 공경하고, 국민을 부모처럼 섬긴다(齊家 忠國 敬天 親民 <大學章句>).“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 법관으로서, “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그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늘”은 정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은 소송관계인,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재판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늘 가슴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2.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누구입니까?

○ 공직자로서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인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을 존경합니다. 이시영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해 가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독립자금을 만들어 만주 땅으로 망명한 후 본인의 사재를 모두 동원하여 인력양성을 위해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해 초대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 이시영 선생은 최고의 명가 출신이자 소년등과로 어린 나이에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중요 직책을 거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칫 생명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만주로 망명하여 몸소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셨다는 점에서 늘 존경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3.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누구입니까?

○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최근 돌아가신 이시윤 전 감사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법조인 중 한분입니다. 이시윤 전 감사원장님은 실무가이면서 법학자로서, 끝없는 연구노력, 소탈한 성품 등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법관은 누구입니까?

○ 많은 분들이 있고, 각각 특별히 존경하게 된 계기나 분야가 있습니다. 최근 돌아가신 이시윤 전 감사원장님은 실무를 바탕으로 끝없는 학구열을 불태우신 분으로, 실무가로서 법학 이론 연구도 병행하도록 각성하게 합니다.

5.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대법관은 누구입니까?

○ 선임, 수석 재판연구관으로서 많은 대법관을 가까이서 보좌하였습니다.

○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대법관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6. 후보자는 어떤 대법관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항상 연구하고 법리에 뛰어난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마음이 따뜻한 법관으로 남고 싶습니다.

7. 법관과 대법관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1, 2심 법원이 상대적으로 개별·구체적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확정과 분쟁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함께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은 근시안적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하거나 개별 사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통시적인 정의와 보편적 타당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은 이를 위해 균형감각을 가지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견해를 포용하면서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8. 법관과 비교하여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2심 법원이 상대적으로 개별·구체적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확정과 분쟁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함께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대법관은 법의 해석 및 재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변화하는 사회 상황과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포용력과 공감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무엇보다도 대법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려는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9. 본인이 대법관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대법관 후보자로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거나 적절치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만 제청권자의 의견이 반영된 국회 임명동의 요청사유를 읽어보면서, 제가 추구하고 노력한 삶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로서는 과분한 말씀이라 생각되고 그러한 모습을 완성시키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0. 후보자가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입니까?

○ 이전에도 여러 번 읽었지만, 최근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완역판)을 다시 읽었습니다.

○ 개인적 고난과 사회적 불합리에 삶을 저주하고 사회를 원망하던 한 인간이 끊임없이 갈등하면서도 결국에는 양심을 회복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전체적인 내용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된 프랑스혁명 이후 18세기 초 사회체제와 사상체계의 변화가 역사서보다 더 정교하게 포함되어 있어 당시 혁명의 기운과 사회의 진보를 체감하는 듯 하였습니다.

11. 후배 법관들에게 반드시 읽기를 추천하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 이전에도 여러 번 읽었지만, 최근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완역판)을 다시 읽었습니다. 후보자가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책인 이 책을 읽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 개인적 고난과 사회적 불합리에 삶을 저주하고 사회를 원망하던 한 인간이 끊임없이 갈등하면서도 결국에는 양심을 회복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전체적인 내용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된 프랑스혁명 이후 18세기 초 사회체제와 사상체계의 변화가 역사서보다 더 정교하게 포함되어 있어 당시 혁명의 기운과 사회의 진보를 체감하는 듯 하였습니다.

12. 후보자는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명예는 스스로의 떳떳함이라 생각합니다.

○ 명예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지만, 어떠한 사람이 그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여 스스로에 대하여 부끄럼이 없을 수 있다면, 그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법관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신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본연의 직무에 임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을 포용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헌법보장과 기본권 보장,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권리 구제 및 분쟁의 해결과 더불어, 헌법적 가치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법관으로서의 직무와 본연의 역할을 성심을 다해 충실하게 수행하여 스스로에 대하여 부끄럼이 없을 수 있다면, 법관으로서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가장 후회되는 에피소드는 무엇입니까?

○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재직하는 동안 아쉽다고 생각하는 일은, 첫째, 처가 자녀 양육문제로 공부를 계속하지 못한 것, 둘째,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것, 셋째, 자녀 교육이라는 눈앞의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전 3년간, 통영 1년간 지방근무 시 가족과 떨어져 단독 부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명예가 실추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후보자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행히도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느낀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부 관련 사항, 재판 진행 정보 등 가급적 모든 정보를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였고, 재판진행시 절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구체적인 변론과 입증에서 다소 기계적일 정도로 양측에 대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16. 후보자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 후보자는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8.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로 인해 편견과 증오로 가득 찬 정치 현실에서 정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9. 후보자는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법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6항부터 19항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정의가 무엇인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좀더 실천적 의미를 중요시하여 생명존중, 자유, 평등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핵심적 가치라고 생각해 봅니다.

○ 이러한 정의는 법적 규율이 생활관계에 적합하고 알맞고, 사리에 맞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 절차적 보장도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통해 판단 결과의 타당성과 민주적 정당성도 아울러 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편견과 증오는 양극단화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만 낼뿐 전혀 대화와 타협을 허용하지 않아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의 익명성과 전파성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정치 현실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서로의 주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논쟁하고 타협할 때 정의는 기준점이자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치관이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으로서는 법정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법에 의거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립하는 당사자는 물론, 사회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편견 없이 성심을 다하여 경청하고 포용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에 대한 구체적 모습과 합리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 법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후보자 자신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부 관련 사항, 재판 진행 정보 등 가급적 모든 정보를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였고, 재판진행시 절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구체적인 변론과 입증에서 다소 기계적일 정도로 양측에 대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스스로 점수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지만, 굳이 평가하자면 백점 만점에 9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10점은 앞으로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 법원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후보자 자신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윤리감사관을 직을 맡아 법원행정사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관리심의관으로 여러 나라 사례를 연구하고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임용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윤리감사관으로 재직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함으로써 법관 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역할을 하였던 것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 스스로 점수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지만, 굳이 평가하자면 백점 만점에 9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10점은 앞으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22. 법원개혁으로 별도의 사법행정기구에서 사법행정권을 담당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사법행정기구에서 사법행정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서 도입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사법행정회의 또는 법무부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나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별도의 사법행정기구에서 사법행정권을 담당한다면, 사법부 외부로부터의 영향과 개입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행정은 법관 인사, 예산 등 재판주체와 조직의 존립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 결국 사법행정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문제는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보다는, 사법행정 영역과 재판사항의 엄밀한 분리, 법관의 관료화 방지, 사법행정사항의 투명성·민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 사법행정기구를 비법관으로 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은?

○ 사법행정기구를 비법관으로 전원을 구성하는 제안은 과거 '사법행정권남용 사태'에서 나타난 법원행정처 내 법관 관료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주장되었고, 실제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 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적구조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재판지원을 위한 사법행정을 위해서는 직접 재판을 주재하던 법관의 경험과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원행정처에 적정한 수의 상근 판사가 배치되어 사법행정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무엇보다 법관만큼 법원과 재판실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장기간 열과 성을 다해 복무할 비법관을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 사법부는 법관의 관료화가 어떤 폐해를 미치는지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재판의 자율성과 독립성, 원활한 재판지원을 위한 사법행정의 필요성 등 여러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사법행정기구는 법관 및 비법관이 조화를 이뤄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24.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원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

○ 사법개혁의 초점은 법치국가에 있어 공정한 재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이라는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치의 조화로운 달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재판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특히 재판의 신속화를 통한 충실한 재판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상황입니다.

○ 먼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사건처리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동기부여를 위한 전문법관 제도 확대, 전문법원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효율화가 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심에서부터 당사자의 주장 개진 및 심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폭넓은 증거조사를 실시한다면 신속하고 종국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편 대법원은 최종적 법률심으로서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함께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낼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과다한 사건수로 인하여 상고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상고심 제도의 개편도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5.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인의 역할은?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모든 법적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합니다. 대법원은 급변하는 사회상황 속에서 법을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규범적 지향점으로서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대법관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조화롭게 함께 살 수 있는 법치국가의 틀을 마련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편견 없이 성심을 다하여 경청하고 포용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전체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은 헌법보장과 기본권 보장, 소수자 보호 및 사회적 약자 보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를 위해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며, 소외된 곳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일이야말로 대법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6.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 최근 법원의 재판 장기화에 대하여 국민들의 심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주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겠습니다.

○ 대법관으로서 개별적 분쟁 해결에 안주하지 않고, 사안에 내포된 새로운 규범적 쟁점을 파악하여 급변하는 사회상황과 가치를 반영하는 해석의 기준 내지 가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고 이를 실천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판결 3가지와 아쉽다고 생각하는 판결 3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구체적으로 가장 의미있거나 아쉽다고 생각하는 대법원 판결 몇 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밝히는 것은 대법관 후보자 지위에서 조심스럽습니다.

○ 다만 대법원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거쳐 논의를 공론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를 선언하는 것은 국민들이 법규범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의미 있는 판결의 사례들입니다. 최근 예로 부동산이중양도의 배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공개변론 등을 거쳐 법리적 논쟁에서 더 나아가 현재 실상 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유죄를 유지하였습니다. 실상에서 널리 적용되는 법적 논란에 관하여 대법원이 법조문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거래 실상을 살펴 현실성을 갖춘 법리를 선언하였습니다.

○ 아쉬운 판결까지는 아니고, 향후 충분한 검토 아래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부분입니다. 민사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물 개념을 좀더 넓히고 적극적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도모하여 국민들의 소송 피로도를 낮추고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형사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된 절차와 요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엄격하게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공소장에 불필요하게 논란이 되는 증거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핵심적인 공소사실만 기재됨으로써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8.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사법부의 독립성은 사법의 본질인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근간으로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법관은 사법부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개입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최근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법관 개인을 공격하고 재판을 정쟁의 수단을 악용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판과 판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위와 같은 부당한 시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관 개인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법관들이 사법부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재판제도와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한편으로, 사법부는 재판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재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관들도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언행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9.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 사형제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형에 관해서는 항상 오판을 바로잡을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나아가 사형제도가 악용된 불행한 역사적 경험도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다수 인명살상 테러,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하여 여전히 사형의 형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법 감정도 간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형제의 폐지는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0.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최근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소년범일지라도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할 필요는 있으나,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자로서 아직 신체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만 받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소년범로 하여금 재범을 하게 할 우려가 있고,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무엇보다도, 소년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응보적 관점을 취하기보다는 소년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가족의 붕괴, 경제적 빈곤 등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우리 사회의 지원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31.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폭해지는 경향이 있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확대 및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도 청소년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충분한 연구와 조사 없이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할 경우,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게 되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습니다.

○ 또한, 미성년자는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환경과 교육에 따라 충분히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교화의 대상이므로, 이러한 청소년들은 사회로 복귀시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소년범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개선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까지 모두 처벌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형사책임 연령 하향은 형사책임 연령 도입의 취지, 해외 사례, 형사정책적 요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국민의 여론 등 여러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충돌, 역할 조정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각각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 현행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기관으로 상호 독립적이고 대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은 명령·규칙, 처분의 위헌·위법심사권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부여하고,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 양 기관은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본질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3.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헌법 제101조, 제103조에 따라 사법권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구체적 법령해석·적용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각 호에서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판결 등에 관여하여 다른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국회의 입법작용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헌법적 결단에 따른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그동안 여러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4.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사법부 기관 간 대립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말씀하신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과 재판소원의 허용 여부 등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고 오랜 기간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입고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비록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오랜 견해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으리라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라는 헌법상 사명을 부여받은 두 기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 결정을 지양하고, 대신 법률문언에서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물적·양적으로 분리·특정하여 이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을 함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 향후 국회에서 두 기관의 권한 범위에 관한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이 논의된다면, 그 논의 과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35. 위와 같이 사법부 기관 간의 대립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말씀하신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과 재판소원의 허용 여부 등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고 오랜 기간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입고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비록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오랜 견해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으리라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라는 헌법상 사명을 부여받은 두 기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국회에서 두 기관의 권한 범위에 관한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이 논의된다면, 그 논의 과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36.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 따라서 모든 법관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불필요하게 관련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피하여야 하고, 정치적 관련성을 외부에 표시하거나 의심을 살 수 있는 몸가짐이나 언행에 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최근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법관 개인을 공격하고 재판을 정쟁의 수단을 악용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판과 판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위와 같은 부당한 시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관 개인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법관들이 사법부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재판제도와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37. 대법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이자 법률심으로서 법률해석과 적용의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정책법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지침과 기준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8.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경제적 빈곤층, 이주민, 노인, 여성, 아동, 성소수자 등 여러 인권 현안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권 현안을 해결해야 하지만, 그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우리 사회의 노력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편의제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부도 각종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39. 검사장, 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퇴직한 법조계 고위공직자가 대형로펌, 기업 고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사장, 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법조계에서 고위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 후에 대형로펌, 대기업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고위직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 외관만으로도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변호사로서의 직업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에 고위공직자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소송법상의 기피·회피 제도 및 이해충돌방지법상의 회피 제도,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외관에서부터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 또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에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역으로의 활로가 개척된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축적한 지식과 경륜을 국가사회를 위해 활용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 국민들은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해 굉장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음. 후보자님은 법조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법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는 법관이었던 자가 퇴직 후에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면서 재판절차 또는 결과 등에서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관예우를 빌미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재판절차 내에서 전관예우 등의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수임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전관예우를 기대할만한 요소를 차단하는 등 사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1.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법은 무엇입니까?

○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형사소송법,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각급 법원의 연고관계 재배당 기준 등에서 정한 신고·회피, 제척, 재배당 등의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관이 평생 법관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법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시니어판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관 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전관예우의 의혹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2.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이 가지는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대법원에서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외관을 형성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의 측면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대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대법관은 주심으로 배당하지 않거나 해당 재판부에서 재배당 또는 주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어 재판의 공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모든 사건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외관에서부터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 법조일원화로 인해 숙련된 변호사가 판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펌에 근무한 변호사에서 판사가 될 경우, 해당 로펌에서 변호하는 사건에 대해 심리함에 있어,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현재의 법관 임용절차에서 임용된 신임법관 중 대형로펌 출신 법조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후관예우의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의 법관 임용절차에서 대부분의 절차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어 직역에 대한 고려 없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임용절차 각 단계에서 법관 외에 외부인사가 다수 참여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 대법관이 된다면, 43번 우려를 해소하고자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에 대하여 법관 임용절차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 출신 법관의 임용에 따른 공정성에 대한 우려, 후관예우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미 후관예우 방지를 위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회피의무를 두고,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규와 각급 법원 내규를 통해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법관으로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살피고, 또한 관련하여 사법부 내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색,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 43번 우려가 가시화 될 경우, 사법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이른바 후관예우가 실제로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재판의 공정에 대한 외관이 훼손되고 재판절차와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와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그 취지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6.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엔 인권이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 정한 평등 원칙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3년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일부 쟁점에 대하여 종교계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과 국민청원 등 첨예한 논쟁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치는 만큼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7.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로 인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 향후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될 경우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대다수가 공감하는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8.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소수자 역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다름에 대하여 갈등과 혐오를 표출하기보다는 이해와 포용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각에서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에게 특혜 내지 보호를 주어 오히려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넘어 어떠한 법률적·제도적 보장을 할 것인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견해와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9. 법관의 이념과 지향성(진보, 보수, 중도 등)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개인의 양심이 아닌, 보편적인 규범의식에 기초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의미합니다.

○ 법관은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이나 신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 법원에 있었던 사법농단 의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해소되고 대국민의 사법적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재판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장의 재판업무 담당,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등 법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고, 감정절차 개선, 판결서 기재 간이화,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 심리모델 개선 등 재판절차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조일원화 등 변화된 환경에서 법원 구성원의 자긍심과 직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마련,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정착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중이고, 더불어 미래등기시스템, 형사전자소송 등 국민이 사법접근성 개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함으로써 점차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사법부로서는 국민적 신뢰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1.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증원에 동의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 현재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도 대법원의 사건처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그 수는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상고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권리구제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그 개선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2. 50번 질문에 대해, 동의·비동의를 택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오랫동안 근무한 사법부에 대한 체계·근본적 고민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재판 장기화 문제 등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함으로써 점차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3. 현재 대법원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대법원이 사회적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법관의 성별, 학력, 지역, 이력 등 인적 특성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4. 대법원이 위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겉으로 드러나는 인적 특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인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성한 대법관들이 사회적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 여러 인적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대법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명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5.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법원의 다양성(성별, 나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법원>

○ 대법원이 사회적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법관의 성별, 학력, 지역, 이력 등 인적 특성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인적 특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인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성한 대법관들이 사회적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 여러 인적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대법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명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급법원>

○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법조일원화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됨에 따라 출신 직역, 성별, 법관 전 경력 등의 측면에서 법관 구성의 다양성도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도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법관 임

용절차 개선, 전문법원 추가 설치, 전문법관 및 전담법관 제도 확대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갖춘 우수 법조인들의 법관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법관 업무환경 개선과 처우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6.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생활의 보호와 알권리는 모두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으로서 일률적으로 우선하는 권리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교형량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은 일반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57.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생활의 보호와 알권리는 모두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으로서 일률적으로 우선하는 권리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교형량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국민의 알권리 우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적인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해결 순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58. 검찰의 공소장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소장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공개재판의 원칙 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그 확대를 지지하는 견해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이유로 공소장은 공판절차 개시 전까지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비교법적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공소장을 비교적 넓게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독일에서는 공소장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처럼 공소장 공개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고 비교법적으로도 다양한 입법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충돌하는 여러 이익을 충분히 비교형량하여 법과 실무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9. 일각에서는 공판개시 전 공소장 공개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국민의 알 권리는 충실히 보장되어야 하나,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무죄추정원칙에 기초한 피의자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대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여야 하며, 나아가 피의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피의사실에 포함시켜 수사 결과로서 발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위 판결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60. 기성세대가 일으킨 기후위기가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환경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 중의 하나이고 그 대응에 있어서 국가 간, 그리고 세대 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나 기업 등을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기후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청소년 환경단체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 청구인에 태아가 포함된 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이 등 다양한 형태의 기후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처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만큼 사법부도 기후위기 소송 등 환경 관련 이슈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관련 소송에서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1. 탄소 배출 등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목표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최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8. 29. 2020헌마389 결정).

○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사건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었을 경우, 타 국의 사례를 수용·비교하며 재판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 정보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세계화는 오늘날 일반적인 현상이고, 법관계도 자국에 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비교법적 연구는 불가피합니다.

○ 실무상 각종 입법과 제도 설계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다른 나라의 유사사례가 참조되고 있고, 이는 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판적 검토를 거쳐 수용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63. 후보자는 존엄사를 찬성/반대하는지? 찬성/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불치의 질병을 알고 있는 환자가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존엄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09년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에서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선고하여 존엄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견해가 높았고, 이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법을 시행함에 있어 김 할머니 사건 대법원 판결이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을 연명치료 중단으로 정의하고 소극적인 안락사나 존엄사 등의 용어를 쓰지 않음으로써 중단의 대상이 단순한 연명임을 부각시킨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중점을 두고 있는 존엄사와 달리,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안락사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적으로 생의 단절을 야기하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존엄사 허용 여부는 단순히 법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과학적, 종교적, 철학적 문제가 다양하게 얽혀있으므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 거쳐 그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4. 각급법원의 장기미제 사건을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만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 장기미제 사유로는 복잡 사건의 접수 증가, 당사자의 증거수집의 어려움,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한 사건의 회신 지연 등을 들 수 있고, 그 외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과 같이 법원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을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 1차적인 원인은 법조일원화로 인하여 법관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반면에 법관의 수와 재판연구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관 증원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올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통과되었으므로 장기미제 사건 처리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 외에도 법원은 재판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법관 및 전문법원 제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감정절차의 적극적인 관리제도 도입, 판결서 적정화, 전문심리위원 제도·조정제도 활성화등을 통하여 재판의 신속성·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감정절차관리제도는 증거조사 지연을 해소하여 신속한 재판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전자소송 도입과 영상재판 제도의 활성화 역시 신속한 기일 지정을 가능하게 하여 재판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각급 법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관 간 의견 공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이 개최한 워크숍 등에서는 장기근무 범위의 확대, 사건처리실적이 우수한 재판부에 대한 적절한 보상, 참여관의 업무 범위 확대, 적절한 사무분담 구성, 그 밖에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의 심리 방법 등이 두루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법원은 신속한 재판 및 장기미제 해소를 위해 사법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속한 재판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5.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특정 이념에 기반을 두어 판결한 사실이 있는지?

○ 대한민국헌법 제103조가 정한 '법관의 양심'은 법관 개인의 양심, 즉 인간적 양심이라기보다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되는 '법관의 직무상 요구되는 양심'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법관의 양심을 심판의 기준으로 둔 이유는 불합리한 외부적 지시에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법관 자신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법권 독립의 소신을 가지면서도, 자신이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편견이나 주관적 신념에서 비롯된 아집과 독단이 아닌지를 항상 되짚어 보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성심을 다해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는 재판에 있어 부단히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고, 특정 이념에 기반을 두어 판결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66.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내렸던 판결이 있다면?

○ 제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한 판결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1803 판결

- 이 사건은 대학교 소속 연구원이 해당 대학교를 인수해 운영하는 특정 대기업과 그 소유주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데 대하여, 대학교가 이를 이유로 연구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 이 사건에서 대학과 같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의 민주적 운영의 필요성과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 등을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표현된 비판적 내용들이 대학 내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원이 언급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연구원의 인터뷰가 언론매체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편집자 등의 주관적인 평가와 판단이 개입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해고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5213 판결

- 이 사건은 피고 은행의 소속 직원인 원고가 내부 비리를 제보한 데 대하여, 피고가 뒤늦게 제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직한 사안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와 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 이 사건에서 회사의 기강을 확립할 의무가 있는 경영진 등에 내부 비리를 제보하는 경우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 회사로서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당사자의 제보가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인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명백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부비리의 제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회사의 자정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내부고발이 허황되거나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설명해 주기는커녕, 원고의 제보 내용을 검증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원고를 해직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고발을 통해 조직 내의 부정행위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편견 등에 취약한 지위에 처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6698 판결

- 이 사건은 원고가 정신병원에 보호입원될 당시 보호의무자 1인(배우자)이 다른 보호의무자 1인(자녀)의 서명을 대신하여 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보호입원 요건으로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갖춘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강제입원에 있어 동의자의 수를 1인에서 2인으로 늘리는 등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는 취지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보호의무자 1인이 다른 보호의무자 1인의 서명까지 대신 기재하여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서명이 대신 기재된 다른 보호의무자 1인이 입원 이후에 입원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원 당시의 동의 의사를 추단할 수 없으므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보호의무자와 정신병원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67. 후보자는 현 대법관의 구성이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구성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 대법원의 구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바와 같은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고 그 우려의 취지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 그동안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모든 국민 누구나 대법관 후보를 천거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관 후보로 천거되어 심사에 동의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위원이 다수 포함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 및 심사를 거쳐 추천된 최종 후보자 중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성별, 학력, 지역 등 일정한 기준에 있어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다만, 대법관의 인적 구성은 성별, 학력, 지역 등의 형식적 기준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철학의 다양성 또한 강조되어야 하며, 가치관이나 철학은 그 사람의 나이, 지위, 경험과 경력에 따라 달리 형성되고 표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세대, 성별,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 앞으로도 대법원은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고려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 후보의 천거절차에서 보다 다양

한 후보들이 천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68. 후보자는 사법부에 필요한 '외적 다양성'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 법원이 사회적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출신 직역, 성별, 법관 전 경력 등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법조일원화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됨에 따라 법관 구성의 다양성도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도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법관 임용절차 개선, 전문법원 추가 설치, 전문법관 및 전담법관 제도 확대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갖춘 우수 법조인들의 법관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법관 업무환경 개선과 처우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69.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대법원이 사회적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법관의 경력, 성별, 학력, 지역 등 인적 특성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인적 특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인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성한 대법관들이 사회적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 여러 인적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대법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명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0.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은 법관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위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법기관을 신뢰하는지를 묻는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은 반면, 구체적인 재판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심각해진 재판 장기화 현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 등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 등이 사법신뢰도를 낮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인 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의 판결이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1.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 회복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현 시점에서 사법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장기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이 힘을 합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장기화의 원인이 되는 감정절차 등 재판제도를 개선하고, 법관과 직원 모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평소 언행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판결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72. 법관은 다른 어떠한 자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 하지만 각종 비리·비위 행위에도 불구하고 판사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매우 경미하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국민들은 법관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법관의 비위는 사법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에는 과거에 비하여 비교적 징계청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징계양정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과거보다 높은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관윤리를 강화하는 등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비위 법관에 대하여 엄정한 내부 징계 등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3.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은 법관으로서 일부 법관 동료, 선·후배들의 비위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부분의 법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며 근면 성실하고 청렴한 공직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관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비위 법관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징계를 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 스스로 법관이라는 자리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4. 후보자께서는 퇴임 후에 어떠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법학전문대학교에서 실무 관련 강의를 희망합니다.

○ 제주에서 근무하면서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교 학생들이 실무 강의를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실상이 그러하고 본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교가 더욱 좋겠습니다.

75. 후보자께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7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 75항 및 76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현행법은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다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치적·사회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대법원은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헌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여부는 국회에서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 보장의 필요성,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의 위축 등 부작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입법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77. 모욕죄의 경우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 처벌 대상의 행위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모욕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모욕죄의 보호법익,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이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 등 전원재판부 결정, 2021. 9. 30. 선고 2021헌가2 등 전원재판부 결정).

○ 저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결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위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모욕죄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표현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8.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재판관으로서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대법원은 사회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편견 없이 성심을 다하여 경청하고 포용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전체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헌법보장과 기본권 보장, 소수자 보호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후보자는 법관 재직하는 동안 무엇보다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판결을 통해 "하루하루 노동 속에 매몰되어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는 근로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우리 헌법의 요청"을 강조하면서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추구하고 노력한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제가 부족하나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기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9.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경 보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대법관으로서 어떠한 사회적 인식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대법원의 역할>

○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이자 법률심으로서 법률해석과 적용의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정책법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지침과 기준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관의 자질과 사회에 대한 인식>

○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 수호와 정의 실현에 대한 굳은 신념과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법권의 행사는 독립적·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법관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견해를 통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균형감각과 포용력, 소수자·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감수성

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법관은 자신의 판단이 정의 관념과 보편적 타당성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성찰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권리구제 기능과 함께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므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원인 대법관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 냉철한 판단력, 깊은 통찰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근 위원 서면질의】

80.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을 수탁받아 법무부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정부조직법상(제32조) 법무부의 관장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법무부의 관장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제6조제1항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위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과 제32조제1항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권력분립의 원칙상 대법관 후보자로서 행정부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행정 각부에 불과한 법무부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 절차에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삼권분립 원칙 훼손이 우려되고, 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다음의 상급행정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에 둔 입법취지도 훼손된다고 판단하는데, 후보자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따른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권력분립의 원칙상 대법관 후보자로서 행정부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 과거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아쉬운 판결은 무엇인가요?

○ 가장 아쉬운 대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밝히는 것은 대법관 후보자 지위에서 조심스럽습니다.

○ 다만 아쉬운 판결까지는 아니고, 향후 충분한 검토 아래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부분입니다. 민사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물 개념을 좀더 넓히고 적극적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도모하여 국민들의 소송 피로도를 낮추고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형사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된 절차와 요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엄격하게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공소장에 불필요하게 논란이 되는 증거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핵심적인 공소사실만 기재됨으로써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3. 과거 대법원 판결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판결은 무엇인가요?

○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대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밝히는 것은 대법관 후보자 지위에서 조심스럽습니다.

○ 다만 대법원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거쳐 논의를 공론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를 선언하는 것은 국민들이 법규범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의미 있는 판결의 사례들입니다. 최근 예로 부동산이중양도의 배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공개변론 등을 거쳐 법리적 논쟁에서 더 나아가 현재 실상 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유죄를 유지하였습니다. 실상에서 널리 적용되는 법적 논란에 관하여 대법원이 법조문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거래 실상을 살펴 현실성을 갖춘 법리를 선언하였습니다.

83.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이러한 헌법규범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다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가 불평등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 법원은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법원은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특히 다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부당하게 무시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84. 후보자에게 사회적 약자의 기준과 정의는 무엇인지요?

○ 사회적 약자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또는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그들의 필요와 권리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며, 포용적이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충과 현실에 공감하며 상황에 맞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법부 본연의 책무인 만큼, 사법부는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듣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사회 내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 또는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사회의 인권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원으로서는 법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감각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감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할 때, 사회 내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85.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직 우리 사회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법부에 있어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목소리는 국민들께서 재판의 결과가 재력 내지 사람에 따라 불공정하다고 느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원은 국민들의 건전한 감정을 염두에 두고 소수자와 약자 보호라는 법원의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정보접근성 향상, 판결과 재판의 공개 등으로 과거보다 다소 감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의 확산은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국민 스스로 재판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커졌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범위가 확대되고 해당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 이름이 공개되는 등 재판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전관예우 등 음성적 관행도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법원은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임료에 따른 법률서비스의 격차를 고려하여, 소송구조, 국선변호인, 이지리드 판결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확대하고, 보다 쉽게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판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건전한 법감정에 반하지 않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거듭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86.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을 무엇인지요?

○ 사회적 약자를 정의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충과 현실에 공감하며 다양한 상황에 맞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법부 본연의 책무인 만큼, 사법부는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듣기 어려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사회 내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 또는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사회의 인권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이 법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감각과 포용력,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할 때 사회 내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진정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7.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법개혁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코로나19시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재판의 장기화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법개혁의 과제는 '재판의 신속화'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이룩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권리의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사법부는 법관 사무분담의 장기화, 법원장의 재판담당, 판결서 적정화, 전문법관 확대 등 각종 재판제도와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덜고 부실 판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허가제와 대법관의 증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고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상고제도에 관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법령 해석 통일 기능 강화와 충실한 권리 구제 기능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 상고허가제 도입 방안과 대법관 증원 방안은 상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고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권리구제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그 개선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그 수는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9. 동성결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 성적 지향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므로, 성적 소수자도 성정체성 자체만을 이유로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 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성소수자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넘어 어떠한 법률적·제도적 보장을 할 것인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견해와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 및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또한 동성부부의 혼인신고 관련하여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동성간 부부에 대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최초로 설정된 이후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수정·보완되어 왔고, 성범죄 사건의 양형은 대부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성범죄의 양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일반예방·특별예방 효과를 내기에 충분한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하나, 단순히 엄벌만으로는 범죄를 억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많은 실증적 조사에서 밝혀진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따라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만연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범죄 예방 체계 확립, 범죄자 교화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생각합니다.

91. 하급심보다 상급심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92. 91번과 같이 성범죄 재판에 대해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판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93. 91번과 같이 성범죄 재판에 대해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판결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경우 법관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는지?

(※ 91항부터 93항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후보자는 위 판결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급심보다 상급심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 그러나 이를 지적하는 국민의 비판이 있음을 알고 있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상급심에서는 1심 이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반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94. 최근 법관들이 사회적 이슈 내지 법원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개인 SNS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관의 SNS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관의 SNS 활동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허용되거나 금지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권고의견 제7호를 마련하여 법관이 SNS를 사용하여 의사소통과 다양한 인적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3. 12.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권고의견을 내기로 의결하였고, 법관의 합리적인 SNS 이용방안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SNS 이용방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5. 우리사회에서 '사법부의 정치 중립'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후보자는 사법부의 정치 중립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이며, 사법부의 정치 중립에 찬성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은 사법의 본질인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근간으로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 최근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법관 개인을 공격하고 재판을 정쟁의 수단을 악용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판과 판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위와 같은 부당한 시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관 개인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법관들이 사법부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재판제도와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한편으로, 사법부는 재판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재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관들도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언행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6.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사법부 독립'의 취지, 목적, 방향,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의 본질적 기능인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 사법부가 외부 기관, 세력 등으로부터의 독립되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관이 사법부 내외로부터 독립되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법관의 독립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한편,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사법부와 법관의 특권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법원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인 만큼 사법부와 법관 모두 사법권의 독립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97. 우리사회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에 대해 '특정이념'을 가진 법관들이라며 이들을 마치 일반 판사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에 속한 법관들을 '특정 이념'을 가진 법관들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내 연구모임은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진 법관들이 각종 법적 쟁점, 판례 등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학술 목적의 모임입니다. 그러한 연구모임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법관의 성향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법관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재판과 판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98. 법관의 이념과 지향성(진보, 보수, 중도 등등)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개인의 양심이 아닌, 보편적인 규범의식에 기초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의미합니다.

○ 법관은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이나 신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9. 후보자는 법원의 사법농단사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인 2011 ~ 2017년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는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00. 후보자는 법원의 사법농단사건이 잘못되었다고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1. 후보자는 사법농단에 관여되어, 기소된 재판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02. 대부분 재판관이 무죄가 나옴에 따라, '법원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101항 및 102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사법행정은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거나 그러한 외관을 보이는 일조차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후보자는 법원이 밝힌 사법농단 비위법관 66명에 속해있습니까? 속해있다면, 어디·누구에게로부터 전달받았습니까?

○ 속하지 않습니다.

104. 사법농단은 대법원장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여러 법관 엘리트들이 도운 조직적인 사건이며,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법관들이 다수라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징계는 불복소송을 통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법원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다만, 법관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관련 법관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징계에 대하여 불복소송이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구체적으로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 체제의 법원개혁 방향, 활동, 방안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현재 재판 장기화 현상이 심각한 만큼 현재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서서히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06.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 체제의 법원개혁에 대해 법원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법관뿐만 아니라 직원 등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고 법원장과 사무국장이 사법행정사무 외에 재판업무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기존의 관행을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법부 구성원의 희생과 헌신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서서히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07.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직자 부당 행위를 처벌할 '직권남용'이란 법리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커다랗게 남겨놓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직권남용을 형식적 논리로 엄격히 해석하면 '권력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이른바 '법 왜곡죄'로 최고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떠한 입장입니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판례상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존중합니다.

○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경우에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왜곡죄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추상성, 상대성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정당한 행위나 판단에 대하여도 고소·고발 등 과도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정당한 직무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의견에도 경청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장·단점에 대한 더욱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국회에서 지혜로운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김남근 위원 서면질의】

108. 위 107번의 직권남용의 판결로 인해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 대부분이 무죄로 면죄부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관 후보자로서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 사법농단에 관여한 재판관이 퇴직 후, 로펌 등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른바 '사법농단'에 관한 재판이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처리가 된 변희수 하사는 재입대를 희망하였습니다. 과거, 국내 한 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학내 반발과 인신공격 등으로 등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는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추세임에도 당사자들이 실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법의 판단과 결정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는데 일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법원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일상생활의 지침과 기준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원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사회 내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 또는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사회의 인권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사회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해지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법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111. 해외 여러 국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완전히 허용'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오랜 사회적 논쟁과 많은 진통 속에서 얻게 된 결과물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법과 법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법원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일상생활의 지침과 기준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원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사회 내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 또는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사회의 인권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사회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해지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법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112.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암호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암호화폐의 명칭, 소득세 대상 여부 등 세법 개정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 암호화폐 시장의 산업발전과 국제 추세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문제제기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최고법원이자 법률심으로서 법률해석과 적용의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정책법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사회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나 계약 등을 둘러싼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은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13. 2009년 야간집회시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고,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을 내린바 있음. (2014년 한정위헌 판례 中 "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 그리고 현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판결 중 '한정위헌' 결정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2009년에 진행한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시위 헌법불합치 결정만 인정하게 된다면, 현재 00시 ~ 06시까지만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입법은 대법원으로써 인정할 수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대법관 후보자로서 국회의 입법사항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2014년 헌법재판소 한정위헌 결정을 시간대별 물적·양적 분할과 해당 부분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러한 취지의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14.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전 관장과의 이혼소송에 따르면, 노태우의 밝혀지지 않았던 비자금을 노소영 전 관장의 재산으로 인정한 바 있음. 불법으로 승계된 범죄수익이 재산으로 인정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현재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비자금 등 불법 승계되어 형성된 수익을 환수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현행 범죄수익 등의 몰수 및 추징은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서는 범죄수익 등의 몰수 및 추징을 위한 공소제기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와 같이 현행법상 몰수·추징이 형벌로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공소제기 없이도 몰수·추징을 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 또는 미국식의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미국에서는 민사몰수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범죄수익의 효율적인 환수의 측면과, 선의의 제3자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6.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가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이 생략되기도 함. 민사/가사 사건에서도 제출된 증거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작성자에 의해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일정한 법률상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은 없고, 이는 가사소송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 다만 민사사건 및 가사사건에서도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증거력을 면밀히 조사·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합니다. 이는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신분관계 그 자체에 관한 분쟁 또는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을 심리, 판단하고 조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는 것을 기본적인 특성으로 함에 따라 사실 및 증거조사에 있어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는 더욱 강조된다고 할 것입니다.

○ 기본적으로는 문서의 진정성립이나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충실한 심리와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문서의 진정성립과 신빙성에 대한 감정, 검증 등이 더욱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17. 116번 주장과 관련, 법조인이자 재판관으로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 제조물 하자에 관한 소송,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소송과 같이 수집해야 할 정보가 전문적이고 접근하기 힘든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 증거의 불균형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불평등한 소송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미국과 사법제도나 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방식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문서제출명령의 개편, 진술녹취제도 도입 등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8. 최근 5년간('19년 ~ '23년) 판결 경정 신청 건수는 약 4천건에 달한다고 함. 단순 오류의 경우 경정 대상이나, 판결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는 법원 신뢰도 저하 초래, 판결문 작성 여건 등을 점검해 제도/시스템적으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판결의 경정이란 일반적으로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판결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대법원 2000. 5. 30. 자 2000그37 결정).

○ 질의하신 바와 같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판결 경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 경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판결의 사소한 오류나 잘못된 계산 등에 관한 경정이라도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재판 결과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충분히 수긍합니다. 다만 판결의 오류를 줄이는 제도나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재판인력의 충원 및 그밖에 물적,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제도나 시스템에 관한 개선책 마련과는 별도로 각 재판부의 법관과 참여사무관등은 판결 경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기록을 살피고 보정과 안내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119. 판결문의 경정오류를 집계(통계화)시켜 공개하는 것이 법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적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사법적 신뢰도를 올리기 위하여 판결문의 경정오류를 집계(통계화)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권경정을 포함한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통계집계가 되지 않고 있으나, 경정결정의 일부 건수에 대해서는 통계로 집계하여 사법연감에 이미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결 경정 사항은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경미한 오류에 대한 것으로, 부당하게 경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다툴 기회가 열려 있어(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현재 공개되고 있는 현황 외에 별도의 현황을 집계할 실익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0. 판결문의 경정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사유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 동의한다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적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 것인지?

○ 판결의 경정은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점, 모든 경정신청에 대하여 인용/기각 사유를 기재하고 공개하도록 한다면 법관이라는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다른 업무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경정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불복하여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든 경정신청에 인용/기각 사유를 기재하여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21.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122.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린 권고결정을 위반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 위 재판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123. 위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결에 대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24. 위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이 형해화 된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121항부터 124항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5조 제2항).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5조 제3항). 또한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5조 제4항).

○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 받은 관계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권고에는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효력은 없으므로 관계기관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르지 않고 수사 및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원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명감을 바탕으로 수사상 강제처분 등 절차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법적 통제를 하는 한편,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근 위원 서면질의】

125. 후보자는 사법부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2023년 기준 압수·수색영장 전부 발부율은 90.8%이고, 일부 기각률은 약 8%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의 지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중고거래사기 등 범죄에서 계좌 명의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부되는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제외한 일반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발부율은 2013년 89.6%에서 2023년 84.1%로 상당히 감소하였고, 이는 2023년 구속영장의 발부율 79.5%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 법원은 2011년부터 전자정보 압수·수색으로 인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선별압수의 원칙, 참여권 보장 등의 의무를 선언하여 왔고, 이에 따라 실무편람과 실무제요의 편찬, 정책연구용역의 시행 등 실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26.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과정에 대면심리절차를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오늘날 각종 정보와 의사소통 자료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성 및 유통되고, 공적인 정보는 물론 극히 내밀한 사적인 정보까지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전자기기에 대량으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 전자정보 저장매체에는 위와 같은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칫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아 이를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임의적 대면심사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관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대상의 특정 등 영장발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전자정보에 대하여 선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압수·수색실무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원이 전자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서 임의적 대면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7. 수사기관이 휴대폰, 노트북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전자정보 전체를 통째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28. 위 127번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

(※ 127항 및 128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오늘날 각종 정보와 의사소통 자료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성 및 유통되고, 공적인 정보는 물론 극히 내밀한 사적인 정보까지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전자기기에 대량으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칫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선별압수의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이 일정한 경우 전자정보를 계속 보관하도록 하는 기존의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으나, 대검에서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10. 1.자로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일부 개정·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정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개별 사안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관정

보는 영장 기재상 판결 확정과 무관하게 즉시 삭제, 폐기하여야 하나, 기술적 문제로 정보 전체를 1개의 파일 등으로 저장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 입증을 위하여 전체 이미지파일을 보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주장의 당부 및 허용 범위에 관하여는 기술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법원에서도 검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9.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의 어려움으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침해기업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 자료를 특정하기 위한 '자료 목록제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22대 국회에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및 자료 목록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의 경우, 침해행위 및 손해액과 관련된 자료를 대부분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어 권리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부분으로 당사자가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및 자료 목록 제출제도가 도입 시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권리자의 권리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을 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130.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액에 인정에 대해 보수적 입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고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할 정도의 위하적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법원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생각이 있는지?

○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적으로 정해질 사항이나, 개별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개별 사건의 특성이나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지적하신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고, 법원 내부적으로 이를 공론화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실무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1.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행정부의 수장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절차적 과정을 거쳐 제청한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헌법학계의 다수의 견이고,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고있는 행정부의 수장이 대법관인사추천위에서 절차적 과정을 거쳐 제청한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대법관은 ① 대법원장의 제청, ② 대통령의 제청 수용, ③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 ④ 국회의 동의, ⑤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대법원장은 2024. 11. 26.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였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2024. 12. 12.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임명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 제청과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인사청문 요청 및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동의 절차를 마친 이후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대법관 임명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대법관 임명절차가 지연되어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133. 131번과 132번에서 임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 위 131번과 132번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고있는 행정부의 수장이 국회가 입법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135.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 134항 및 135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국회를 봉쇄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가로막아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한 경우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여기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제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형법 제87조의 내란에서 폭동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 형법 제87조 폭동의 의미에 대해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이라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고 폭행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내란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최광의의 그것으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한편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8.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였지만, 행사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법적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위헌적 행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헌법상 모든 권한은 남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각 헌법기관에 부여한 권한들도 헌법·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 다만, 특정한 권한 행사가 위헌적인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을 통하여 판단되는 것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견해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 헌법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정부와 법원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포고령을 살펴보면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하도록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계엄법에도 국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제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포고령을 보면, 계엄을 위한 한 의료인을 '처단'한다고 되어있음. '처단'에 대한 법적해석을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지?

141.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포고령을 보면,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이란 단어가 나와있음. 위 단어에 대한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지?

142. 후보자는 141번의 단어와 같이 대한민국에 체제전복세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떠한 사람이 반국가세력이라고 보는지?

(※ 140항부터 142항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내에서도 계엄요건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법원행정처장께서 위헌적 군통수권행사라고 언급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제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 헌법 제77조에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에게 경고하고 겁주기 위해 계엄을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남. 대통령의 말이 사실일 경우, 계엄을 할 수 있는 사유라고 생각하는지?

○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2024. 12. 3.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을 지적하고 있고,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개혁으로 정책을 바꾼 것이 법원장추천제도임.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1호 개혁안으로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법원장추천제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2019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일련의 시범 실시 과정을 거쳐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사법행정에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요소가 도입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이른바 인기투표로 변질되고, 법원장이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해 재판업무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유인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이에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와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절차를 최근 마련하였고, 새로운 법원장 보임절차의 핵심은 법원장 보임에 관하여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원장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법원장 보임 인사의 객관성과 적격성을 제고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번에 새로운 법원장 보임제도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면밀한 분석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 역시 관심을 갖고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145.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법원장추천제도폐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힌바, 위 의견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요?

○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를 통해 지방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과 법관 인사 이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되었으나, 법원장 보임에 법관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 이에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와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절차를 최근 마련하였고, 새로운 법원장 보임절차의 핵심은 법원장 보임에 관하여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원장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법원장 보임 인사의 객관성과 적격성을 제고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절차에 관하여 몇 가지 개선사항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면밀한 분석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 역시 관심을 갖고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146. 압수수색 사전 실질심사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147. 146번의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회에 끼칠 장단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148. 146번의 실질심사 제도가 용의자의 인권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끼질 것이라 생각하나요?

149. 1997년 처음 시작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헌법상 지켜야하는 국민기본권 신장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받고 있음. 당시에도 수사기관은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도입을 반대해 왔음. 압수수색 실질심사 제도가 수사기관의 반대로 입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지요?

(※ 146항부터 149항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오늘날 각종 정보와 의사소통 자료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성 및 유통되고, 공적인 정보는 물론 극히 내밀한 사적인 정보까지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전자기기에 대량으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 전자정보 저장매체에는 위와 같은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칫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아 이를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임의적 대면심사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관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대상의 특정 등 영장발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전자정보에 대하여 선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압수·수색실무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원이 전자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의적 대면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내·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50. 비상계엄당시, 체포대상에 한 판사가 올랐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

○ 언론 보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 판사가 체포대상에 올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치국가에서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도 이미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1. 이후에도 비상계엄을 통해 판사를 체포한다면, 후보자는 어떠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

○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치국가에서 반복해서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론적으로는 위헌·위법의 비상계엄을 통해 판사를 체포한다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2.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서버를 계엄군이 촬영해 간 것이 드러났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요?

○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도 정확한 진상 파악과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그 효력에 관해서는 향후 법원의 재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 등에서 심리될 수 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구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것도 헌법기관을 봉쇄한 것으로, 국헌문란이라 보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요?

154. 국헌문란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 153항 및 154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여기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제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 대통령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사건, 허위이력 작성, 공천개입 등은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높으나,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이렇게 전국민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결을 거쳐 특별검사 도입 여부에 대한 현명한 결정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 개별 사건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 서면질의】

156. 정부는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며 일시적으로 업무를 마비시켰음. 또한 비상계엄은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갖추지 못하였음으로,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적 사태임. 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알아내고 진상규명을 통해 적극적 가담자와 수괴, 소극적 가담자를 구분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요?

○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결을 거쳐 특별검사 도입 여부에 대한 현명한 결정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 개별 사건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현재 국회법에서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위 제도를 도입하고도 심사기한 내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전무하여 심사권이 형해화 되고, 정부여당은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하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야당은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함께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을 개정하고자 함. 우리 헌법은 행정부의 독선을 막기 위해 예산심사권을 입법부에게 부여한 바, 위와 같은 국회법은 예산을 더 꼼꼼히 심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 필요하다고 보는지?

158. 157번의 국회법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157항 및 158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권은 존중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개별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9. 12월 19일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증감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

160. 국회증감법이 타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보호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류제출 거부가 발생하고 있는 위법한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61. 또한 159번의 국회증감법 개정안은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의 부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민적해소를 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위해 원격출석을 가능토록 하고 청문회에도 부를 수 있도록 확대시켰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 159항부터 161항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증인 참고인을 강제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확대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기업의 영업 기밀 노출 가능성, 경영 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의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 등을 근거로 하는 반대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법관 후보자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회생법원의 파산회생제도가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 최근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하여 도산사건이 폭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고,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은 공정하게 환가·배당할 수 있도록, 법은 물론 실무례가 세심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원은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종전 5년에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고, 법인회생사건 자율 구조조정절차의 도입, 간이회생제도의 활성화, 개인도산사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신용정보 데이터 협력사업, 개인파산사건의 신속면책제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법원은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및 도산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3. 채무자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짐을 덜고 새출발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지?

○ 급격한 경제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도산제도를 통하여 신속하게 경제사회에 복귀함으로써 소비와 경제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고, 국가의 전체적인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다만, 법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4. 과거 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을 무죄 결정을 내렸음. 당시 법원은 "지배력 강화의 목적으로 추진한 합병일지라도, 결국 부당한 비율로 합병을 당한 회사 및 그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함. 반대로 해석하면, 주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 유죄로 봐야되는 것은 아닌지? 다수의 주주가 반대하고,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판결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 대상 판결은 합병의 주된 목적이 특정인의 경영권 강화 및 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였으므로,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병이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불이익이 되는지만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하여 그 당부를 논하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가정하여 의견을 밝히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하여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 현재 상법에는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가 부재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우리 법원은 198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일관되게 주주와 회사는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고, 이사는 위임계약의 상대방인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과할 뿐 직접 주주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왔습니다.

○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이사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을 두거나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고,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회 각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하여 학계나 재계, 정부 등에서 활발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여러 사회적 논의와 외국의 사례, 그리고 우리 상법의 체계나 기존 법리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타당할 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6. 164번의 법원의 판결에서 법원의 포괄적재량 판단으로 인해 상법을 해석하여 주주를 보호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하여 그 당부를 논하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가정하여 의견을 밝히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하여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었던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전체 피의자의 80% 이상이 미성년자(2024년 9월 기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미성년자에게는 중형이나 실형 선고가 잘 내려지지 않아 형사처벌 강화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효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168. 형사처벌 강화 이외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보완 방법으로 후보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169. 딥페이크 성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사진이나 영상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플랫폼에는 워터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영상물을 탐지 및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AI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 167항부터 169항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22대 국회에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시행되어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고 소지·시청죄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등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딥페이크 등 기술 발전으로 합성된 허위영상물과 사람의 신체를 실제 촬영한 영상물의 구분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법률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전체 피의자의 80% 이상이 미성년자여서 중형이나 실형 선고가 잘 내려지지 않아, 형사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처벌 외에도 교육과 예방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들이 기술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성범죄가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딥페이크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으며, 그 사용이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는 딥페이크 콘텐츠가 자동적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대응책으로 유용할 수 있고, 플랫폼에 워터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영상물을 탐지하고 차단할 의무를 부여하여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도 공감합니다. AI기본법의 입법 여부는 기술적 가능성,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과 비교법적 검토,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70.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경우, "민법 제914조에 따른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소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한 바 있음. 청소년이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를 찾는 경우에도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을 이유로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 청소년의 쉼터 입소를 알리는 방침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민법상 "자(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이 규정(민법 제914조)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이는 친권자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행사되어야 할 친권자의 '의무'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관은 이와 같은 오늘날의 친권의 성격을 감안하여, 무엇보다 친권자의 가정폭력이나 학대행위를 피해 친권자로부터 이탈한 가정 밖 청소년의 복리와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기준에 입각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1. 위와 같이 가정폭력·아동학대와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쉼터 등 관련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친권자의 가정폭력이나 학대행위를 피해 친권자로부터 이탈한 가정 밖 청소년의 복리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가정 내 보호와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성장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 청소년 쉼터 입소 사실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제공 범위 등에 대해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성폭력 등 친권자의 학대행위가 명백히 확인되거나 청소년의 거부 의사가 명확한 경우 친권자에게 쉼터 입소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친권자에게 쉼터 입소 사실을 알리더라도 정확한 쉼터의 명칭이나 위치는 알리지 않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백혜련 위원 서면질의》

1.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이 헌법 제77조 계엄요건에 부합하는지(실체적 요건)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2. 국회의 예산 삭감, 국무위원 탄핵 등이 비상계엄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지?

(※ 1항 및 2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2024. 12. 3.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을 지적하고 있고,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 계엄 선포 공고, 국회 통고 등 계엄의 절차 준수 여부(절차적 요건)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4.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관하여 절차적, 실체적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흠결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3항 및 4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89조 제5호 및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는 등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하여 일정한 절차적·형식적 요건도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엄시 계엄군이 국회에 대한 통제·관리에 관하여 법적 권한이 있는지?

6. 비상계엄 선포시 계엄군이 국회의원의 국회출입 통제 및 의결 방해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상 적법하다고 생각하는지?

(※ 5항 및 6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계엄법에도 국회 및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제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계엄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선포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8. 계엄군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국회 폐쇄와 점거, 의결을 방해하는 등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 7항 및 8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여기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제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12·3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의결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내란의 공범 여부에 관한 후보자 견해는?

○ 형법 제87조에서는 내란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에서 내란을 주도한 자로서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에 관하여 수사가 계속 중이고 향후 재판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96도3367 판결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의 점거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후보자 생각은?

○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여기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제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1도2631 판결에 따르면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 자체는 위헌·위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후보자 생각은?

○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제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016도1397 판결에 따르면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을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이고,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병력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대법원은 '군사상 필요할 때'의 의미에 관하여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해석하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후보자도 대법원의 해석을 지지합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로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비추었을 때, 12·3 계엄은 헌법상의 발동요건과 한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내에서도 계엄요건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법원행정처장께서 위헌적 군통수권행사라고 언급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및 공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15. 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16. 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2호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침해와 12·3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17. 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5호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14항부터 17항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제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기소 가능 여부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12·3 계엄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시 명시적 반대의견을 밝히지 않고, 침묵 또는 방조한 국무위원은 공범 또는 정범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또한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범죄 성립여부에 관한 후보자 입장은?

○ 이는 해당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의 관여 정도, 개진한 의견의 내용 등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현재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그리고 통치행위 일반에 관하여 대법원은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한다. 다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

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야당이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 언론 등을 통해 대통령이 담화에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 주장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2.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 국회의원 납치·감금 후 해제 의결을 방해하면 계엄이 지속되는데, 계엄 지속이 합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23.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 국회의원 납치·감금 등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이후 군사법원이 재판을 하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22항 및 23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계엄법에도 국회 및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제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일련의 행위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12·12, 5·18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내란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판결에서 판시한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란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사가 계속 중으로 향후 재판 사항이 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25. 윤석열 대통령 및 장관 등의 행정부 인사, 대통령실 관계자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핸드폰 교체에 관하여 증거인멸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형법 제155조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고, 해당 쟁점에 대하여는 향후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22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 언론을 통해 일각에서 22대 총선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언론보도에 의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거무효 소송 등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직접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계엄군이 미리 공고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고, 압수수색영장 없이 선관위 서버를 통째로 복사 및 압수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계엄법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현재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집행정지 상태인 경우 대통령의 '궐위'또는 '사고'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 헌법은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궐위'란 사망, 사직,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등으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것을 의미하고, '사고'란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으나 질병,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집행정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9. 대통령의 '사고' 상태의 경우 직무대행의 직무 범위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30.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29항 및 30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직무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범위와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결과에 따라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유보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헌법학계의 다수의 견이고,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12·3 계엄 당시 사유도 없이 특정 판사를 체포 시도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재판의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수행한 판사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해하고 사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내란 사건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 문서 수령 거부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34. 내란 사건 관련하여 대통령이 압수수색 거부, 문서 수령 거부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3항 및 34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다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에 대하여는 해당 압수 대상물의 내용 및 비밀성, 혐의 사실의 내용 및 성격을 포함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재판 사항에 해당하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승낙 요건, 즉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심사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물 확보가 책임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책임자가 이의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을 봉인하고 법원의 확인을 거쳐 압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해볼 만한다고 생각합니다.

35. 12·3 계엄해제 전후로 계엄군이 사법부 및 행정부에 공무원 등을 파견 및 독촉하는 행위가 적법하다고 생각하는지?

36. 12·3 계엄상태에서 행정기관 폐쇄, 계엄 시 비상업무 계획 준비 등 정부 부처의 계엄의 동조 행위에 대하여 불법성 여부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12·3 계엄이어도 사법부의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제한하는 비상조치를 사법부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그러한 사법부의 존재의의와 헌법상 사명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에도 완전히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부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조치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8. 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 및 서버를 탈취하고, 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 및 침입의 내란을 저질렀다면, 기수 시기는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군과 경찰의 유·무죄 또는 기수 여부에 관한 개인적 판단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대통령 법률자문 측은 "두세 시간 만에 국회에서 그만하란다고 그만하는 내란이 어딨나"라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인적 판단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위헌적 12·3 계엄 및 내란사건에 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특검 도입 여부는 사건 관련자들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기존 수사기관에서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일반론을 넘어 개별 사건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특검 도입 여부는 사건 관련자들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기존 수사기관에서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일반론을 넘어 개별 사건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김건희 여사에 관하여 압수수색 없이 무혐의 처리, 검사가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이른바 황제조사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개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법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거주한 아파트의 전세계약 가격 체결 사유와 그 당시 시세는?

○ 2015. 3. 9.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06동 810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습니다. 당시 보증금은 5억 5천만 원이었고 이후 연장계약시 6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전세계약은 해당 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소에서 중개거래한 것으로 해당 보증금을 전세 시세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세계약은 주거용(종전 전세 계약이 집 주인 입주로 인해 종결된 데 따라 새로운 주거지 계약)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 이후 2021. 10. 12. 자가인 서초동 삼풍아파트 9동 1103호로 전입하여 거주하였습니다.

44.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도 하기 전에 '특정 이념 성향'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임명권 보류를 검토한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상 대법관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같은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임명제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상 통치구조가 대통령제 하의 엄격한 삼권분립 체계를 취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장의 대법관임명제청권 행사 전에 대통령이 임명권 보류를 검토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5.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46. 대법관으로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과 원칙은?

(※ 45항 및 46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함께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대법관은 법의 해석 및 재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변화하는 사회 상황과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포용력과 공감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무엇보다도 대법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려는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47.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법원이 지금까지 했던 판결 중 가장 좋은 판결 5건과 가장 아쉬운 판결 5건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 가장 좋거나 아쉽다고 생각하는 대법원 판결 몇 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밝히는 것은 대법관 후보자 지위에서 조심스럽습니다.

○ 다만 대법원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거쳐 논의를 공론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를 선언하는 것은 국민들이 법규범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좋은 판결의 사례들입니다. 최근 예로 부동산이중양도의 배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공개변론 등을 거쳐 법리적 논쟁에서 더 나아가 현재 실상 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유죄를 유지하였습니다. 실상에서 널리 적용되는 법적 논란에 관하여 대법원이 법조문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거래 실상을 살펴 현실성을 갖춘 법리를 선언하였습니다.

○ 아쉬운 판결까지는 아니고, 향후 충분한 검토 아래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부분입니다. 민사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물 개념을 좀더 넓히고 적극적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도모하여 국민들의 소송 피로도를 낮추고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형사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된 절차와 요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엄격하게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공소장에 불필요하게 논란이 되는 증거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핵심적인 공소사실만 기재됨으로써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8. 후보자의 판결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결 5건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아쉬웠던 판결로 기억에 남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노106 판결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시 처리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옆집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개정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처벌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 후보자는 위 규정의 '신체적인 장애'를 해석함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모든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해자가 그러한 정도의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후보자와 같은 고민을 하던 하급심 판사들의 다수 실무례이기도 하였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2016도4404 판결)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진일보한 판결을 하였고,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24 판결

- 이 사건은 구분건물의 지분 대부분을 임대받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백화점을 설치하면서 소수지분권자 소유 구분건물의 이용통로 등을 막는 벽을 설치하자 소수지분권자가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공용부분에 설치한 벽 등의 철거를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후보자는 구분소유자인 '소수 지분권자 보호'를 위해, 벽 등의 설치가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함에도 적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2023다240879 판결)은 위와 같이 철거를 구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으로써, 원고 청구 기각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다수지분권자의 횡포를 막고 소수지분권자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은 없는지 보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7910 판결

-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기업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하

철 9호선 연장 공사를 수급 받았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가 사전에 원고의 선지출 공사비가 적정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이러한 집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 자체가 손해액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소수 지분의 수급업체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 내지 절차적 보장의 소중함과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2023다253929 판결)은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소수지분권자의 절차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49.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비주류와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후보자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가?

○ 법원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절차적 기회를 부여받고 궁극적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된다면, 사법절차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가 정당한 편의제공 등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할 것이고, 그러한 사법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 고위직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이 전관비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전관예우는 법관이었던 자가 퇴직 후에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면서 재판절차 또는 결과 등에서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예컨대, 전관예우를 빌미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재판절차 내에서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수임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전관예우를 기대할만한 요소를 차단하는 등 사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형사소송법,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각급 법원의 연고관계 재배당 기준 등에서 정한 신고·회피, 제척, 재배당 등의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법관이 평생 법관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법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시니어판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관 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전관예우의 의혹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51.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집단소송은 주로 많은 수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각 피해규모가 소액이어서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정한 사법적 해결방안으로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번 국회에도 관련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집단소송법안(백혜련, 2202896),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2206276)].

○ 소비자 피해나 환경피해 등의 경우 특정 사건으로 다수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전체 피해 규모는 크지만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작아서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피해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사회적으로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적정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52. 국민의 사법부 불신 및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과 관련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 따라서 모든 법관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불필요하게 관련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피하여야 하고, 정치적 관련성을 외부에 표시하거나 의심을 살 수 있는 몸가짐이나 언행에 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최근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법관 개인을 공격하고 재판을 정쟁의 수단을 악용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판과 판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위와 같은 부당한 시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관 개인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법관들이 사법부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재판제도와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53. 대법관 되고 나서 퇴직 후 계획은?

○ 법학전문대학교에서 실무 관련 강의를 희망합니다.

○ 제주에서 근무하면서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교 학생들이 실무 강의를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실상이 그러하고 본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교가 더욱 좋겠습니다.

54. 검찰의 악의적 분리 기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의 법관 사건배당 예규에 공동피고인 1인에 대한 사실심 선고 이후에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분리기소를 재배당 사유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 공동피고인 사건은 통상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므로, 동일한 사건을 두 번 이상 심리하는 경우 법원의 시간과 자원이 불필요하게 소모될 수 있고, 공동피고인의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될 경우 판결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의 법관 사건배당 예규에 '공동피고인 1인에 대한 사실심 선고 이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분리기소 사건'을 재배당 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분리기소된 사건이 원래의 재판부에 재배당되어야 하는 의견이 있는데, 다만 두 개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인 점, 공동피고인들이 서로 입장 및 의견이 다른 경우 방어권 보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사건에 따라 해당 재판부에 업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5. 중대비위를 저지른 판검사, 기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비위를 저지르고 퇴직을 했음에도 변호사법 8조상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적용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적용에 협회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공익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법조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할 경우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타 기관 위원회의 법 적용 및 심사에 대하여 후보자로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청문회 대상자인 국무위원 후보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청문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요구자료의 내용이 본인에 대한 정보가 아닌 등 국무위원 후보자 자질 검증과 무관하거나 내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7. 법관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등 각종 성비리를 저지르고도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법관의 신분보장에 따른 징계처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법관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 법관의 비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 비위 법관에 대한 엄정한 징계절차를 실시하고 법관 전체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8. 초범, 반성, 음주 등 범죄사실과 무관한 양형기준으로 인해 범죄자 형량 감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있음. 직접적 범죄사실과 무관한 양형기준이 감형요소에 포함된 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 형법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양형인자 뿐만 아니라, '행위자', '범죄 후의 정황'에 관한 양형인자도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하여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인자의 남용 우려를 고려하여 최근 엄격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고,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형사재판에서도 반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을 감경인자로 규정하면서, 살인범죄 등 개별 범죄군의 '서술식 기준'을 통해 남용을 막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음주 등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양형인자에 대하여 '충실한 양형심리'를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양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9.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서울에 집중돼있는 사법기관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기관의 분산을 통해 국토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사법기관의 소재지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전을 위한 막대한 재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기관 이전이 국민의 사법 접근성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이전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사회 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분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0.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인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 입증 및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남용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오늘날 각종 정보와 의사소통 자료가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성 및 유통되고, 공적인 정보는 물론 극히 내밀한 사적인 정보까지도 전자기기에 대량으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남용되지 않도록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임의적 대면심사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관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대상의 특정 등 영장발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에게 추가적인 심리수단을 부여하고 압수수색의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1. 검찰이 과도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초 사건과 관련 없는 사안까지 수사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 2022. 5.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와 같은 규정을 영장발부 여부를 할 때 고려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영장재판의 심리에 있어 선별압수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압수수색의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아가 입법론으로 압수된 전자정보의 관리 및 폐기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별건 수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법적 통제,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2. 사이버렉카, 배드파더스와 같은 사적 제재가 횡행하는 것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 최근 사이버렉카, 배드파더스와 같이 SNS를 통한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의 반응이 있으나, 사적 제재 대상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관련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건을 상기시켜 고통을 가중시키는 2차 가해의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자칫 무고한 사람에 대한 부당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당시 가해자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에도 경청할 만한 측면이 있고, 법원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적정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3.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여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해지는 경향이 있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확대 및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도 청소년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충분한 연구와 조사 없이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할 경우,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게 되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습니다.

○ 또한, 미성년자는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환경과 교육에 따라 충분히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교화의 대상이므로, 이러한 청소년들은 사회로 복귀시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소년범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개선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까지 모두 처벌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형사책임 연령 도입의 취지, 해외 사례, 형사정책적 요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국민의 여론 등 여러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4. 현행법 상 체액 테러 범죄의 경우 재물손괴로 처벌받고 있음. 체액 테러 범죄 역시 성폭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체액 테러로 피해자가 성적인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이를 단순히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 위하효과를 통한 일반예방, 특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성폭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이와 같은 입법 과정에서는 명확한 기준 설정과 형평성 있는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조계, 학계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5. 배우자와 자녀가 2016년 ~ 2017년 제주도에 거주하게 된 경위는?

○ 2016. 2. - 2017. 2. 제주법원 근무시 배우자와 차남과 함께 제주에서 주로 거주하고, 장남이 학업을 위해 서울 거주지에서 거주한 관계로 주말 방문 등의 기회에 서울 거주지에 거주하였습니다. 전세기간이 남아 있는 서울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상실 문제 때문에 본인은 제주법원 관사로 전입신고하지 못하였고, 배우자와 차남만 2016. 2. 16. 세대 분리하여 제주법원 관사로 전입 신고하였습니다(2016. 2. 중순 인사이동 무렵 당시 차남의 서울 소재 압구정초등학교 입학 배정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바로 전출입하면 그 입학 배정 취소 후 제주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데 반해 며칠을 지체하면 배정된 서울 소재 압구정초등학교에 입학 후 다시 전학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주시 구남동4길 10-6 소재 임시 거주 제주법원 관사로 전입한 다음, 이후 확정된 제주시 고산동산6길 23 소재 제주법원 관사로 2016. 3. 2. 전입하였습니다). 2017. 2. 본인은 서울로 발령이 나 서울의 원래 거주지로 이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차남은 학교 문제로 2017. 6. 11.까지 4개월 가량 서귀포시에서 거주하다가 서울의 원래 거주지로 전입하여 세대 합가하였습니다.

66. 대법관 구성이 특정 성별·학교·직업으로 경도되어 있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보완 방법은?

○ 대법원이 사회적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법관의 성별, 학력, 지역, 이력 등 인적 특성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인적 특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인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성한 대법관들이 사회적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 여러 인적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대법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명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훈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소병훈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모든 법적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합니다. 대법원은 급변하는 사회상황 속에서 법을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규범적 지향점으로서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대법관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조화롭게 함께 살 수 있는 법치국가의 틀을 마련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편견 없이 성심을 다하여 경청하고 포용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전체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은 헌법보장과 기본권 보장, 소수자 보호 및 사회적 약자 보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를 위해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소외된 곳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일이야말로 대법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 후보자께서 대법관에 임명되고자 하는 이유는?

○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총 6년간 재직하면서 중요 상고사건의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한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재판을 담당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제가 추구하고 노력한 이러한 법관으로서의 모습이 부족하나마 저의 강점이 될 수 있고, 헌법보장과 기본권 보장, 소수자 보호 및 사회적 약자 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원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대법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재판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장의 재판업무 담당,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등 법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고, 감정절차 개선, 판결서 기재 간이화,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 심리모델 개선 등 재판절차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조일원화 등 변화된 환경에서 법원 구성원의 자긍심과 직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마련,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정착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중이고, 더불어 미래등기시스템, 형사전자소송 등 국민이 사법접근성 개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함으로써 점차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사법부로서는 국민적 신뢰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이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하늘을 공경하고, 국민을 부모처럼 섬긴다(齊家 忠國 敬天 親民 <大學章句>).“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 법관으로서, “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그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늘”은 정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은 소송관계인,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재판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늘 가슴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5. 후보자가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 공직자로서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인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을 존경합니다. 이시영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해 가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독립자금을 만들어 만주 땅으로 망명한 후 본인의 사재를 모두 동원하여 인력양성을 위해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해 초대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 이시영 선생은 최고의 명가 출신이자 소년등과로 어린 나이에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중요 직책을 거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칫 생명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만주로 망명하여 몸소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셨다는 점에서 늘 존경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6. 판사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 3가지와 후회되는 일 3가지는 무엇인가?

○ 후보자가 판사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재판부 관련 사항, 재판 진행 정보 등 가급적 모든 정보를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였고, 재판진행시 절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구체적인 변론과 입증에서 다소 기계적일 정도로 양측에 대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후보자가 후회되는 일까지는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재직하는 동안 아쉽다고 생각하는 일 3가지는, 첫째, 처가 자녀 양육문제로 공부를 계속하지 못한 것, 둘째,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것, 셋째, 자녀 교육이라는 눈앞의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전 3년간, 통영 1년간 지방근무시 가족과 떨어져 단독 부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후보자의 재판 중 가장 의미있고 자랑스러운 판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판결은 무엇인지와 그 이유는?

○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의미 있는 판결로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51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처리하였던 사건 중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 약 200여명이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 업체에 고용되어 직접생산 또는 간접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현대자동차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로 인하여 현대자동차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이른바 '사내도급' 형태의 분업적 생산방식이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사내 하청을 근로자파견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79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처리하였던 사건 중 강제동원 피해자가 특정 전범기업을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파기환송 판결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선언된 후 위 대법원 판결이 재상고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재상고심 사건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해석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전히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최초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구제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8060 등 판결

- 5.16 군사정변 후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하여 "특별법의 위헌성 판단을 현저히 해태하고, 재판관들에게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가합1906 판결

- 근로자가 건강검진결과를 개인적으로 통보받고 추가적인 검사나 진료 등을 받지 않아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건강진단기관은 결과를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도 통보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결과를 통보받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하루하루의 노동 속에 매몰되어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는 근로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의 요청"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7노1519 판결

-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검사 항소에 따른 항소심 변론기일 전 수회 검찰에 소환되어 사실상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항소심 공

판기일에 범행을 자백한 사건에서, 당시는 이러한 경우에도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 판례와 실무례였지만, 이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훼손됨으로써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항소심 법정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결국 1심의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아쉬웠던 판결로 기억에 남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노106 판결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시 처리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옆집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개정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처벌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 후보자는 위 규정의 '신체적인 장애'를 해석함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모든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해자가 그러한 정도의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후보자와 같은 고민을 하던 하급심 판사들의 다수 실무례이기도 하였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2016도4404 판결)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진일보한 판결을 하였고,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24 판결

- 이 사건은 구분건물의 지분 대부분을 임대받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백화점을 설치하면서 소수지분권자 소유 구분건물의 이용통로 등을 막는 벽을 설치하자 소수지분권자가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공용부분에 설치한 벽 등의 철거를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후보자는 구분소유자인 '소수 지분권자 보호'를 위해, 벽 등의 설치가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함에도 적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2023다240879 판결)은 위와 같이 철

거를 구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으로써, 원고 청구 기각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다수지분권자의 횡포를 막고 소수지분권자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은 없는지 보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7910 판결

-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기업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를 수급 받았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가 사전에 원고의 선지출 공사비가 적정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이러한 집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 자체가 손해액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소수 지분의 수급업체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 내지 절차적 보장의 소중함과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2023다253929 판결)은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소수지분권자의 절차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8. 대법관 퇴임 후 계획은?

○ 법학전문대학교에서 실무 관련 강의를 희망합니다.

○ 제주에서 근무하면서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교 학생들이 실무 강의를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실상이 그러하고 본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교가 더욱 좋겠습니다.

9. 법원의 대표적인 문제점 세 가지와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 현재 재판 장기화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판지연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종 재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재판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감정제도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적정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항소심 심리모델을 개발하고 판결서 작성방식을 적정화하여 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는 등 신속한 재판 구현을 위한 각종 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상고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고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권리구제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그 개선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재판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사법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므로, 충분한 사법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사법부 예산의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법원 개혁 우선순위 5건이 있다면?

○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제에 더하여 두 가지 과제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법원이 사회적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법관의 성별, 학력, 지역, 이력 등 인적 특성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인적 특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인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성한 대법관들이 사회적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 인적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대법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명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우리 사회가 사회구조적인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차별적 요소가 남아 있고, 이는 사법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상위 직급의 여성비율 확대, 여성의 사법행정 참여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문화 개선 등을 통해 성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상고심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는?

○ 현재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상고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권리구제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그 개선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평생법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제도 도입이 안 되는 원인에 대한 견해는?

○ 평생법관제 도입은 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정년까지 법관으로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 등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논의되어 왔고,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법관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에서도 원로법관 제도, 법원장 순환보직제도, 전담법관제도 등을 통하여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 들어 정년퇴임하는 법관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법관들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 잦은 전보인사로 인한 생활환경의 불안정 등을 이유로 중도퇴직을 선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법관 증원과 함께 재판연구원 등 보조인력을 확보하여 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관의 근로의욕을 계속 고취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법관의 처우 등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각국의 시니어판사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현실에 맞는

시니어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함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국회에서도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인적, 물적 기반 마련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13.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법기관을 신뢰하는지를 묻는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은 반면, 구체적인 재판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심각해진 재판 장기화 현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 등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 등이 사법신뢰도를 낮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인 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의 판결이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무엇보다 재판 장기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이 힘을 합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지연의 원인이 되는 감정절차 등 재판제도를 개선하고, 법관과 직원 모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평소 언행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판결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개혁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사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과제는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하루빨리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사법부는 법관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고, 법원장과 사무국장이 재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기 존의 업무 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정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사건심리모델을 도입하는 등 재판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사법부의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신속한 재판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인공지능기술 도입을 통해 새로운 재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률이 개정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구현을 위한 노력에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5.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있다면 이를 해소할 방법, 없다면 국민의 인식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법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는 법관이었던 자가 퇴직 후에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면서 재판절차 또는 결과 등에서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관예우를 빌미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재판절차 내에서 전관예우 등의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수임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전관예우를 기대할만한 요소를 차단하는 등 사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형사소송법,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각급 법원의 연고관계 재배당 기준 등에서 정한 신고·회피, 제척, 재배당 등의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관이 평생 법관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법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시니어판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관 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전관예우의 의혹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6. 법원, 검찰 등 법조계의 기수 문화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개선 방향은?

○ 종래 법조계는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라 서열화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이른바 기수문화는 법원조직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의 기수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법조일원화의 도입, 로스쿨의 설치 및 사법시험의 폐지 등의 외부적 요인과 고등부장판사제도의 폐지, 사실심 단독관할 및 경력대등재판부의 확대 등 내부적 요인이 결합하여 법원의 조직문화가 수평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개개의 법관이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내릴 수 있도록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수나 서열이 인사나 평정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원인과 해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당사자가 절차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충실한 심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하급심 재판과정에서 충분 진술이나 증거수집 및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관뿐만 아니라 재판연구원 등 재판보조인력의 충분한 증원 등 인적, 물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하급심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재판진행,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사법부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법관이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피, 제척, 재배당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8.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법의 독립은 사법의 본질인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근간으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 최근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법관 개인을 공격하고 재판을 정쟁의 수단을 악용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판과 판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위와 같은 부당한 시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관 개인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법관들이 사법부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재판제도와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한편으로, 사법부는 재판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재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관들도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언행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 법적 판단의 최종 권한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대법원과 헌재는 어떠한 관계이며 어떤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가?

○ 현행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기관으로 상호 독립적이고 대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은 명령·규칙, 처분의 위헌·위법심사권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부여하고,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 양 기관은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본질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 일 가정 양립에 대한 견해와 여전히 양립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의 문화가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맞벌이의 증가, 양육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더욱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기준을 벗어나거나 불합리한 직장 업무환경, 가사, 육아의 부담(특히 여성에게) 등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에는 감당하여야 할 총 부담량이 너무 많습니다.

21.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그 사유에 대한 견해는?

○ 이른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만 참사 직후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한 모든 정보와 절차를 공개하고 또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는지 되새겨 볼 필요는 있습니다.

22.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먼저 경매절차 등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취지에 맞게 집행하는 것과,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원 업무를 개선하는 것, 전세사기피해 관계 부처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 등이 전세사기피해 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전세사기피해자가 등기 촉탁을 할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를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업무협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 사형제 존폐 및 사형 집행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형제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형에 관해서는 항상 오판을 바로잡을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나아가 사형제도가 악용된 불행한 역사적 경험도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다수 인명살상 테러,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하여 여전히 사형의 형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법 감정도 간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형제의 폐지는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4. 동성결혼 및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성소수자 역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다름에 대하여 갈등과 혐오를 표출하기보다는 이해와 포용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소수자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넘어 어떠한 법률적·제도적 보장을 할 것인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견해와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사법부 역시 재판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한민국 건국의 기점은 크게 보아, 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로 보는 견해,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1일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① 견해는 국민과 영토, 주권을 모두 갖춰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은 것을 근거로 하고, ② 견해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며, 각 견해에 따라 현대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대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한 후 일제를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다가 1919년에 이르러 3. 1 운동을 거치면서 조선민중의 열망은 이전의 대한제국 내지 조선왕정의 계속이 아니라 공화정의 수립으로 나타나 1919. 4. 11.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이후 이 점에 대한 조선민중의 총의는 더욱 모아지고 굳건히 확립되어 1948. 7. 12. 대한민국헌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체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6. 사회적 약자를 위해 후보자가 노력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를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책무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 후보자는 재판을 담당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사법부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듣기 어려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사회 내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 또는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사회의 인권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이 법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감각과 포용력,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할 때 사회 내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진정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7. 종교인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2015년 종교인의 납세의무가 명시되어 개정된 소득세법은 201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헌법상 평등 원칙과 조세법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당성의 근거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종교인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과세 기준과 절차는 종교 활동과 관계하는 특수성, 국민의 조세 형평에 대한 건전한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종교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종교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히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8.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그 한계는 무엇이라 보는가?

○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공공질서와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 예컨대, 인터넷 등에서 성별, 연령, 장애, 소득, 직업 등에 대하여 혐오·차별적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질서와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그 행사가 제한되어야 합니다.

29.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절차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대법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것에 대한 견해는?

○ 「5 ·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5 · 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서, 시민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희생한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의 개정은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5 · 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 여부는 충분한 숙고를 거쳐 국민적 합의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 현재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다양한 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경제적 빈곤층, 이주민, 노인, 여성, 아동, 성소수자 등 여러 인권 현안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권 현안을 해결해야 하지만, 그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우리 사회의 노력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편의제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부도 각종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32.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조정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관 후보자로서 행정부 내부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랜 기간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입법되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추후에도 위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이 있었고 언론 등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입법을 통하여 제도화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공수처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권한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관한 문제로서 국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공수처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다른 수사기관과 조율이 필요한 사항들이 생기고 있지만, 이 점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4. 공판중심주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실질적 대등이 지켜져야 하고 이를 통해 공판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절차 수행 역량은 국가기관인 검찰보다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검찰은 피고인의 반대당사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국가 형벌권을 공정하게 실현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는 객관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법관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원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명감을 바탕으로 수사상 강제처분 등 절차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법적 통제를 하는 한편,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나아가 공판정에서의 심증 형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리기법을 개선하고 서증조사 방식 등에 대한 법이나 규칙 개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모든 사건에 관하여 법정에서 세세하게 증거조사하는 것은 제한된 인적, 물적 환경에서 불가능하므로,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를 통하여 철저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시간과 자원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5. 대법원 구성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의 구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바와 같은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고 그 우려의 취지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 그동안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모든 국민 누구나 대법관 후보를 천거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관 후보로 천거되어 심사에 동의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위원이 다수 포함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 및 심사를 거쳐 추천된 최종 후보자 중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성별, 학력, 지역 등 일정한 기준에 있어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다만, 대법관의 인적 구성은 성별, 학력, 지역 등의 형식적 기준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철학의 다양성 또한 강조되어야 하며, 가치관이나 철학은 그 사람의 나이, 지위, 경험과 경력에 따라 달리 형성되고 표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세대, 성별,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 앞으로도 대법원은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고려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 후보의 천거절차에서 보다 다양한 후보들이 천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36.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오늘날 각종 정보와 의사소통 자료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성 및 유통되고, 공적인 정보는 물론 극히 내밀한 사적인 정보까지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전자기기에 대량으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칫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임의적 대면심사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관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대상의 특정 등 영장발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관에게 추가적인 심리수단을 부여하고 압수·수색의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대법원 규칙보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7. 조건부 구속 영장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행 구속영장제도는 수사기관의 역량과 관심이 지나치게 구속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이라는 양자택일의 결정밖에 할 수 없어 불구속수사 원칙 및 피의자·피해자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조건부 영장제도를 도입하면 구체적인 사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조건(전자장치 부착, 차량 운행 금지, 마약 등 사용금지, 의료기관 치료 또는 입원, 거주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부과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음은 물론 이와 함께 피의자의 방어권과 피해자 권리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8.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재의요구권 행사의 한계 여부 등에 대해서 학계의 여러 시각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 권한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하여 후보자가 어떠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법관회의 활성화를 통한 법원 내부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법관회의를 국민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회의결과 및 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현실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한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재판제도와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 각급 법원의 대표 선정은 내부 판사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회의록도 익명화를 전제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한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관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적되는 부분을 보완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 법원의 전문성, 독립성, 민주성, 관점에서 노동법원, 환경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오늘날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사건에 대응하고 재판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문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의 전문화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전문법원의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우선적으로 노동법원 및 해사법원의 설치를 추진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해사법원의 경우 해사법원의 관할, 설치지역과 수 등 구체적인 방안이나 모습에 관하여 여러 쟁점이 있고, 노동법원의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와의 관계, 참심제의 도입 여부 등 여러 쟁점이 있는 만큼 법원과 국회 및 유관기관의 협력 하에 충분한 연구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법원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환경소송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 관할 등에 관한 충분한 연구검토와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41. 현행 노조법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파업', 즉 합법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파업이란 원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임.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법원이 이를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 왔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단체행동권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도 제한 없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불법파업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법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 반대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42. 공익 소송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주의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은?

○ 공익적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고, 이러한 내용의 법률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공익을 위해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사안에 따라 재판부에서 승패와 달리 소송비용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재판부에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칙과 달리 정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법원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훈 위원 서면질의】

43. 후보자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고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 법조일원화 제도는 상당한 경력을 쌓은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맞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므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을 가진 경륜이 풍부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 법원조직법 제42조 제4항에서 판사 임용에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법관임용에서도 점차 다양한 배경과 경력, 전공 등을 가진 법관들이 임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 도입 등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최근 휴대전화, 컴퓨터, 서버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반화되고 있고, 전자정보와 그 저장매체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법원에 의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 이러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법관에게 대면심문과 같은 추가적인 심리수단을 부여함으로써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압수·수색의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개선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법관 대면심리제도 도입으로 수사 밀행성이 침해되고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비판의견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심문의 대상을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신청하는 참고인으로 제한하는 등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5.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입장은?

○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실의 특수성과 국가안보 보호 필요성,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국가보안법을 존치하는 경우에도, 위 법은 국가의 안전, 반국가활동, 찬양·고무·선전 등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문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유추해석금지 원칙, 확장해석 금지원칙 등 죄형법정주의 일반원칙에 따라 제한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역사가 있는 점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46.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판결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및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관련 사건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제시된 이래 그와 관련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이 개별 법관의 주관적 감수성에 의존하여 성폭력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 대법원이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은 국내외에서 오래 전부터 법과 제도를 만들거나 해석·적용할 때 갖추어야 하는 덕목으로 논의되어 왔던 "성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심증에 의한 법관의 증거 판단, 특히 증언의 신빙성 판단은 경험칙과 논리법칙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위 대법원 판결들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험칙을 적용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는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피해자의 일부 언행이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아 그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같은 상황에서도 성별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성인지적 관점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험칙의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취지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한편, 최근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은, 지적장애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객관적 정황이나 다른 경험칙 등에 반함에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서, 기존 성인지 감수성 관련 판례에 배치되는 취지는 아니며 무죄추정의 원칙상 당연한 설시라고 생각됩니다. 법관으로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춤은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균형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7.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며, 입증이 되지 않으면 기각되고 있음. 증거와 정보의 구조적 편재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과실이나 결함,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면?

○ 제조물 하자에 관한 소송,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소송과 같이 수집해야 할 정보가 전문적이고 접근하기 힘든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 증거의 불균형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불평등한 소송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사건 유형에 대하여는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관련하여,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가 보유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문서제출명령이 거의 유일한데, 이마저도 제재가 미흡하여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의 개편, 진술녹취제도 도입 등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8.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의 제조사 책임 판례가 0건인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하여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일부 있으나,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으로 최종 확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조물의 경우, 일반인이 제품의 결함 및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제조물 책임법은 피해자인 고객이 특정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 및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의 결함 추정이 인정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현재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법 개정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9. 지난해 12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1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음. 극단적 초과 노동을 대법원이 허용했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은 피고인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미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권익위는 디올백 수수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으니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개별 사건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전세 사기에 대해 과감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경법이 개정돼야 함.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를 반대해 개정이 무산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은 여러 범죄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죄가 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에 관하여 21대 국회에서 동종 유사 수법의 범행에 관하여는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 이는 죄수, 기판력 등에 관한 형사법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를 일죄로 처벌함에 따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면소되는 여죄의 범위), 공소장변경의 허용 여부, 추가기소 가능 여부, 검찰의 기소재량 통제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52.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그리고 통치행위 일반에 관하여 대법원은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한다. 다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

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 기본적으로 해당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동의하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그 위임을 받은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행사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 범위 내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3.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 할 수 있다" 라고 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 후보자는 동의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12·12, 5·18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내란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의 법률요건 구비 여부는 통치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①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② 비상계엄의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54.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것은 '국회의사당을 점거·폐쇄'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이 진입하였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사당을 점거·폐쇄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 등에서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될 사항으로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5.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2·3 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것은 '보안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라고 판단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말씀하신 부분은 법원의 재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 등에서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될 사항으로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계엄군을 진입시킨 것은 형법 제87조상 '폭동'에 해당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일반론으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 함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쟁점에 대하여는 향후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기수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유·무죄 또는 기수 여부에 관한 개인적 판단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현재 국민의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결론이 나기 전에 상설특검이 추천 및 임명된다면 해당 심리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만약 위헌 적인 것으로 결정날 경우 특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이나 권한쟁의심판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내란죄의 정범들이 국헌문란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내란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5·18 사건에서 대법원은 '5·18내란 과정으로서의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므로, 그 비상계엄 자체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전국계엄에서 지역계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는 이를 해제할 때까지 간단없이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폭동행위가 간단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그 비상계엄의 해제시까지 사이에 밀접하게 행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부터 정치활동 규제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폭동행위들은 위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와 함께 단일한 내란행위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이처럼 내란행위의 종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폭동행위의 계속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에 관하여는 현재 수사 계속 중이고 향후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 24년 12월 3일 22시 기준, 대한민국은 헌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2024. 12. 3.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을 지적하고 있고,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국무회의의 심의 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이 부서한 문서가 없는 경우, 해당 국무회의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에서 행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63. 비상계엄 선포 시 지방의회에서 행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62항 및 63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계엄법에도 국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제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비상계엄 선포 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방식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과 무관한 부분에까지 무제한적으로 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제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의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명령 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66. 비상계엄 선포 시 의료인을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계엄법 상 '동원 또는 징발'에 해당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65항 및 66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제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시킬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68. 비상계엄 선포 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압수수색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67항 및 68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계엄법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제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비상계엄 해제 이후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표결 이전 자신의 경호인력을 대동하고 국회를 방문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국회에 대한 폭력 혹은 위협 행위로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질의하신 쟁점은 사법심사를 통하여 판단될 사항으로 생각되고,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대통령 경호처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헌법상 규정된 영장제도를 침탈하는 행위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다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에 대하여는 해당 압수 대상물의 내용 및 비밀성, 혐의 사실의 내용 및 성격을 포함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재판 사항에 해당하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승낙 요건, 즉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심사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물 확보가 책임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책임자가 이의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을 봉인하고 법원의 확인을 거쳐 압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해볼 만한다고 생각합니다.

71. 내란죄는 언제 종료된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5·18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므로, 그 비상계엄 자체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전국계엄에서 지역계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는 이를 해제할 때까지 간단없이 계속되었다'라고 판시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비로소 종료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고, 해당 쟁점에 대하여는 향후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내란죄의 기수가 인정된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일반론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이는 향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내란죄의 기수로까지 인정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리라 생각됩니다.

○ 다만 헌법은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한편 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대통령이 사고나 궐위에 의한 직무정지 없이 특정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고 한다면 이는 합헌적 행위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74. 대통령이 자의에 의해 2선 후퇴를 밝힌다면 이를 뒷받침할 헌법적 근거가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73항 및 74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명목상으로만 남기고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어, 실질적으로 국무총리 등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현행 헌법 하에서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과 역할에 관하여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헌법 상 '사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76. 헌법 상 '궐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77. 대통령의 자의에 의한 2선 후퇴, 국정 위임은 헌법 상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75항부터 77항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헌법은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궐위'란 사망, 사직,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등으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것을 의미하고, '사고'란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으나 질병,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집행정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다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과 역할에 관하여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탄핵심판 중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심판절차 정지는 재판부의 재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탄핵심판 중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 국민적 관심이 큰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재판신속의 가치가 강조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당사자들에게 절차적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의 조화를 이루는 적정한 심리기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80. 사회 일각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최근 공직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후보자는 이 같은 부정선거론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언론을 통해 일각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대하여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선거들과 관련하여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직접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위원 서면질의】

81. 후보자의 정치성향(ex, 진보, 중도, 보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스스로 정치적 성향을 규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 법치주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법적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보호, 소수자보호 등 진보적 가치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일보한 판결을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2. 대법관의 정치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입장은?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개인의 양심이 아닌, 보편적인 규범의식에 기초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의미합니다.

○ 법관은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이나 신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3. 대법원 판결은 각분야의 중요한 법적 선례를 제시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주목할 만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구체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건을 특정하여 밝히는 것은 대법관 후보자 지위에서 조심스럽습니다.

○ 다만 대법원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거쳐 논의를 공론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를 선언하는 것은 국민들이 법규범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좋은 판결의 사례들입니다. 최근 예로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공개변론 등을 거쳐 현재 실상 등을 반영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등을 살펴 법리를 선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84.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관련 주요 판결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1803 판결(대학교 소속 연구원 해고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5213 판결(내부비리 제보자 해직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6698 판결(정신병원 보호입원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0구30925 판결(구직 중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가입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7402 판결(취업규칙 개정을 통한 임금피크제 사건)

※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약자 등 취약계층 권리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은?

○ 사법부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듣기 어려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사회 내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 또는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사회의 인권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법원이 법을 단순히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한다면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 간과됨으로써 다양한 가치기준 제시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해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균형감각과 포용력,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할 때, 사회 내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86. 대법관으로서의 목표는?

○ 최근 법원의 재판 장기화에 대하여 국민들의 심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주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겠습니다.

○ 대법관으로서 개별적 분쟁 해결에 안주하지 않고, 사안에 내포된 새로운 규범적 쟁점을 파악하여 급변하는 사회상황과 가치를 반영하는 해석의 기준 및 내지 가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고 이를 실천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7. 성평등 사회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과 후보자의 철학은?

○ 우리 사회는 사회구조적인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차별적 요소가 남아 있고, 이는 법률체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사법부는 상위 직급의 여성비율 확대, 여성의 사법행정 참여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문화 개선 등을 통해 성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 판사는 재판을 진행할 때 성차별적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법의 해석·적용 과정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염두해 두면서 편견이 개입되지 않는지 끊임없이 경계하여야 합니다. 소송관계인들이 성차별적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재판 과정에서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88.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과 후보자의 철학은?

○ 사법부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듣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사회 내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 또는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사회의 인권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후보자는 재판을 담당하면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고,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제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판결한 사례로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00구30925 판결

- 이 사건은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행정청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위 설립신고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고,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서울여성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가 수리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반려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7402 판결

- 이 사건은 약 3,000여 명의 직원교사 등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피고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집단적 동의의 방식'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 이러한 동의 요건은 가능한 한 근로자들이 사용자 측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호 의견교환이나 토론 등 집단적인 논의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는가라는 관점에 그 충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집단적 근로조건의 대등 결정'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나아가 통상의 경우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도가 클수록, 개정되는 내용 자체와 개정 배경 등에 관한 사용자 측의 설명·홍보 또한 그에 비례하여 설득력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불이익하였음에도 사안에서 임금피크제를 수용하거나 감내할 만한 이유를 선뜻 발견할 수 없었고, 사용자가 임금피크

제 도입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한 설명의 내용과 방법, 의견취합을 위해 부여한 시간, 의견취합의 단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89.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현직 법관 위치추적을 시도했는데, 이것은 사법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생각은?

90. 12·3 비상계엄 당시 군, 현직 법관 위치추적 시도 관련해 구체적인 법적 책임 근거는?

(※ 89항 및 90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12·3 비상계엄이 당시 포고령 1호에 따르면, '국회'의 활동을 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는지?

○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계엄법에도 국회 및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는 계엄포고령 제1호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 5·16이 군사반란인지 혁명인지? 그 근거는?

○ 5. 16. 군사정변은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군사력으로 민주적 헌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93. 대법관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그 근거는?

○ 현재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도 대법원의 사건처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그 수는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상고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권리구제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그 개선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4.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은?

○ 현재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고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상고제도에 관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법령 해석 통일 기능 강화와 충실한 권리 구제 기능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 한정된 사법자원을 전제로 위 두 기능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역할의 분리와 전문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에, 상고법원은 일응 검토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각각 담당하는 사건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상고법원으로 인해 국민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상고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권리구제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그 개선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5. 서울대/50대/남성 등으로 이뤄진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이 부족해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후보자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동의하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 대법원이 사회적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법관의 성별, 학력, 지역, 이력 등 인적 특성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인적 특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인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성한 대법관들이 사회적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 여러 인적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대법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명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6. 유신헌법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그 근거는?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12610호)에 의하면 유신헌법에 의해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는 그 발령 근거인 위헌·위법이고, 유신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발령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유신헌법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하는 위헌적인 헌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97.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건국 시기는 언제인지?

○ 대한민국 건국의 기점은 크게 보아, 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로 보는 견해,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1일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① 견해는 국민과 영토, 주권을 모두 갖춰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은 것을 근거로 하고, ② 견해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며, 각 견해에 따라 현대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대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한 후 일제를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다가 1919년에 이르러 3. 1 운동을 거치면서 조선민중의 열망은 이전의 대한제국 내지 조선왕정의 계속이 아니라 공화정의 수립으로 나타나 1919. 4. 11.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이후 이 점에 대한 조선민중의 총의는 더욱 모아지고 굳건히 확립되어 1948. 7. 12. 대한민국헌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체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98.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의 제3자 변제 추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기초로 하는 공탁은 제3자 변제에 관한 문제로, 민법 제469조제1항 단서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과 관련하여 변제의 유효성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부의 공탁신청에 대해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기각되어 현재 항고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법 제도의 한계와 개선되어야 할 점 3가지는?

○ 현재 재판 장기화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판 장기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각종 재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재판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감정제도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적정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항소심 심리모델을 개발하고 판결서 작성 방식을 적정화하여 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는 등 신속한 재판 구현을 위한 각종 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상고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고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권리구제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그 개선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재판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사법정책을 시행하기 위

해서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므로, 충분한 사법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사법부 예산의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법개혁 과제 3가지와 실질적인 실행방안은?

○ 사법개혁의 초점은 법치국가에 있어 신속·공정한 재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첫째, 최근 재판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사건처리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동기부여를 위한 전문법관 제도 확대, 전문법원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효율화가 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심에서부터 당사자의 주장 개진 및 심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폭넓은 증거조사를 실시한다면 신속하고 종국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둘째, 대법원은 최종적 법률심으로서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함께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낼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과다한 사건수로 인하여 상고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상고심 제도의 개편도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셋째, 무엇보다 대법원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

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주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겠습니다. 대법관으로서 급변하는 사회상황과 가치를 반영하는 해석의 기준 및 내지 가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고 이를 실천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1. 후보자는 현재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 사법부의 독립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여론이 함께 인식을 전환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개의 판결 결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더라도 합리적인 비판과 의견을 넘어서는 과도한 비난을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에 대하여, 사법부로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되, 끊임없이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를 성찰하여야 하고, 지난 과거를 반추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것입니다. 또한 법관 스스로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확고한 사명감과 용기를 가지고, 실제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 직무를 수행하고, 외관상으로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등 사법부가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02. 법원의 재판처리 지연 문제 관련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원인과 실질적인 해결책은?

○ 재판 장기화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사건 적체, 당사자의 소송지연이나 증거조사 지연, 관련 형사절차 등의 결과를 보기 위해 대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를 들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법조일원화 시행으로 인하여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다른 법조일원화 국가에 비하여 재판연구원 등 법관 및 재판보조인력의 부족이었습니다. 이에「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원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외에도 법원은 재판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실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제1심 민·가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진술녹취제도(Deposition)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형사전자소송 제도 도입,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전문법원 확대 설치, 조정제도·전문심리위원 제도 활성화 등 재판의 신속성·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고,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감정절차관리제도는 증거조사 지연을 해소하여 신속한 재판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전자소송 도입과 영상재판 제도의 활성화 역시 신속한 기일 지정을

가능하게 하여 재판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각급 법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관 간 의견 공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이 개최한 워크숍 등에서는 장기근무 범위의 확대, 사건처리실적이 우수한 재판부에 대한 적절한 보상, 참여관의 업무 범위 확대, 적절한 사무분담 구성, 그 밖에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의 심리 방법 등이 두루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법원은 재판 장기화 해소를 위해 사법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속한 재판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최기상 위원 서면질의》

1. '의심에도 유통기한이 필요하다', '특수 수사엔 마침표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검찰이 수사 종결을 미뤄 불안정한 피의자 상태로 장기간 묶어두는 등의 '정신적 괴롭힘'에 대한 의견과 이를 견제한 후보자의 판결 사례를 제출(사건번호와 주요 판결 내용 병기)

○ 수사의 장기화는 그 대상자에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은바, 수사는 그 필요성과 비례성을 기준으로 부당하게 장기화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는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 만약 수사의 부당한 장기화가 진술자의 임의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후보자는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검사 항소에 따른 항소심 변론기일 전 수회 검찰에 소환되어 사실상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항소심 공판기일에 범행을 자백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07노1519 판결)에서, 당시

는 이러한 경우에도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 판례와 실무례였지만, 이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훼손됨으로써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항소심 법정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결국 1심의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2. 사건을 여러 개로 나눠서 순차 기소하는 등의 일명 '쪼개기 기소'에 대항하여 선고했던 단호한 판결의 사례를 제출(사건번호와 주요 판결 내용 병기)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 전임 도지사 수사로 13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K-압수수색'이라는 비판과 '법원은 영장 자판기'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제출(한겨레 「[아침햇살]법원은 '영장자판기'인가」 박용현, '23. 3. 21. 참조)

○ 2023년 기준 압수·수색영장 전부 발부율은 90.8%이고, 일부 기각률은 약 8%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의 지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중고거래사기 등 범죄에서 계좌 명의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부되는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제외한 일반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발부율은 2013년 89.6%에서 2023년 84.1%로 상당히 감소하였고, 이는 2023년 구속영장의 발부율 79.5%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기업과 개인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전자정보의 형태로 생성·보관되고, 정보의 대량성, 포괄성 등의 성격으로 선별 없는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1년부터 전자정보 압수·수색으로 인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선별압수의 원칙, 참여권 보장 등의 의무를 선언하여 왔고, 이에 따라 실무편람과 실무제요의 편찬, 정책연구용역의 시행 등 실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 반 동안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905명에 이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제출

○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거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제1항). 법원이 위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발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항).

○ 이에 비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은, 공개된 재판정에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들을 조사한 뒤 위 증거로 인하여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을 때 유죄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영장제도와 공판절차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형사절차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고유의 역할 및 층위가 상이합니다.

○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이후에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장과 관련된 수사기관 및 판사의 업무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5.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검사가 판사에게 제출하는 의견서에 추가 수사할 제2, 제3의 혐의를 적어 놓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제출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검사와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피의자·변호인 또한 검사의 청구 사유에 이의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영장청구의 근거가 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우려 등의 구속사유가 있어야 구속영장을 발부하므로, 검찰이 임의로 적은 제2, 3의 혐의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구속의 사유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6. '검찰 개혁의 핵심은 구속 수사 시스템을 혁파하는 데 있다'는 의견과 대안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 제출

○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절차는 수사기관의 역량과 국민의 관심이 지나치게 구속 여부에 집중되어있고, 이로 인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피고인이 본안재판을 받기 전에 여론에 의하여 판단을 받고, 나아가 방어권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실제로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구속제도는 구속·불구속의 양자택일의 선택만 가능하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대부분의 선진국에도 존재하는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을 통해 일정한 조건(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금지, 차량 운행 금지, 마약 등 사용금지 등)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존중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인신구속 및 석방제도의 일관성·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7.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 3심 모두 다 무죄여서 공소장 내용이 허위라고 볼 경우도 있는데, 검사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해당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제출

○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 공소장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을 해당 범죄사실로 기소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유죄판결 선고·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8. '정치의 사법화'에 이은 '사회의 사법화'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사회의 사법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제출

○ '사회의 사법화'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사회의 모든 문제를 '사법적 판단'이라는 도피처인 재판으로 가져가는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 사회적 문제가 사건화되어 법원으로 접수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문제는 사법적 문제와는 그 판단 기준과 작동 원리가 다르므로, 사회적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의 사실관계와 근거를 따져 토론과 숙고과정을 거쳐 자정작용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따른 사법부의 일도양단적 판단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만약 법원에 사건화되어 오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중립적 시각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어느 사건보다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후보자의 판결 사례를 제출(사건번호와 주요 판결 내용 병기)

○ 서울행정법원 2000구30925 판결

- 이 사건은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행정청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위 설립신고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고,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서울여성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가 수리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반려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7402 판결

- 이 사건은 약 3,000여 명의 직원교사 등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피고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집단적 동의의 방식'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 이러한 동의 요건은 가능한 한 근로자들이 사용자 측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호 의견교환이나 토론 등 집단적인 논의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는가라는 관점에 그 충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집단적 근로조건의 대등 결정'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나아가 통상의 경우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도가 클수록, 개정되는 내용 자체와 개정 배경 등에 관한 사용자 측의 설명·홍보 또한 그에 비례하여 설득력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불이익하였음에도 사안에서 임금피크제를 수용하거나 감내할 만한 이유를 선뜻 발견할 수 없었고,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한 설명의 내용과 방법, 의견취합을 위해 부여한 시간, 의견취합의 단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가합1906 판결

- 근로자가 건강검진결과를 개인적으로 통보받고 추가적인 검사나 진료 등을 받지 않아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건강

진단기관은 결과를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도 통보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결과를 통보받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하루하루의 노동 속에 매몰되어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는 근로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의 요청"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10. 우리나라는 '시기상조의 나라'라는 자조가 있음.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되 실행은 나중으로 미루자는 뜻임. 소수자·약자의 권리를 위하여 사회 대다수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소수자와 약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가 첫 번째 판결을 한 사례 제출(사건번호와 주요 판결 내용 병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1803 판결

- 이 사건은 대학교 소속 연구원이 해당 대학교를 인수해 운영하는 특정 대기업과 그 소유주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데 대하여, 대학교가 이를 이유로 연구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 이 사건에서 대학과 같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의 민주적 운영의 필요성과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 등을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표현된 비판적 내용들이 대학 내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원이 언급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연구원의 인터뷰가 언론매체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편집자 등의 주관적인 평가와 판단이 개입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해고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5213 판결

- 이 사건은 피고 은행의 소속 직원인 원고가 내부 비리를 제보한 데 대하여, 피고가 뒤늦게 제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직한 사안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와 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 이 사건에서 회사의 기강을 확립할 의무가 있는 경영진 등에 내부 비리를 제보하는 경우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 회사로서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당사자의 제보가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인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명백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부비리의 제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회사의 자정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내부고발이 허황되거나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설명해 주기는커녕, 원고의 제보 내용을 검증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원고를 해직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고발을 통해 조직 내의 부정행위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편견 등에 취약한 지위에 처할 수 있는 내부고

발자를 보호하고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6698 판결

- 이 사건은 원고가 정신병원에 보호입원될 당시 보호의무자 1인(배우자)이 다른 보호의무자 1인(자녀)의 서명을 대신하여 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보호입원 요건으로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갖춘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강제입원에 있어 동의자의 수를 1인에서 2인으로 늘리는 등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는 취지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보호의무자 1인이 다른 보호의무자 1인의 서명까지 대신 기재하여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서명이 대신 기재된 다른 보호의무자 1인이 입원 이후에 입원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원 당시의 동의 의사를 추단할 수 없으므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보호의무자와 정신병원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알고 있는지와 그 차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질서와 관련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한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과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그때의 다수의 의사에 따른 국민자결과 자유 및 평등에 기초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를 말한다. 이 질서의 기본원리로는 최소한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법에 구체화된 기본적 인권, 무엇보다 생명과 그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인격권의 존중, 국민주권, 권력의 분립, 정부의 책임성, 행정의 합법성,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의 원리와 헌법적인 야당의 구성권과 행동권을 가진 모든 정당의 기회균등"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과 비교하여 보면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언급하지 아니한 반면에, 국민주권을 적시하고 있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체로 상통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 중 어떤 견해가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제출

○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 당사자주의, 공개재판주의 등 여러 형사절차상의 원칙들이 도출됩니다. 다만, 우리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어느 한 기본권을 절대적인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지 않고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화되어야 함도 함께 천명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존중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굳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전자가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볼 수 있습니다.

13.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 지식보다는 '시대를 앞서 인권의 가치를 식별하는 밝은 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후보자의 실제 사례를 제출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6698 판결

- 이 사건은 원고가 정신병원에 보호입원될 당시 보호의무자 1인(배우자)이 다른 보호의무자 1인(자녀)의 서명을 대신하여 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보호입원 요건으로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갖춘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강제입원에 있어 동의자의 수를 1인에서 2인으로 늘리는 등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는 취지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보호의무자 1인이 다른 보호의무자 1인의 서명까지 대신 기재하여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서명이 대신 기재된 다른 보호의무자 1인이 입원 이후에 입원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원 당시의 동의 의사를 추단할 수 없으므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보호의무자와 정신병원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4.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근본적 차이점은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의 체제를 찬양할 자유가 있으나 스파르타에는 스파르타 이외의 체제를 찬양할 자유가 없다는 점이다"라는 데모스테네스의 말과 "남한과 북한의 근본적 차이점은 북한에서는 북한 이외의 체제를 찬양할 자유가 없다는 점이다"(출처: 정당한 위반, 박용현, 2011)라는 의견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관점에 비추어 후보자의 견해를 제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고,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나 횡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도 필수적입니다.

○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견해나 사상, 가치관 등이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펼쳐질 때 비로소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질서의 기초가 마련되고, 이를 통한 권력 비판은 권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15. "공적인 이슈에 대한 토론은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강력해야 하며, 널리 열려 있어야 한다는 원칙, 그러자면 정부를 향해 격렬하고 신랄하고 때론 불쾌할 정도로 날선 공격이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 온 나라가 충실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절대적 주권이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를 창조했으며, 우리의 정부 형태는 권력의 집중 혹은 권력 그 자체에 대한 불신에 기반해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미국 연방대법원 뉴욕타임스 vs 설리번 판결)"라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제출

○ 언론을 통해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견해나 사상, 가치관 등이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펼쳐질 때 비로소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질서의 기초가 마련되고, 이를 통한 권력 비판은 권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 정치질서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므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는 가급적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언론 및 출판의 자유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합니다(97도985). 따라서 의도적인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형해화시킬 수 있으므로, 보도의 내용, 처벌의 필요성, 침해된 공익 또는 타인의 기본권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 본인과 배우자의 최근 10년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내역

16-1. 지급기관, 지급사유, 금액

○ 민사소송법주석서, 형법주석서 집필에 따른 원고료 각각 2~300만 원 정도가 있고, 서초동 삼풍아파트 9동 1103호의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는 대신 임차인으로부터 월 30만 원을 월세로 수년간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16-2. 근로소득 이외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불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제출

○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16-3. 돈이 돈을 먹는 '야바위 자본주의'라는 표현에 대한 의견 제출

○ 이른바 '야바위 자본주의'라는 표현은 자본주의가 통상 자본가들의 의도에 따라 그들이 조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자본의 편중이 불평등을 양산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른바 '금수저'라는 표현도 유사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 공감이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 다만 사법부는 헌법보장과 기본권 보장, 소수자 보호 및 사회적 약자 보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를 위해 사법부의 구성원은 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포용력과 공감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사회 내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 또는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사회의 인권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 최근 10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 등의 연간 기부 및 봉사활동 내역 제출

17-1. 기부자별 기부처, 기부액, 기부 사유

17-2. 후보자 및 배우자·직계비속의 봉사활동 내역

(※ 17-1항 및 17-2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18년경까지 유니세프에 정기후원 및 특별후원을 하였고, 이후 학업의 계속이 곤란한 학생을 추천받아 개인적으로 대학등록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8.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증여 내역 제출-전담1

18-1. 비상장 주식, 예금 등

○ 장남(마영호, 1996년생): 후보자의 장남에 대한 증여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장남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은, 2019년 및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급여(커피빈) 합계 약 6,700만 원, 2024년 11월 급여(대한항공) 약 350만 원, 2019. 5.부터 2020. 12.까지 군복무 당시의 군급여 적금 약 500만 원 등을 저축한 것입니다.

○ 차남(마지호, 2009년생): 친가, 외가 조부모가 차남의 돌 무렵 너무 어려 걱정이고 앞으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대학교 등록금 용도로 미리 수백만 원 정도씩을 주신 것을 합치니 약 1,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10년 이상 투자 상품에 넣어 수익이 덧붙여졌습니다. 여기다가 부모가 차남 이름으로 들어준 주택청약적금 등을 합쳐 현재 합계 2,600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 법관 이전 서울대 학부 재학 당시 등 신군부 정권(전두환 정부)의 독재, 탄압 등에 대항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한 사례를 제출

○ 1988년 3월 입학으로 시기상 해당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0.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 대통령실의 누구로부터 후보자 검증 동의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만나서 듣거나 전화를 주고받았는지 여부 제출

○ 대통령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 대통령실의 누구로부터 후보자 검증 동의에 관하여 직접 만나서 듣거나 전화를 주고받지도 않았습니다.

○ 참고로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 내정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제청 공식 발표 직전에 대법원장으로부터 전화로 처음 들었습니다.

21.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특히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집약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가 큼. 이에 대한 의견은?

○ 현대사회는 대부분의 정보가 전자정보의 형태로 생성·보관되고, 저장매체의 본질적 특성상 해당 매체에 범죄에 관련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선별 없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압수의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취지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유관정보 선별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압수된 정보의 폐기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외부적 통제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도 적절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 압수수색 영장청구 대비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 것에 대해(2022년도 기준 91%)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은?

○ 2023년 기준 압수·수색영장 전부 발부율은 90.8%이고, 일부 기각률은 약 8%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의 지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중고거래사기 등 범죄에서 계좌 명의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부되는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제외한 일반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발부율은 2013년 89.6%에서 2023년 84.1%로 상당히 감소하였고, 이는 2023년 구속영장의 발부율 79.5%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기업과 개인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전자정보의 형태로 생성·보관되고, 정보의 대량성, 포괄성 등의 성격으로 선별 없는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1년부터 전자정보 압수·수색으로 인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선별압수의 원칙, 참여권 보장 등의 의무를 선언하여 왔고, 이에 따라 실무편람과 실무제요의 편찬, 정책연구용역의 시행 등 실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3. 향후 부적정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수사를 기반으로 한 하급심 판결을 과감하게 파기할 용의가 있는지?

○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제1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제2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제3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제4호)에는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따라 상고이유가 되고, 이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사료됩니다.

24. 대법원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2월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5. 위 '형사소송규칙 개정안'내용 중 압수수색 전 법관이 수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면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대한 의견은?

(※ 24항 및 25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오늘날 각종 정보와 의사소통 자료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성 및 유통되고, 공적인 정보는 물론 극히 내밀한 사적인 정보까지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전자기기에 대량으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칫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임의적 대면심사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관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대상의 특정 등 영장발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관에게 추가적인 심리수단을 부여하고 압수·수색의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대법원 규칙보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6. 압수수색된 정보가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음. 예를 들어 휴대전화가 압수수색된 경우 어느 선까지 정보를 열람했으며, 이후 정보가 폐기되었는지 등을 알기가 어려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은지?

○ 오늘날 각종 정보와 의사소통 자료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성 및 유통되고, 공적인 정보는 물론 극히 내밀한 사적인 정보까지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전자기기에 대량으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칫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선별압수의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취지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유관정보 선별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압수된 정보의 폐기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외부적 통제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도 적절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7.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내용 중 압수수색영장 청구시 '검색어, 검색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명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의견은?

○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는 그 특성상 압수대상 정보와 피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과도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검색어를 제한할 경우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영장집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면 실체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 검색어나 검색대상기간을 특정하여 기재할 경우, 법원은 사안의 실체, 압수·수색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피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들이 과도하게 압수·수색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검색어 등을 제한할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우려, 향후 제도 운용의 모습 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8. 다른 재판에 비해 노동재판의 하급심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은?

○ 노동 재판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재판의 경우 권리·의무가 얽힌 복잡한 쟁점 사건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사건과 같이 다수당사자 사건이 많아서 쟁점의 정리나 증거조사, 판결서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노동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관과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법원으로서 노동법원을 설립하거나 노동 분야에 전문법관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무사를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하여 노동사건에서 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노동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9.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적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 내, 사법 외에서 어떤 노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 우리나라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처벌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아직 제도적으로 구현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내 회복적·치료적 사법 실시 사례에 대한 분석 및 현재 활용 가능한 사법제도 연구, 회복적·치료적 사법제도의 구체적 도입을 위한 방안 검토,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고,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재범률을 감소시키고 사회 통합의 정도를 제고하는 등 회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 현 제도는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후보자를 지명하여, '견제와 균형'의 헌법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재 대법관, 헌법재판관(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의 임명 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과 같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각각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국가의 통치구조에 관한 헌법상·법률상 기관의 구성과 권한은 국민적 합의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대법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모습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사법부의 목적과 재판의 독립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될 수 없는 헌법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면밀히 살피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1.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임명, 지명하도록 한 헌재재판관 구성방식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균등하게 관여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으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국가의 통치구조에 관한 헌법상·법률상 기관의 구성과 권한은 국민적 합의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대법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모습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현재 대법원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 대법원은 과중한 사건 부담으로 인하여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해결책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관련하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상당하므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세한 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부득이하게 심리불속행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심리불속행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상고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권리구제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그 개선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3. 과거부터 막말 판사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판사의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막말 등 바람직하지 않은 법정언행은 법관 개인의 품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 법원은 법관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법정언행 컨설팅이나 교육, 설문조사 등의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법정에 참여한 당사자, 법정녹음 확인 등 다양한 조사를 거쳐 부적절한 법정언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엄중히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도 법관 스스로가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위를 개인이 누리는 권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재판 과정이 당사자나 피해자 등 소송 관계인에게 재판의 결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4. 판사 재직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건입니까?

○ 서울행정법원의 합의부 주심판사, 대법원의 보고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회 의견 개진하였고, 그 결과 몇 건 정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져 위헌결정이 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 그 외에도 항상 헌법 규정과 정신을 명심하면서 법률의 해석 적용에서 구현되도록 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8060 등 판결: 5.16 군사정변 후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하여 "특별법의 위헌성 판단을 현저히 해태하고, 재판관들에게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가합1906 판결: 근로자가 건강검진결과를 개인적으로 통보받고 추가적인 검사나 진료 등을 받지 않아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건강진단기관은 결과를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도 통보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결과를 통보받기 위한 적극

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하루하루의 노동 속에 매몰되어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는 근로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의 요청"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7노1519 판결: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검사 항소에 따른 항소심 변론기일 전 수회 검찰에 소환되어 사실상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항소심 공판기일에 범행을 자백한 사건에서, 당시는 이러한 경우에도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 판례와 실무례였지만, 이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훼손됨으로써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항소심 법정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결국 1심의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35. 현재 우리 사회에 산적해있는 여러 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경제적 빈곤층, 이주민, 노인, 여성, 아동, 성소수자 등 여러 인권 현안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권 현안을 해결해야 하지만, 그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우리 사회의 노력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편의제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부도 각종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36. 여성혐오, 성차별 해소를 위한 어떤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과거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우리의 사회 구조가 상당히 오랜 기간 남성 중심적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많은 차별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의식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성차별 해소를 위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역시 사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사법부 조직 내에 있을 수 있는 차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7. 성소수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므로 타인에 대한 강요나 위해가 수반되지 않는 한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소수자 역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다름에 대하여 갈등과 혐오를 표출하기보다는 이해와 포용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성소수자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넘어 어떠한 법률적・제도적 보장을 할 것인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견해와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 및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후보자가 만약 대법관이 된다면 재판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8.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9.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임에도 여전히 사형을 구형하는 검찰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38항 및 39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사형제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형에 관해서는 항상 오판을 바로잡을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나아가 사형제도가 악용된 불행한 역사적 경험도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우리 헌법(제10조)과 법률은 사형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다수 인명살상 테러,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하여 여전히 사형의 형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법 감정도 간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형제의 폐지는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0.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에 게시되는 판결문은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 가량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판결문에 접근하여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종합법률정보'는 주로 선례적 가치를 고려하여 선정된 판결을 제공하는 곳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개 대상인 판결서의 일반 공개를 위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든지 민사, 행정, 특허 사건의 확정 또는 미확정 판결서를, 형사 사건의 확정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대상 판결서의 거의 100%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고, 임의어로 검색하여 원하는 판결을 찾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열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형사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문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결서 공개범위를 더 확대할 것인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1. 최근 들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유죄 선고되는 성범죄 사건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및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관련 사건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제시된 이래 그와 관련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이 개별 법관의 주관적 감수성에 의존하여 성폭력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 대법원이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은 국내외에서 오래 전부터 법과 제도를 만들거나 해석·적용할 때 갖추어야 하는 덕목으로 논의되어 왔던 "성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심증에 의한 법관의 증거 판단, 특히 증언의 신빙성 판단은 경험칙과 논리법칙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위 대법원 판결들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험칙을 적용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는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피해자의 일부 언행이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아 그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같은 상황에서도 성별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성인지적 관점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험칙의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취지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한편, 최근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은, 지적장애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객관적 정황이나 다른 경험칙 등에 반함에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서, 기존 성인지 감수성 관련 판례에 배치되는 취지는 아니며 무죄추정의 원칙상 당연한 설시라고 생각됩니다. 법관으로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춤은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균형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2. 성범죄 방지를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최초로 설정된 이후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수정·보완되어 왔고, 성범죄 사건의 양형은 대부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범죄의 양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일반예방·특별예방 효과를 내기에 충분한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하나, 단순히 엄벌만으로는 범죄를 억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많은 실증적 조사에서 밝혀진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따라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만연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범죄 예방 체계 확립, 범죄자 교화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생각합니다.

43.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공소시효 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가벌성 감소를 고려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고, 이러한 주장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2. 12. 18.)으로 강간살인죄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형사소송법 개정(2015. 7. 31.)으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 또한 배제되는 등 공소시효의 예외를 확대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 공소시효 배제 대상 범죄의 확대는 구체적인 범죄 유형,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와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44. 「경범죄 처벌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도로교통법」 등은 경미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범죄자로 규율하고 있어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경미범죄는 '범죄'라기보다는 '질서위반'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과감하게 비범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산업화와 도시화에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형법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경미범죄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적 제재는 범죄자에게 법적·윤리적 비난을 가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므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편의도모와 형사사법 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질서위반행위, 교통범죄 등 일정 분야의 경미범죄는 비범죄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법조계, 학계,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4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활발히 기소가 되고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모욕죄의 경우에는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는 사례가 많은 등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먼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다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치적·사회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대법원은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헌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여부는 국회에서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 보장의 필요성,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의 위축 등 부작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입법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다음으로 모욕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모욕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모욕죄의 보호법익,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이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 등 전원재판부 결정, 2021. 9. 30. 선고 2021헌가2 등 전원재판부 결정).

○ 저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결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위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모욕죄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표현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6. 검사장, 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퇴직자가 대형로펌 등에 자문, 고문 변호사로서 개업하는 행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믿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이러한 인식이 사법부의 신뢰에 큰 손상을 가져오므로, 국민들의 불신이 사라질 때까지 전관예우 의혹 해소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할 때 고위 공직 퇴임 법관이 퇴임 후 바로 대형로펌에 들어가거나 변호사 개업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사법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를 무제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신뢰 증진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7.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전관예우를 빌미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재판절차 내에서 전관예우 등의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수임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전관예우를 기대할만한 요소를 차단하는 등 사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형사소송법,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각급 법원의 연고관계 재배당 기준 등에서 정한 신고·회피, 제척, 재배당 등의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관이 평생 법관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법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시니어판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관 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전관예우의 의혹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8. 대법원의 구성이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의 고위 법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과 재야인사 등은 배제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법원이 사회적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법관의 성별, 학력, 지역, 이력 등 인적 특성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인적 특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인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성한 대법관들이 사회적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 여러 인적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대법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명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9.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로 인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 향후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될 경우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대다수가 공감하는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0.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이 사건에 관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만 부여하고(제12조 제1항),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 제5항).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배심원 평결에 원칙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경우 헌법 위반에 관한 논란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법 개정 논의에 앞서 충분한 헌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도입되어야 할 제도 중 가장 합리적인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현재 대법원은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상고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권리구제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그 개선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2.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도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전략적 봉쇄소송은 법적 분쟁의 해결보다는 공적 관심사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항에 대하여 일반 대중 또는 특정 집단의 반대 등을 봉쇄 또는 위축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는 상대적으로 소송 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의견 제시나 권리 주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사법부의 불필요한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실제 가압류 신청이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전략적 봉쇄소송의 한 방법으로 과도한 청구금액의 가압류신청이 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3. 낙태죄 완전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낙태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서로 충돌하는 사안으로, 어느 하나의 기본권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답을 내리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에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결정가능기간'과 '결정가능기간 중 낙태를 허용하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과 같은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결정취지에 따라 하루빨리 대체입법이 이루어져 낙태에 대한 처벌공백이 해소되고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4.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검사나 연임발령을 받지 못한 판사,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검사가 퇴직하여도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 등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차장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하여 퇴직 후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직무상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78)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해당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변호사 등록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은 평등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 등록신청인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서면질의】

55.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10년마다 형식적인 연임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법관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79)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법관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임용 및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법관인사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에 따라 현재 11명의 위원 중 법관 3명과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을 21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10명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되, 그 반수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었는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판사의 임명과 연임 등 법관 인사에 관하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원의 2/3 이상이 외부인사로 구성

되어 있어 국민의 시각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법관의 인사가 외부의 의견에 과도한 영향을 받을 경우 사법권의 독립 및 중립성 침해 우려도 있는 만큼, 국민의 의견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6. 현행 「법원조직법」은 연임 부적합 사유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와 근무성적 불량, 품위유지 곤란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관의 연임 여부를 법원 내부에서 이루어진 평정에만 의존한 결과, 잘못된 재판을 한 법관, 재판 과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법관이나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법관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98)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고, 법관 평가의 기초자료로서 법원 외부의 시각까지도 다양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 다만, 변호사의 법관 평가는 재판 결과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의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충분한 연구·검토와 법원 내·외부의 공감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 평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변호사협회를 비롯하여 법원 내·외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후보자 역시 관심을 갖고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57. 노란봉투법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22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투표 부결로 인하여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재투표 부결로 폐기된 법률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개별 노동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가담 정도와 지위를 따져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은?

○ 해당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노동조합원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기존에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제한 비율을 다르게 산정한 사례가 있었고, 해당 판결 역시 이러한 사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9. 하위직 법원공무원들의 승진 적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하위직 법원공무원 승진 적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 해소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하면서도, 타 기관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에 비하여 승진이 늦다는 점에 대하여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승진적체는 상위직급의 결원이 대폭 증가하여야 해소가 가능하나, 그 주요 실마리에 해당하는 퇴직인원의 증가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문제입니다.

○ 다만, 새로운 사법제도의 도입, 각급 법원의 신설 등을 통한 법원공무원 증원 및 상위직급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생각입니다.

60. 최근 검찰이 수사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사례가 다수 보도되고 있음. 이처럼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법원의 영장 발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과 피의자·피고인 사이의 의사교환의 비밀 또한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범죄를 목적으로 변호사와 의사를 교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까지 의뢰인·변호인 사이 의사교환의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법원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압수대상물을 필요최소한의 한도로 제한하고, 집행과정에서 무관정보의 철저한 선별이 가능하도록 집행방법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1. 공정하고 신중한 영장 발부를 위해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

○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 모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이 발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비밀유지권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해외 주요 국가들 전반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 그러나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비밀유지권의 인정 범위 및 예외, 실제 압수수색절차에서의 비밀유지권 보장 방법, 관련 재판절차 등 그 구체적인 모습은 각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실제 압수수색 절차에서 첨예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권리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비밀유지권 인정범위와 실현 방식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재판절차 및 소송법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비밀유지권 관련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2.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

○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 모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이 발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비밀유지권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해외 주요 국가들 전반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 그러나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비밀유지권의 인정 범위 및 예외, 실제 압수수색절차에서의 비밀유지권 보장 방법, 관련 재판절차 등 그 구체적인 모습은 각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실제 압수수색 절차에서 첨예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권리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비밀유지권 인정범위와 실현 방식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재판절차 및 소송법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비밀유지권 관련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3. 적극적인 추진력과 소통능력을 발휘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낸 구체적 사례를 설명바랍니다.

○ 2019. 2. - 2021. 2.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재판연구관 사이에서 업무분장 등과 관련된 갈등이 심화되자, 문제제기 대표자들을 면담하고 총괄부장회의, 전체 연구관회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 전체 연구관이 양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그 방안에 대한 보충의견까지 들어 최종 해결책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한 최종 해결책을 문제제기 대표자들 모두에게 개별 설명과정을 거친 후 전체 안내를 하는 등 절차적 만족감도 주었습니다.

64. 재판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2014년 조사 당시 접수부터 선고까지 평균 252.3일이 걸리던 민사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은 2021년 364.1일로 7년 만에 110일 넘게 늘었음. 이에 대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 재판 장기화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상황 당시 적체된 사건의 해결, 당사자의 소송지연이나 증거조사 지연, 관련 형사절차 등의 결과를 보기 위해 대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를 들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법조일원화 시행으로 인하여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다른 법조일원화 국가에 비하여 재판연구원 등 법관 및 재판보조인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법관 증원을 위한 오랜 노력 끝에「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원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외에도 법원은 재판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실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제1심 민·가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진술녹취제도(Deposition)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형사전자소송 제도 도입,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전문법원 확대 설치, 조정제도·전문심리위원 제도 활성화 등 재판의 신속성·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감정절차관리

제도는 증거조사 지연을 해소하여 신속한 재판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전자소송 도입과 영상재판 제도의 활성화 역시 신속한 기일 지정을 가능하게 하여 재판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각급 법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관 간 의견 공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이 개최한 워크숍 등에서는 장기근무 범위의 확대, 사건처리실적이 우수한 재판부에 대한 적절한 보상, 참여관의 업무 범위 확대, 적절한 사무분담 구성, 그 밖에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의 심리 방법 등이 두루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법원은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사법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속한 재판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서면질의】

65. 현행법상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도주우려, 주거부정' 외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위해 우려(보복범죄 가능성)'도 구속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 구속의 목적은 “수사와 재판 출석 및 형 집행의 담보”이므로 ‘피해자 위해 우려’는 이러한 구속의 목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독립된 구속사유로 할 경우 ‘예방적 구금’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현행 법제 하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 즉,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09조, 제70조 제2항),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는 구속사유 중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안적 입법으로 구속영장단계에서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피해자 위해 우려’를 독립된 구속사유로 추가하지 않더라도 인신구속제도의 기본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도 함께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6. 폐지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다시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는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영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부추기고 승진에서 제외된 법관들이 대거 중도사직하거나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문제로 비판받아 왔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2020. 3. 24. 법원조직법 제27조 등을 개정함으로써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법원의 관료화가 완화되고 대등한 경력을 갖춘 법관들에 의한 실질적 합의부가 구성되어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한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방법원장 보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 그 일환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2019년에 도입되어 일련의 시범실시 과정을 거친 뒤 2023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법원장 보임에 법관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인기투표로 변질되어 법원장이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해 재판업무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유인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이에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와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절차를 최근 마련하였고, 새로운 법원장 보임절차의 핵심은 법원장 보임에 관하여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원장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법원장 보임 인사의 객관성과 적격성을 제고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법관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은 없는지 면밀한 분석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 역시 관심을 갖고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67. 법원의 관료화를 해소하고 법관의 독립성, 재판의 독립성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가 법원의 관료화 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법조계 전체에서 기수, 연령 등에 따른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 내의 문화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 이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사법행정과정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관이 사법부 내부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제도, 법관 인사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8.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속을 위해서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것 등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음. 하지만, 영장청구 대비 법원의 발부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은?

○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큰 문제 중 하나는 국민의 관심과 수사기관의 역량이 지나치게 구속 여부에 집중되어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본안재판을 받기도 전에 여론에 의한 유죄 추정을 받고, 그로 인하여 방어권이 심각하게 제약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며, 석방을 위하여 항쟁을 포기하는 등 실체진실 왜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형사사법의 중심이 영장단계에 집중되어 정작 가장 중요한 본안재판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초래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도망, 증거인멸 및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속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의 도입은 이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실제로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구속

제도는 구속·불구속의 양자택일의 선택만 가능하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대부분의 선진국에도 존재하는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을 통해 일정한 조건(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금지, 차량 운행 금지, 마약 등 사용금지 등)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존중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인신구속 및 석방제도의 일관성·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69. 후보자는 판사 재직시절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적이 있는지?

○ 20년 전 영장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헌법상 국민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수호는 항상 명심하였습니다.

○ 오래되었지만 가끔씩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 티켓다방의 여종업원이 선불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었습니다. 편취 당한 티켓다방의 업주를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생각되지 않았고, 수사경찰관이 관할구역을 벗어나 먼 지방까지 가서 여종업원을 체포하여 온 점도 석연치 않아 이러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여종업원에 대한 수사는 유야무야되었고, 수사경찰관과 업주는 뇌물사건으로 비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 후보자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 대비 발부율"은?

○ 요청하신 통계자료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법관으로 재직하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기소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72. 후보자의 법관 재직 동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기소한 사건에서 이를 과감히 공소기각 한 적이 있는지?

○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73.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 무기평등의 원칙이 실현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 핵심적인 부분은 '양 당사자가 대등해야 한다는 점이고 이를 위해서는 검사의 객관의무가 중요하며, 법원의 헌법원칙에 맞는 판단이 필요함. 이에 대한 의견은?

○ 대법원은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근거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설시하였고, 후보자도 위와 같은 설시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은 통상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역량보다 현저히 약하기 마련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검사가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법원 역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헌법원칙에 맞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74.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보는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대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2024. 12. 3.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을 지적하고 있고,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법원행정처장도 위헌적 군통수권행사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다만,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 보는지?

○ 형법 제87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와 폭동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기관인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사건화가 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법원의 서류를 송달받지 않아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수차례 의도적인 송달 회피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지?

○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법원의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부로서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적절히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정적인 사안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천하람 위원 서면질의》

1. 후보자를 항간에서 보수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 스스로 정치적 성향을 규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 법치주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법적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보호, 소수자보호 등 진보적 가치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일보한 판결을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후보자는 윤미향 전 의원의 항소심을 맡아 1심의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것이 정치적 판결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후보자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비슷한 시기에 내려진 판결들에 대하여 진영별로 정반대의 비난 의견이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2노2824 판결: 2023. 8. 18. 피고인 김관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전 국방부 장관)에게 정치관여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20도15105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03단 단장의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이후 피고인의 상고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3노719 판결: 2023. 9. 20. 피고인 윤미향 국회의원에게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업무상 횡령범죄에 있어 횡령금액으로 인정된 부분이 늘어나고,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후보자는 2015년 현대차노조가 제기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이후 현대차노조는 총체적 불법 정치적 거래가 의심되는 사법농단 판결이라고 주장했음. 후보자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말씀하시는 사건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처리하였던 사건 중 현대자동차서비스, 현대정공,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및 상여금 세칙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8519 판결)입니다.

○ 후보자는 위 사건에서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일정한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였을 뿐, 어떠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4. 후보자는 2014년 "혁명재판소 판결을 한 재판관들은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특별법의 위헌성 판단을 현저히 해태하고, 재판관들에게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야 한다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2013가합538060 판결문에서 밝혔는데, 이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현재도 같은 입장인지?

○ 말씀하시는 사건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시 처리하였던 사건 중 5.16. 군사정변 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체포·구금되었던 망인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8060 판결)입니다.

○ 판례(대법원 99다24218 판결 등)에 의하면, 재판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에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후보자는 위 법리를 적용하여 5.16 군사정변 후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이 위헌적 요소(3년 6개월을 소급하여 처벌)가 있는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

하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하여 "특별법의 위헌성 판단을 현저히 해태하고, 재판관들에게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명시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5. 후보자는 5.16 군사정변이 내란이라고 생각하는지?

○ 말씀하신 5.16 사태는 군사정변, 즉 쿠데타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인 것으로 알고 있고, 대법원도 “1961. 5. 16. 쿠데타”라고 명명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참조).

6. 후보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에 동의하는지?

○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지라도, 비상계엄의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론적으로는 설령 성공한 군사정변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후보자는 국민의 90%가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존엄사 합법화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불치의 질병을 알고 있는 환자가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존엄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09년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에서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선고하여 존엄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견해가 높았고, 이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법을 시행함에 있어 김 할머니 사건 대법원 판결이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을 연명치료 중단으로 정의하고 소극적인 안락사나 존엄사 등의 용어를 쓰지 않음으로써 중단의 대상이 단순한 연명임을 부각시킨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중점을 두고 있는 존엄사와 달리,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안락사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적으로 생의 단절을 야기하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존엄사 허용 여부는 단순히 법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과학적, 종교적, 철학적 문제가 다양하게 얽혀있으므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 거쳐 그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또는 종신형 등 대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사형제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형에 관해서는 항상 오판을 바로잡을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나아가 사형제도가 악용된 불행한 역사적 경험도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다수 인명살상 테러,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하여 여전히 사형의 형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법 감정도 간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형제의 폐지는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 후보자는 검수완박 등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원활한 재판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대법관 후보자로서 행정부 내부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랜 기간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입법되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추후에도 위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관행적으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근직이 됨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가 소홀해 진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상근 직으로 겸임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통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후 위원들의 호선을 거쳐 위원장 직을 맡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온 것은, 대법관 직의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이고 선거관리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며 무엇보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또는 구성 방식을 정할 때, 선거관리 업무의 원활하고 충실한 수행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와 투표에 관한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11.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임하고 이로 인해 시·도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직이 됨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가 소홀해진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관례적으로 법관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상근 직으로 겸임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통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법관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후 위원들의 호선을 거쳐 위원장 직을 맡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온 것은, 법관직의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이고 선거관리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며 무엇보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또는 구성 방식을 정할 때, 선거관리 업무의 원활하고 충실한 수행이라는 측면과 함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와 투표에 관한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12.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부정선거 주장 관련 소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상근 직으로 겸임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대법관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사건 등이 배당되지 않고(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7조 제1항 제6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관들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 등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관은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3. 최근 발의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02, 대표발의 김민전 국회의원)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10, 대표발의 김민전 국회의원)은 대법관 및 법관이 중앙선관위/시·도선관위의 위원직 등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입법안인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나, 개정법률안과 같이 법관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각급선거관리위회 위원장의 상근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 직으로 하게 되면 선거관리의 책임성이나 전문성,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와 투표에 관한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정함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동안 대법관 또는 법관이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호선을 거쳐 위원장 직을 맡는 관행이 형성되어 온 것도, 대법관 또는 법관 직위의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행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이고 선거관리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며 무엇보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겸직 금지 등과 같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출 또는 구성 방식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거관리 업무의 원활하고 충실한 수행이라는 측면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 2020. 4. 15 총선 관련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15. 2022. 3. 9.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16. 2024. 4. 10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14항부터 16항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언론을 통해 일각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대하여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선거들과 관련하여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직접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형법 제87조 소정의 내란의 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에 "폭동"이 특정 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 '시간(duration)'의 요건이 존재한다고 후보자는 생각하는지?

○ 대법원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판례는 폭동에 관하여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성요건에 폭동의 지속 시간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이론적으로는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폭행·협박행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간적인 요소도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8. 형법 제87조 소정의 내란의 죄의 기타 구성요건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폭동이 "2시간" 동안 발생하였다고 하여 내란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성요건에 폭동의 지속 시간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이론적으로는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폭행·협박행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간적인 요소도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향후 재판 사항이 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 제27조에 따라 동일하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특정 유명 정계, 재계 공인 등의 사건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공소제기일로부터 확정판결시까지의 기간이 독보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안에 따라 재판에 필요한 시간은 다를 수 있고, 법원이 특정 유명 정계, 재계 공인 등의 사건이라고 해서 일반인의 사건보다 재판을 일부러 지연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헌법 제27조에 따라 국민들은 동일하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모든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 소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적인 재판지연 전략에 대해 법원이 취하여야 할 대책 및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개선방향이 있다면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림.

○ 최근 기피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판장 고발 등을 통한 고의적인 재판지연 전략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행사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나, 재판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송관계인이 절차적 권리 행사를 명목으로 절차 지연을 도모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원으로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결정으로 기각(간이기각)할 수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1. 특정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의 경우 기소된 시점부터 선고까지 799일이 소요되는 등 평균 처리 기간인 120일에 비해 6.7배나 길게 소요된 상황인바,

- 이는 단식 투쟁을 통한 재판 연기, 변호인 선임 지연, 재판부 기피 신청 남발, 공판준비기일 반복 요청, 소송 서류 수령 거부 등 피고인의 의도적 재판 지연의 결과라는 지적이 다수인 상황
- 후보자의 27년 간의 법관 생활 중 이러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는지?

○ 사건의 처리기간은 사안의 특성, 쟁점의 난이도와 복잡성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처리기간의 장·단만으로 일률적으로 의도적인 재판지연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2. 소송 당사자의 고의적 재판 지연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피고의 적극적 방어권 행사라 보는지, 아니면 공익을 침해한다고 보는지

○ 소송 당사자의 재판상 소송행위가 고의적인 재판 지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고의적 소송 지연에 해당한다면 이는 당연히 공익을 해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근 잦은 기피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판장 고발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행사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나, 적극적 방어원의 행사를 넘어서 재판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송관계인이 절차적 권리 행사를 명목으로 절차 지연을 도모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원으로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 일반적으로 재판은 소송 비용의 증가 등의 이유로 신속히 결론 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유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 일반론으로 일부 재판당사자들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재판 결과에 따른 형 집행이나 자격상실 등을 최대한 미루기 위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특정 정치인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소송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사유는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후보자가 볼 때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에도 영향을 주어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관련하여,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지에 대하여는 헌법학자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교과서 중에서는 불소추특권이 재직 중 '기소'를 당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취지로 서술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는 향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재판사항에 해당하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으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대통령 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상실됩니다.

○ 다만,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당연퇴직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공무원법에도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제33조), 당연퇴직(제69조)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3조 제2항).

26. 영국과 호주는 소송법, 절차법 등에 의해, 캐나다는 대법원이 선언한 조던 원칙 등에 의해 재판의 불합리한 지연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신속한 재판 원칙을 천명할 뿐, <절차 관리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부재한 것으로 보이는 바, 국내 사법 체계에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재판 지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지?

○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점에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 그러나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결론을 찾아 판결을 선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구체적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복잡성, 법률적 쟁점의 난이도와 중요성, 당사자의 소송 수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재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두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장기미제 발생 원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가 관련사건의 결과대기와 증거조사의 지연 등 재판부의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 또한 신속한 재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두고 이를 강제하는 경우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충실한 심리를 크게 저해하여 오히려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캐나다 대법원이 선언한 조던 원칙에 의해 재판기간이 제한되면서 성폭행, 아동착취, 사기 등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이 제대로 마쳐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생각해볼 때 신속성을 위해 충분한 심리와 공정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 재판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정의와 안정을 지키는 사법행위인 만큼 법원은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안이 다른 사건들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신속한 재판 기간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재판지연의 원인이 다양하며 재판 외부적인 요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 충실한 심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재판 강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27. 만약, 재판 지연 예방 제도를 마련한다면 국회의 입법(영국, 호주)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대법원의 자체 기준 마련(캐나다)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적정한 판결 선고 기일을 정하는 것은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 개별사건의 특수상황, 접수된 사건의 양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원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결론을 찾아 판결을 선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구체적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복잡성, 법률적 쟁점의 난이도와 중요성, 당사자의 소송 수행 방법 등 사정과 제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국회 등 입법 기관에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재판지연보상을 고려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액을 개별 사건별로 상급심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사안별로 적정한 사건 처리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 일률적인 신속한 재판 기간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만일 부득이 이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면 대법원에서 연구·검토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8. 후보자는 형법상 국토참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내란죄에 관한 형법 제87조가 지난 2020. 12. 8. 개정되면서, “국토를 참절할 목적”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참절의 의미를 적절히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석서에 의할 때 국토참절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목적, 즉 영토내란의 목적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대한민국 영토를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한민국의 국가적 통일성을 배제하거나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분리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29. 후보자는 형법상 국헌문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형법 제91조에서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제2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0. 후보자는 형법상 폭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으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고 알고 있습니다.

31. 후보자는 형법상 내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형법 제87조는 내란에 관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2. 후보자는 형법상 내란 미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형법 제89조에서 제87조 내란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과거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등). 그러므로 내란미수는 폭동에 이를 정도의 폭행·협박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3. 후보자는 형법상 내란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형법 제87조는 내란에 관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4. 후보자는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형법 제87조는 내란에 대해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제1호에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 우두머리는 단순한 참여자와 달리 내란행위, 즉 폭동을 조직·지휘·통솔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가 형법상 국토참절이라는 데 동의하는지?

36.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가 형법상 국헌문란이라는 데 동의하는지?

37.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가 형법상 폭동이라는 데 동의하는지?

38.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하는지?

39.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가 형법상 내란 미수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하는지?

40.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하는지?

41. 윤석열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데 동의하는지?

(※ 35항부터 41항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향후 법원의 재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 등에서 심리될 수 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후보자는 형법상 직권남용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43.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하는지?

○ 12·3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내에서도 계엄요건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법원행정처장께서 위헌적 군통수권행사라고 언급하신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의 재판 등에서 심리될 사안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유와 순서를 정하고 있을 뿐 그 권한 범위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학계에서도 그 권한 범위에 관한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45.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대법관 임명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지?

○ 대법관은 ① 대법원장의 제청, ② 대통령의 제청 수용, ③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 ④ 국회의 동의, ⑤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대법원장은 2024. 11. 26.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였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2024. 12. 12.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임명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 제청과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인사청문 요청 및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동의 절차를 마친 이후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대법관 임명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대법관 임명절차가 지연되어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46.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지?

○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의견이고,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지?

○ 위 45번과 46번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늘어나는 소송 건수에 비해 예산 및 시간 등의 제약으로 자질 있는 법관의 육성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 바,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전제로 법관의 업무 부담 완화와 재판의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원의 조직, 소송의 운영 등과 관련된 개선 복안이 있는지?(조직 효율화 방안)

<비분쟁성 사건의 사법보좌관 업무범위 확대>

○ 현행법에서는 법원공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법보좌관에게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적정한 분배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만성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관 인력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송적 · 형식적 절차 업무에 해당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사법보좌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4년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업무, 2015년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의 개선, 2016년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업무와 부수적 강제집행 업무, 2018년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2020년 부동산인도명령・관리명령,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등 2005년 사법보좌관제도 도입 이후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를 여러 차례 확대하여 법관의 업무 경감에 일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의 처우 등 근무환경 개선>

○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법관의 보수, 짧지 않은 배석판사로서 근무 기간, 판결서 작성 등의 업무 부담, 지방권 근무를 비롯한 잦은 순환 근무 등 처우를 비롯한 법관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법관들의 과중한 사건 처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들의 과중한 사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법관 증원과 함께 재판연구원 등 재판보조인력의 확충, 전문심리위원 등 전문가의 재판참여 확대, 법정에서의 심리 집중을 위한 재판제도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9.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법원의 양형 기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 바, 다음의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청함.

49-1. 형벌 구형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

49-2. 양형 기준이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49-3. 범죄 억제 등을 위해 전반적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49-4. 범죄자 반성, 평판 등의 감형 요소를 지양하고, 범죄 계획성, 죄질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9-5. 성범죄자의 반성 태도가 감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9-6. 심신미약 감형을 폐지해야 한다.

(※ 49-1항부터 49-6항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2조). 따라서 법원은 그 의견에 구속될 없이, 형의 양정에 관한 재량을 가지고 개별 재판에서 제반 양형조건에 관한 면밀한 양형심리를 실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양형기준이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양형위원회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형

기준을 설정 및 수정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법관들의 양형기준 준수율도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그동안 법관 사이의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줄이고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객관적인 양형 실무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형위원회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며, 저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중형주의가 범죄 예방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사정책적으로도 처벌의 강화보다는 처벌의 확실성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는 범죄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고, 재범방지 대책, 사회적 안전망 구축,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형법은 계획성, 죄질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양형인자 뿐만 아니라, ‘행위자’, ‘범죄 후의 정황’에 관한 양형인자도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하여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인자의 남용 우려를 고려하여 최근 엄격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고,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형사재판에서도 반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양형인자에 대한 '충실한 양형심리'가 전제되어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통해 합리적인 양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양형기준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을 감경인자로 규정하면서, 살인범죄 등 개별 범죄군의 '서술식 기준'을 통해 남용을 막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음주 등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상의 심신미약 관련 양형인자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 일각의 소송대리인 등은 항소심에서의 증거신청과 관련하여 일부 재판부가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만을 강조해 실질적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들어 과도한 증거신청 및 증인신문 불허 경향을 보이는바 증거신청과 관련한 탄력적 판단 및 개선 요청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항소심의 재판 장기화를 고려하면 무분별한 증거신청을 받아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항소심이 마지막 사실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마지막 기회인 증거신청을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민사항소심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제도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25. 3. 1. 시행됨에 따라 법원도 이러한 점에 대한 고민으로, 서울고등법원 법관들을 주축으로 한 TF를 만들어 신속하고 충실한 항소심 재판을 위한 항소심 심리모델을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제도와 이를 전제로 한 민사항소심 심리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항소심 쟁점이 조기에 확정되고 그 쟁점에 한정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한 범위의 증거채택 및 조사가 이루어지면서도 재판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1. 소액사건과 관련해 소액심판을 담당하는 1인의 담당 법관이 맡은 사건의 수가 과도하고 이로 인해 비록 액수는 소액일지언정 소송당사자들에게 이는 일생일대의 주요 사건인 점 등을 들어 충실한 재판을 담보하고자 법관 증원 등을 통한 소액사건 담당 재판부의 과도한 사건 비중 완화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법원은 사건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관의 정원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적어서 법관 1인당 사건 수가 과도한 상황이고, 법조일원화 시행으로 인하여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지만 재판보조인력이 적절하게 충원되지 못하면서 소액 담당 재판부를 포함한 전체 법원이 과도한 사건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소액 담당 재판부 수도 증가시켜서 사건처리 부담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어서, 소액 재판에서의 보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법원은 소액사건에 있어서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시송달과 소장심사단계에서 참여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촉절차에서 쉽게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하는 경우 소액사건 수가 급증하므로 독촉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하여 비분쟁성 소액사건의 처리에 관한 재판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사단독 전담법관 또는 원로법관이 고분쟁성 소액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여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일반 민사단독 사건 수준의 충실하고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2023년에는 「소액사건 심판법」을 개정하여 일부 범위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판결 이유 기재를 권고하는 등 소액사건 심리의 충실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소액 사건 중에서도 분쟁성 사건에 대해서 충실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분쟁성 사건이나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서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한정된 사법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독일에서의 서면절차(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구술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거나, 일본의 소액소송절차(원고의 신청 및 피고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 외의 증거에 대한 조사가 제한되고, 항소가 금지되는 절차)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2. 일부 법관들은 소송진행 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조정 및 소 취하 권유를 남용하여 이와 관련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개선 방안은?

○ 개별 사건에 따라 조정이나 소취하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당사자들 모두에게 바람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관이 소송지휘권의 활용으로 조정이나 소취하를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방 당사자나 대리인과 달리 법관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건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나 대리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법관이 이러한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하여 당사자들에게 조정이나 소취하를 강요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항소나 상고를 통하여 심급제도로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과 조정절차의 분리를 통해 그 정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재판장이 직접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수소법원 조정보다는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담당판사가 진행하는 조정회부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 항소심의 경우 제1회 기일에 변론 종결 하는 것이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타당한 주장 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바람직한 항소심 기일 진행은 사건의 내용 및 경과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항소심의 경우라도 사건에 따라는 제1회 기일에 변론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타당한 주장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고의적인 지연행위로 인하여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4. 현재 대법원 심불종결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하여 3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심불종결의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수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세한 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부득이하게 심리불속행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 다만,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를 고려하여 심리불속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더불어 심리불속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의 업무 부담이 여전히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여,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5. 일반 국민 및 소송대리인들의 판결문 접근성 개선 요청과 관련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은?

○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 현재 법원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든지 민사, 행정, 특허사건의 확정 또는 미확정 판결서와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을 찾아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왔고, 판결서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TEXT-PDF 형식으로 제공하는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앞으로도 국민과 그 소송대리인에게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계기관과 다양한 사회 내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56.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등을 포함 일선 법원의 준칙과 관련해 이는 소송결과의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효력을 가지는 반면 실무준칙 제정 과정은 사실상 법관들의 내부 논의에만 그치고 이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 회생법원(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의 실무준칙은 각 회생(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의 진행을 위한 합리적인 실무기준과 법원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실무준칙이 정하고 있는 각종 사항(예납금 납부기준, 청산가치 산정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건에서 법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판단할 재판사항에 해당하며, 각 회생(지방)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데 있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참고할 수 있는 실무기준,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으나, 법관이 이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부분의 회생(지방)법원은 실무준칙 제 · 개정 시 법관, 담당 직원의 의견수렴절차 및 전체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관계인 및 대한변호사협회, 금융위원회, 도산 관련 학회 등 각종 유관기관 및 도산 관련 자문기관과도 협의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회생(지방)법원은 실무준칙 제·개정 과정에서 여러 논의와 연구가 심도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7. 국선변호인의 보수 현실화의 필요성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국선변호 제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사법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선변호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와 도입 목적이 현실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최근 법원은 예산과 국선변호인 보수의 현실화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보수 인상을 진행해왔습니다. 국선변호인의 기본 보수는 2021년 40만 원에서 2022년 45만 원, 2023년 50만 원, 2024년에는 55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송구조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의 예산 수준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역량 있는 국선변호인을 유치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보수가 장기간 동결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에서 국선변호인 보수의 현실화와 적정 수준의 소송구조 예산 확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8. 법원이 전문성있는 조정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화해, 양보를 통한 자율적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합니다. 특히 구성원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현 상황에서 분쟁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법원에서는 법률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상임 조정위원, 조정전담변호사가 법원에 상주하며 쟁점이 복잡한 다수의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조정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전문성 있는 우수한 조정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맞는 대가(수당)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전담변호사의 수당은 월 460 ~ 520만 원에 불과하여 변호사 평균 임금에 비해 상당히 저액이므로 우수한 인원의 확보가 어렵고, 일반조정위원도 사건당 4 ~ 7만 원의 수당밖에 지급받지 못하여 변호사나 의사, 교수, 건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또한 202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조정제도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위원 수당 증액 등 조정제도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9.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법관평가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등의 지적사항을 더욱 효율적으로 법원 및 법관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은?

○ 법관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평가할 필요가 있고, 법관 평가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재판부 구성원 등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재판관계자 등 법원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의견까지 청취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는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공정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고,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응한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만이 취합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검토를 진행하였고, 현재도 대법원에서 관련 개선방안의 연구와 변호사단체 등과의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 평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협회를 비롯하여 법원 내·외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후보자 역시 관심을 갖고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60. 정치인, 언론인, 재벌 등 사회적 공인과 관련된 판결을 하는 법관의 사법적 판단의 결과에 따라 법관 개인 및 그 가족의 신상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정보통신망 상에서 공유되어 사실상의 위협이 가해지는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은?

○ 사법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은 사법의 본질인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근간으로 반드시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법관 개인을 공격하고 재판을 정쟁의 수단을 악용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판과 판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위와 같은 부당한 시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관 개인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법관들이 사법부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재판제도와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61. 정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의 주최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형법 제87조, 제91조를 종합하면, 내란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가 문제되고, 정권의 보유 여부에 따라 내란죄 성부가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 구체적인 판단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 행사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기에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별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개인적 판단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12·3 계엄 사태와 선포 및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대통령의 군대 파견은 고도의 통치행위, 즉 정치적 의견 표시일 뿐, 물리력 행사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 또는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현재의 언론보도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만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장차 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지속적인 탄핵 시도, 예산안 감축, 공직자들에 대한 조롱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에서 국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기에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당시 상황이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정 마비 상황'이 헌법에서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편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으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하는데,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폭동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재판에서 쟁점

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별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개인적 판단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검찰, 공수처, 공조수사본부 등의 대통령실, 관저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지속적으로 불능되고 있는 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다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에 대하여는 해당 압수 대상물의 내용 및 비밀성, 혐의 사실의 내용 및 성격을 포함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재판 사항에 해당하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승낙 요건, 즉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심사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물 확보가 책임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책임자가 이의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을 봉인하고 법원의 확인을 거쳐 압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해볼 만한다고 생각합니다.

66.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 및 '피해자 중심주의'는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및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관련 사건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제시된 이래 그와 관련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이 개별 법관의 주관적 감수성에 의존하여 성폭력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 대법원이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은 국내외에서 오래 전부터 법과 제도를 만들거나 해석·적용할 때 갖추어야 하는 덕목으로 논의되어 왔던 "성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심증에 의한 법관의 증거 판단, 특히 증언의 신빙성 판단은 경험칙과 논리법칙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위 대법원 판결들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험칙을 적용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는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피해자의 일부 언행이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아 그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같은 상황에서도 성별과 피해자의 구체

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성인지적 관점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험칙의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취지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한편, 최근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은, 지적장애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객관적 정황이나 다른 경험칙 등에 반함에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서, 기존 성인지 감수성 관련 판례에 배치되는 취지는 아니며 무죄추정의 원칙상 당연한 설시라고 생각됩니다. 법관으로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춤은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균형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7.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맞추어 무겁게 처벌하거나 반좌율(反坐律)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반좌율(反座律)이란, 무고죄나 위증죄 등을 저질러 사법절차를 기망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한 자에게, 그 사법피해자가 받을 뻔했던 벌을 대신 내리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라는 점에서 무고죄의 불법성이 신고한 허위사실이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더불어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전 과정에 걸쳐 실체진실주의가 지배하는바, 법원은 증거재판주의 및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단지 그 처벌 위험성만으로 무고 대상 범죄의 법정형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책임주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반좌율의 전면 적용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실제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가 유죄판결 등을 받았다면 이를 행위자에 대한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68. 최근 12·3 계엄사태 등으로 부각된 부정선거 관련 논의 등을 참고할 때, 정보통신망 중 특히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 음모론을 다루는 내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임. 개인의 표현의 자유(유료 컨텐츠의 경우 직업의 자유)와 공익간 비교형량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정치/사회/문화적 음모론"이 (1) 불허되어야 한다고 여기는지 (2) 규제되어야 할 콘텐츠의 한계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 생각은?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공공질서와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사회적 피해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계 등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직업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69.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전차가 5명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레버를 당길시 전차가 1명이 있는 다른 선로로 전환된다면 후보자는 레버를 당기겠습니까?

○ 말씀하신 사례에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1명의 생명보다 5명의 생명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5명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선택이 정의롭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과연 5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혀 다른 1명의 생명을 빼앗을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쉽게 레버를 당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